

최종보고서

농어촌 영향 관리 가이드라인 제도 도입 방안

A Study on Guiding System to Check Government
Policies' Impact on Rural Area

2010. 12.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수산식품부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어촌 영향 관리 가이드라인 제도
도입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년 12월

연구책임자: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이규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대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요 약

연구의 목적과 방법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농어촌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확인하고 그것들을 충족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농어촌 영향 평가 제도 도입 이후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 수단을 개발하는 것과 제도 도입 및 운영과 관련된 기초적인 구상을 제안하는 것이 연구 목표였다.

농어촌 영향 평가 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영국의 Rural Proofing 제도 및 우리나라 여성가족부의 성별 영향 평가 제도의 도입과 이후 확산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Rural Proofing에서 중요한 실무 도구였던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고 성별 영향 평가 제도에서 중요하게 활용되는 평가 지침도 분석하여, 양자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농어촌 영향 평가 지침과 매뉴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초안 형태의 지침과 매뉴얼을 현재 시행 중인 몇 가지 정책 사례에 적용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Rural Proofing과 성별 영향 평가 제도를 고찰한 결과, 농어촌 영향 평가 제도의 두 제도 모두 강력한 운영체계를 점진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기에 여러 해에 걸쳐 많은 성과를 축적할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한 ‘강력한 운영체계’의 특징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법률적 근거와 영향 평가 수행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과 장치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공공기관들이 영향 평가를 수행하도록 독려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영향 평가 수행의 실무 과정을 지원할 조력 기구를 확보했다는 점이다.

한편, 농어촌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하면 실제 수행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정책 실무 담당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Rural Proofing 체크리스트와 성별 영향 평가 지침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농어촌 영향 평가에 활용할 실무 도구 개발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 첫째는 두 사례의 장점을 모두 취합하자는 것이었다.

고려해야 할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몇 가지 제시하는 것과 농어촌 영향 평가 절차에 따라 검토해야 할 자료와 검토 방법을 친절하게 안내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성별 영향 평가 제도의 전례를 따라, 보다 상세한 매뉴얼을 별도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 같은 개발 방향에 따라 작성한 농어촌 영향 평가 지침 및 매뉴얼 시안이 사용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 지원 사업, 시·도 교육청의 공립학교 교원 배정 정책 등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농어촌 영향 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7개 항목으로 정리하여 지침과 매뉴얼의 최종안에 반영하였다. 그것을 포함하여 농어촌 영향 평가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5개 분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농어촌 영향 평가 제도에 관한 기초적인 구상을 제안하였다. 운영 체계와 관련하여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서 천명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관련 주체들 간의 역할 분담 구조와 ‘삶의 질 향상 위원회’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기능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농어촌 영향 평가 제도 도입 및 확장 전략을 3단계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도입 단계에서는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과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확장 단계에서는 농어촌 영향 평가를 지원할 전문 지원기관을 확보할 것과 농어촌 영향 평가 실적 확대를 위한 목표를 설정할 것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끝으로 질적 변화 단계에서는 농어촌 영향 평가 제도보다 진일보하고 효력이 더 큰 농어촌 인지적 관점의 정책 조정 제도인 ‘농어촌 인지 예산 제도’의 도입을 준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A Study on Guiding System to Check Government Policies' Impact on Rural Area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are to identify the required conditions for introducing Rural Impact Assessment system in Korea, to develop actual measures for operating the system, and to propose the strategy for activating RIA.

Based on the review of Rural Proofing in England and Gender Impact Assessment in Korea, we found some requisites for introducing RIA as followings. Firstly, government should build a powerful operation system. Secondly, it is necessary to make some actual measures by which policy makers can use to assess their own policies' impact for rural area.

To develop the protocol of RIA checklist and manual, we analyzed some policies on the rural-sensitive perspectives. Based on the analysis, we made the protocol of RIA checklist and manual which include the seven questions for policy makers to consider whether their policy is likely to encounter the challenges presented by rural circumstances.

Researchers: Jeong-Seop Kim, Gyu-Cheon Lee and Dae-Sik Park

Research Period: 2010.4~2010.12

E-mail Address: jskkjs@krei.re.kr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주요 연구 내용과 방법 3

제2장 국내외 관련 제도와 정책

1. 성별 영향 평가 제도 5
2. 영국 Rural Proofing 제도 10

제3장 실무 지침 및 도구 개발을 위한 관련 사례 분석

1. 영국의 Rural Proofing 체크리스트 19
2. 여성가족부의 성별 영향 평가 지침 27
3. 시사점 31

제4장 농어촌 영향 평가 지침 마련을 위한 정책 사례 분석

1. 조사 및 분석의 개요 33
2. 사례 분석: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보건복지부) 34
3. 사례 분석: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 지원 사업(여성가족부) 42
4. 사례 분석: 초·중등학교 교원 배정 정책(교육과학기술부) 47
5. 시사점 59

제5장 농어촌 영향 평가 제도의 기초 구상

1. 제도 운영 체계 63
2. 제도 도입 및 확장 전략 67

제6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69
2. 결론 및 제언 71

<부록 1> 농어촌 영향 평가 체크리스트 작성을 위한 검토 대상 정책 사례 1차 선별 후 목록	73
<부록 2> 농어촌 영향 평가 체크리스트 작성을 위한 검토 대상 정책 사례 2차 선별 결과와 근거	75
<부록 3> 농어촌 영향 평가 지침(안)	82
<부록 4> 농어촌 영향 평가 매뉴얼(안)	95
<부록 5> 지방자치단체별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 설치 현황	112
<부록 6> 2002년 영국의 Rural Proofing 실적 요약	119
<부록 7> 초·중등학교 교사 정원 배정 산정 방법 및 기준	120
<부록 8> 공립의 각급 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표	130
참고 문헌	131

표 차례

제2장

- 표 2-1. 2004년도 성별 영향 평가 시범사업 및 기관 6
 표 2-2. 성별 영향 평가 센터의 주요 업무 8
 표 2-3. 성 인지 예산 센터의 주요 업무 9

제3장

- 표 3-1. Rural Proofing 체크리스트 항목과 대안적 정책 선택지 22
 표 3-2. Rural Proofing 체크리스트의 주요 구성 요소 25
 표 3-3. 여성가족부 성별 영향 평가 지침의 주요 구성 요소 28
 표 3-4. 성별 영향 평가 지침의 평가 지표 및 적용 방법 29

제4장

- 표 4-1.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지원 현황 35
 표 4-2.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및 상근 종사자 수에 따른 지원 기준액 37
 표 4-3. 연도별·지역별 지역아동센터 시설 운영 현황 38
 표 4-4.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실적 44
 표 4-5. 시행규칙 입법 예고 안의 시·도별 교사 정원 배정 보정지수 49
 표 4-6. 공립 초등학교 교사의 시·도별 분포 51
 표 4-7. 2010년 학생 수 300명 미만인 학교의 지역 유형별 분포 53
 표 4-8. ‘교사 1인당 학생 수’ 기준 적용 시 교사 수를
 줄여야 하는 초등학교 분포 54
 표 4-9.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채용 학교 현황 55
 표 4-10. 농어촌 영향 평가에서 정책 담당자가 검토해야 할
 주요 항목 60

그림 차례

제2장

그림 2-1. 성별 영향 평가 추진 실적(2004~2009년)	7
--	---

제3장

그림 3-1. Rural Proofing의 절차	21
----------------------------------	----

제4장

그림 4-1. 시·도별 복식학급 학교 수	51
그림 4-2. 농어촌 및 도시 초등학교 학생 수와 교사 1인당 학생 수 분포	52

제5장

그림 5-1. 농어촌 영향 평가 제도 운영 체계	66
----------------------------------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한국 사회의 압축적 근대화 과정은 국토를 ‘집적 공간’과 ‘해체 공간’이라는 분화된 구조로 변모시키고 인구, 자본, 시설 등을 편중 배치하는 결과를 낳았다. 농어촌은 후자를 대표하는 공간이다.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되었고, 농어촌에 존재하는 다양한 물적·인적 자원은 그 가치를 현실화하기 어려운 상태로 남겨졌다. 국가가 적절한 개입 수단을 동원하여 그런 차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농어촌 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 가운데 하나이다.

국가는 정책 계획, 시행, 평가 단계에 있어 수혜 대상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농어촌 주민의 시각에서 볼 때 여러 정책 영역에서 ‘농어촌’이 소외되었다고 말할 만한 경험적 근거들이 있다. 정책 과정을 주도하는 주체가 의도적으로 지역을 차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책 입안과 시행 절차에 배태된 사회 통념, 자료, 규정 등이 이미 도시 중심적이어서, 결과적으로는 정책이 농어촌 주민에게 공정하지 않게 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이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차별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려면, 정책을 계획할 때부터 도시와는 다른 ‘농어촌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농어촌의 특성’의 예로 낮은 인구 밀도, 일상생활 서비스에 대한 교통 접근성의 불리함, 낮은 수준의 사회자본(social capital) 등을 들 수 있다. 몇몇 외국은 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와 동일하게 정책을 투입하면 차별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농어촌에 투입되는 정책의 보완 절차를 마련하였다. 영국의 Rural Proofing이 가장 널리 알려진 사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어촌 문제에 특별히 주목하여 광범위한 분야의 정책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4년 3월에 공포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 질 향상 특별법’으로 약칭)”에 근거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범정부 부처 차원의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2005년에는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 계획(이하, ‘삶의 질 향상 계획’으로 약칭)”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제1차 삶의 질 계획은 농어촌 문제에 대응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한 최초의 종합 계획이라 할 수 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주관 하에 농어촌과 관련된 여러 정부 부처의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조율하여 추진하는 정부 부처 협의체 제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제1차 ‘삶의 질 향상 계획’ 시행이 농어촌 관련 정책들을 밀도 있게 조정했다거나 농어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달성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실무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해 중앙정부 부처들의 정책 사업을 사전에 충분히 조정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박대식·최경환·박주영, 2009). 여러 정부 부처 정책을 조정하는 관점도 중복 사업 제거, 신규 사업 발굴 등 종래의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하는 수준이었지, ‘정책 사업이 농어촌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어떤 조정이 필요한가?’라는 관점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 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2009년에 수립하여 2010년부터 시행된 제2차 ‘삶의 질 향상 계획’에서는 ‘농어촌 영향 관리 가이드라인’을 운용할 것을 천명했다(기획재정부 등, 2009).

농어촌 영향 평가 제도는 하나의 정책을 입안하는 단계에서부터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농어촌에 불리한 차별적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그것을 최소화하는 보완 조치를 강구하게 하는 일련의 절차이다(기획재정부 등, 2009). 그리고 농어촌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 각 부처 등 공공기관이 ‘삶의 질 향상 위원회’와의 협력 관계에 기초하여 농어촌 주민의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정책을 점검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¹ ‘농어촌 영향 관리 가이드라인’이라는 명칭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정책 영향 평가 제도들(예: 환경 영향 평가 제도)과 달리 공공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명칭이 오히려 제도의 취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 최근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어촌 영향 평가 제도’라고 명칭을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한 최근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이 보고서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농어촌 영향 평가’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영국의 Rural Proofing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다. 이 새로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농어촌 정책 여건에 적합한 구체적 수단을 마련하고 그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고 보완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농어촌 영향 평가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분석하고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목표를 두었다. 첫째, 영국의 Rural Proofing 등 국내외의 유사한 제도 운용 실태를 고찰한다. 둘째, 농어촌 영향 평가 제도의 운영 체계를 구상한다. 셋째, 정책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도구를 개발한다.

2. 주요 연구 내용과 방법

2.1. 주요 연구 내용

이 연구는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국내외 유사 제도 운용 실태와 성과를 고찰하였다. 둘째, 농어촌 영향 평가 지침, 매뉴얼 등 실무 도구 초안을 개발하였다. 셋째, 개발한 실무 도구 초안을 현재 시행되는 정책(사업)에 시험 적용하여 보완하였다. 넷째, 농어촌 영향 평가 제도의 도입 및 운용과 관련된 기초적 구상을 제시하였다.

국내외 유사 제도 운용 실태와 성과를 고찰하기 위해 영국의 Rural Proofing 제도와 우리나라의 성별 영향 평가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제도 도입 과정 초기에 수반했던 실무 수준에서의 준비 내용을 파악하였다. 중앙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과 주관 기관 사이에 형성된 협력 체계의 구조와 기능, 특히 실무 수준에서의 관련 활동 내용도 조사하였다. 그리고 제도 운용 과정에서 동원했던 관계자 교육·훈련, 컨설팅, 체크리스트 등의 실무 도구와 그 효과에 대한 평가 자료를 수집하였다. 제도 운용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 결과도 분석하였다.

한편, 농어촌 영향 평가 제도가 도입되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지침과 실무 도구(매뉴얼)를 개발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였다. 농어촌 영향 평가의 대상 정책을 계획(또는 실행)하는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들이 참고할 항목을 정리한 체

4 서론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농어촌 영향 평가 지침과 매뉴얼 초안을 작성하였다. 정책 개발 초기 단계에 주로 적용할 수 있게 설계하되, 실행 또는 평가 단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그렇게 작성한 농어촌 영향 평가 지침 및 매뉴얼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 사례를 분석하였다. 주로 지침, 체크리스트, 매뉴얼 등의 시안이 실제로 얼마나 활용하기 용이한가라는 관점에서 보완하였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영향 평가 제도의 기초적인 구상을 제안하였는데, 그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어촌 영향 평가 대상 정책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둘째, 대상 정책의 영향 평가에 필요한 절차적·내용적 점검 항목을 설정한 체크리스트 등 실무 도구의 활용 방안을 정리하였다. 농어촌 관련 정책의 실무 담당자가 정책을 입안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농어촌에의 차별적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핵심적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컨설팅 및 교육훈련 등의 프로그램으로 그 활용을 권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셋째, 제도 운용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를 구상하였다. 제2차 ‘삶의 질 향상 계획’에는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사무국이 제도 운용을 주관하고 관계 부처 및 전문 연구기관과 파트너십을 이루는 구도가 제시되어 있다. 기능면에서는 ‘가이드라인 제시’, ‘조언과 교육’, ‘시책 점검 및 보고’의 세 가지 요소가 명시되어 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하되, 보다 구체적인 하위 수준의 조직 구조와 기능을 구상하였다.

2.2. 연구 방법

문헌조사, 해외 사례 조사, 참여관찰 및 디브리핑(debriefing) 등의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문헌 조사를 통해 영국의 Rural Proofing과 우리나라의 성별 영향 평가 제도를 검토하였다. 특히 영국의 Rural Proofing 제도 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지 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 과정에서 제도 운영 체계의 개략적 구조에 관해서는 이미 알려진 문헌들을 참고하였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수준에서 활용하고 있는 각종 수단들에 대해 조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끝으로 정책 사례를 분석하면서 농어촌 영향 평가 지침 및 체크리스트 시안을 활용해 보고, 그 과정에서 얻은 시사점을 정리하여 평가 지침 및 체크리스트를 보완하고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정책 대상을 둘 이상의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을 때, 정책이 서로 다른 집단 사이에 차별 없이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공공 정책에 있어서는 효과 못지않게 형평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얼핏 보기에는 서로 다른 집단을 차별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 정책이 의도하지는 않았을 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차별적 효과를 낳는 경우가 많다. 이를 염두에 두고 형식적인 동일성을 넘어 대상 집단의 고유한 특성과 여건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차별적인 결과를 방지하려 노력하는 정책을 두고, ‘특정 대상 인지적 정책’이라 부를 수 있다. 농어촌 영향 평가 제도는 ‘농어촌-인지적 접근방법(rural-sensitive approach)’에 기초한다. 특정 대상 인지적 정책 접근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 앞선 경험을 축적한 성인지(gender-sensitive) 정책과 전형적인 농어촌-인지적 접근방법을 취한 제도인 영국 Rural Proofing 제도의 정착 과정을 고찰한다.

1. 성별 영향 평가 제도의 도입과 확산

우리나라에서 성 인지 정책이 시작된 것은 2002년 12월 ‘여성 발전 기본법’이 개정된 이후부터이다. 성 인지 정책은 사회에서 양성(양성)이 처한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정책들이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성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수행되는 대표적인 성 인지 정책은 성별 영향 평가와 성 인지 예산 제도이다.

그 가운데 먼저 실행되기 시작한 것은 성별 영향 평가이다. 성별 영향 평가의 목

6 국내외 관련 제도와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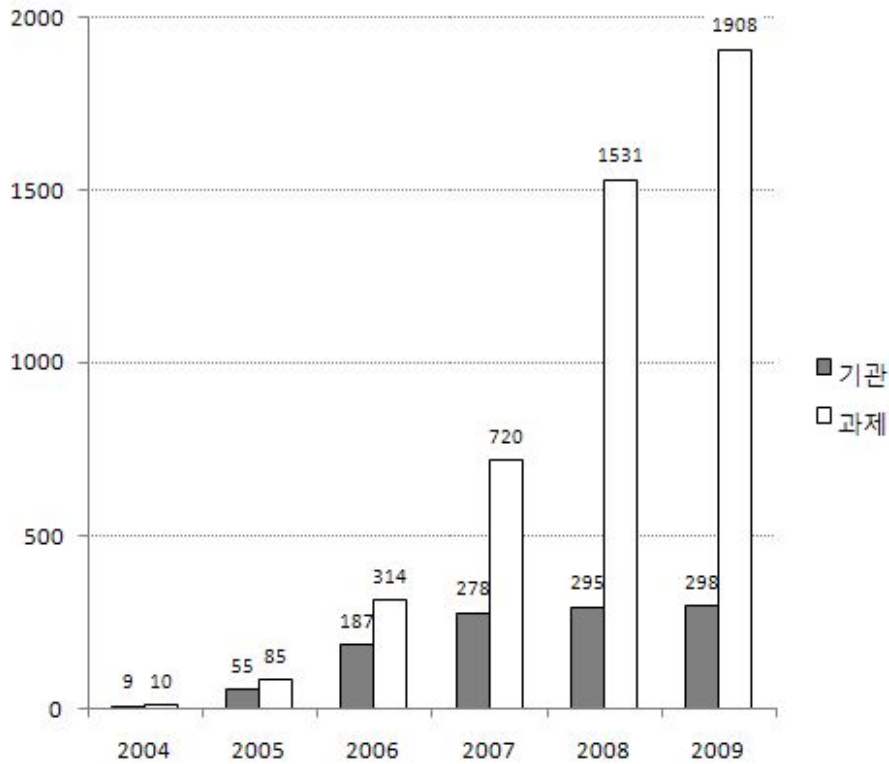
적은 주요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을 분석하여 공공 정책의 공간 형평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된다(김양희 등, 2006). 2002년 개정된 ‘여성 발전 기본법’에 근거하여 제2차 ‘여성 정책 기본계획’에 성별 영향 평가를 수행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2004년에는 법무부 등 9개 공공 기관이 10개 과제에 대한 성별 영향 평가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표 2-1>.

표 2-1. 2004년도 성별 영향 평가 시범사업 및 기관

과제명	부처/기관	연구기관	기간	예산 (천원)
① 수행자 직업훈련 정책의 성별 영향 평가	법무부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04.8.30 ~ '04.12.24 (4개월)	20,000
②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성별 영향 평가	법무부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04.8.30 ~ '04.12.24 (4개월)	25,000
③ 과학기술인력 양성·활용 사업의 성별 영향 평가	과학기술부	전북대학교	'04.8.30 ~ '04.12.24 (4개월)	28,000
④ 국가 암 관리 정책에 대한 성별 영향 평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04.8.30 ~ '04.12.23 (4개월)	39,000
⑤ 문화기반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의 성별 영향 평가	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 정책연구원	'04.8.30 ~ '04.12.24 (4개월)	29,800
⑥ 농업인력 육성정책의 성별 영향 평가	농림부	충남여성정책 개발원	'04.8.30 ~ '04.12.24 (4개월)	30,000
⑦ 제직자 직업훈련정책의 성별 영향 평가	노동부	한국여성 개발원	'04.8.30 ~ '04.12.24 (4개월)	28,500
⑧ 서울시 보건·복지 정책의 성별 영향 평가	서울시	한국여성 개발원	'04.8.30 ~ '04.12.24 (4개월)	20,000
⑨ 충북 장애인 정책의 성별 영향 평가	충청북도	한국행정학회	'04.8.30 ~ '04.12.24 (4개월)	27,000
⑩ 전북 노인정책에 대한 성별 영향 평가	전라북도	전북여성발전 연구원	'04.8.30 ~ '04.12.24 (4개월)	30,000

자료: 여성가족부(2006)

그림 2-1. 성별 영향 평가 추진 실적(2004~2009년)



이후 성별 영향 평가는 꾸준히 확대되어 2005년에는 53개 기관(중앙행정기관 3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16개)에서 85개의 성별 영향 평가 과제를, 2006년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187개 기관에서 314개 과제를, 2007년에는 278개 기관에서 720개 과제를, 2008년에는 295개 기관에서 1,531개 과제를, 2009년에는 298개 기관에서 1,908개 과제를 수행하는 등 추진 실적이 크게 증가하였다(여성가족부, 2010). 성별 영향 평가가 여러 정부 부처의 주요 정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도 성공적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성별 영향 평가의 이 같은 정착 배경에는 지속적인 개선 작업이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성별 영향 평가를 지원하는 전문적인 자문 지원기관을 설치하고, 성별 영향 평가의 결과가 정부 예산에 반영되게 하는 성인지 예산 제도를 구상하고 도입하려 노력했다.

초기 두 해 동안의 시범적인 성별 영향 평가 시행 과정을 모니터링한 김원정(2006)의 조사에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전담 자문 지원 체계 마련’을 성별 영향 평가의 개선해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꼽았고, 성별 영향 평가 사업 시행 시 각 부처에서 개선해야 할 점으로도 ‘사업 선정 및 평가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중요하게 거론되었다.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여성가족부는 2005년 12월에 마련한 ‘성별 영향 평가 추진 로드맵’에 성별 영향 평가 관리 기구를 설립하고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내용은 2006년 3월에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도 반영되었다². 이후 성별 영향 평가 제도의 운영을 뒷받침할 전문기관으로 전문 연구자 6명으로 구성된 성별 영향 평가 센터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성별 영향 평가 센터의 주요 업무는 <표 2-2>와 같다.

성 인지 예산 제도는 예산이 의도하지 않게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제고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제도이다(여성가족부, 2010a).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편성, 심의, 집행, 결산 과정에서 고려하여 국가 재원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의 제도이다. 성 인지 예산은 중립적으로 보이는 국가 재정지출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예산

표 2-2. 성별 영향 평가 센터의 주요 업무

-
- 임무
 - 성평등 및 사회통합 구현을 위한 국가 정책 개발
 - 주요 업무
 - 성 주류화 이론 및 제도 관련 연구
 - 주요 발전 정책의 성 주류화 연구
 - 성별 영향 평가 도구 및 방법론, 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
 - 중앙 및 지역 정책의 성별 영향 평가 적용 연구
 - 성별 영향 평가 결과 종합 분석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성별 영향 평가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
 - 국내외 성별 영향 평가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운영, 컨설팅 제공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wdi.re.kr)

² 동법 제10조의 2(정책의 분석·평가 지원기관의 지정 등)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연구기관을 정책의 분석·평가 지원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에 의해 뒷받침되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성별 형평성을 담보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 및 정부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1995년 UN 세계여성대회 행동 강령에서 예산 결정 과정 등의 성인지적 관점의 통합을 명시하였고 2001년 국제연합여성기금(UNIFEM) 정부 고위급 회의에서 2015년까지 모든 국가가 예산 과정에 성별 분석을 통합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성 인지 예산 제도 도입 논의는 2004년에 최초로 시행한 성별 영향 평가 시범사업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성별 영향 평가를 실시한 10개 정책 사업 가운데 재정 측면에서 성별 영향을 분석한 것, 성 인지 예산 분석은 하나도 없었다. 성별 영향 평가에서 예산이 분석되지 않고 성별 영향 평가 결과가 차기 연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성별 영향 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런 비판에 힘입어 2006년 10월에 제정된 국가재정법에는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이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제16조 예산의 원칙).’는 조항이 포함됨으로써, 성별 영향 평가가 성 인지 예산 분석을 포함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08년부터 성 인지 예산 제도 시행 준비 작업이 진행되었다. 여러 정부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 인지 예산 제도 시행을 위한 태스크포스’가 구성되어 활동하였고, 성 인지 예산서 작성 시범사업도 실시되었다. 성 인지 예산 제도의 운영에서도 컨설팅 등 상당한 수준의 전문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6명의 석·박사급 연구 인력으로 구성된 성 인지 예산 센터도 설치되었다. 그 주요 업무는 <표 2-3>과 같다.

표 2-3. 성 인지 예산 센터의 주요 업무

-
- 임무
 - 성평등 및 사회통합 구현을 위한 국가 정책 개발
 - 주요 업무
 - 성 인지 예산 제도 운영을 위한 기초 연구
 - 성 인지 예산의 개념 정립, 도구 및 방법론,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 중앙 및 지역 정책의 성 인지 예산 적용 연구:
 - 여성 부문의 중기 재정운용 계획 수립
 - 성별 영향 평가와 성 인지 예산의 연계 강화
 - 성 인지 예산 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
 - 국내외 성 인지 예산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운영, 컨설팅 제공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wdi.re.kr)

윤영진 등(2008)은 성 인지 예산 제도의 시범적용 및 부분적용 단계에서 일반화 단계로의 이행을 주장하면서 ‘성 인지 예산 제도’의 도입을 전망하였다. 이러한 전망은 성별 영향 평가에 포함되어 이루어지던 성 인지 예산 분석이 의무화된 ‘성 인지 예산 제도’로 진화하는 결정적 계기인 2010년도의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현실화되었다. 2010 회계연도부터 성 인지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이 의무화된 것이다.

이러한 법규 개정에 따라 2009년에는 ‘성 인지 예산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정부 부처마다 컨설턴트를 보내 성 인지 예산서 작성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활동이 있었다. 이 컨설팅단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 인지 예산 센터 연구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등 12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같은 지원을 받아 정부 부처들은 ‘2010년 성 인지 예산서’ 부서 제출안을 마련하였고, 여성가족부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부서 제출안을 검토하고 보완하였다. 이 과정을 거쳐 2009년 후반기에는 29개 기관 195개 사업에 대한 ‘2010회계연도 성 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2. 영국 Rural Proofing 제도

Rural Proofing은 1990년대 들어 영국에서 구제역, 광우병 등의 여파로 심각한 경제적·사회적 위기에 처했던 농촌에 대해 특별한 정책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 속에서 영국 정부가 취한 여러 가지 조치들 중 하나이다. 이 제도의 개념은 2000년 영국 정부가 간행한 ‘백서: 우리 농촌의 미래 - 잉글랜드 농촌에 대한 공정한 처우 (White Paper, Our Countryside: the future - A fair deal for rural England, 이하 ‘농촌백서’라 부름)’에서 처음 등장했다. 이 백서는 정부 정책이 농촌 지역의 주민, 사업체, 경관 등에 끼치는 영향을 합당하게 고려한 적이 거의 없었으며 농촌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정책을 조정한 적도 거의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농촌백서’는 정부 및 유관 기관이 정책을 개발하거나 실행할 때, 다음과 같은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Rural Proofing 제도를 도입할 것을 천명했다.

- 농촌 지역이 처한 특별한 여건이나 요구(needs) 때문에 정책이 농촌 지역에 유의미한 수준의 차별적 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 차별적인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평가한다.
- 농촌의 여건에 맞도록 정책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를 검토한다.

당초에 ‘농촌백서’에서 공식적으로는 중앙정부 부처와 광역지역(region) 수준에 설치된 정부사무기관(Government Office)의 정책 사업에 대해 Rural Proofing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2001년에 Rural Proofing 제도를 도입한 후, 영국 농촌청(Countryside Agency)이 발간한 2002년 Rural Proofing 모니터링 보고서에서는 그 적용 범위를 지방정부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그와 동시에 Rural Proofing 제도 운용에 필요한 여러 종류의 활동을 제안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정책을 개발할 때 입안자가 ‘농촌적 차원’을 고려하도록 돕는 체크리스트 개발 및 보급
- Rural Proofing 활동 모니터링 보고서를 연례적으로 작성하여 내각에 제출(각 기관의 Rural Proofing 실적 수록)
- 체크리스트의 지속적 수정·보완과 12개 중앙정부가 체크리스트를 수용하도록 유도
- 영국 내각사무처(the Cabinet Office)가 매년 중앙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해 실시하는 규제 영향 평가(Regulation Impact Assessment) 체크리스트 안에 Rural Proofing 체크리스트 포함
- ‘농촌 포럼(Rural Affairs Forum)’ 창립
- 광역정부 사무소마다 ‘농촌국’ 설치
- 내각 산하 ‘농촌위원회(Committee on Rural Affairs)’에 Rural Proofing에 관해 환경식품농촌부 장관이 보고

Rural Proofing의 핵심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중앙정부 부처 및 유관 기관들이 농촌-인지적 관점(rural-sensitive perspective)을 갖고 정책 개발 및 실행

과정에서 정책을 조정하도록 유도하는 ‘활동’이다. 다른 하나는 그러한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추진 체계이다. ‘활동’을 유도하는 실무 도구인 체크리스트 등 다양한 수단들이 개발되고 활용되었다.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의한다. 여기에서는 또 다른 핵심 요건인 Rural Proofing의 추진 체계에 대해 살펴본다.

영국의 Rural Proofing이 시행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 적용 대상 정책의 범위를 계속해서 확대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강력한 ‘추진 체계’가 있었다. 그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Rural Proofing 제도 시행 초기에 담당 기관이었던 농촌청의 위상이 매우 높았다. 농촌청의 수장(Rural Advocate)은 매년 중앙정부 각 부처의 Rural Proofing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내각의 수상에게 직접 보고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리고 농촌청은 환경식품농촌부로부터도 독립되어 수상의 직접 통제 하에 있는 독립적인 기구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중앙정부 각 부처의 예산심의 과정과 Rural Proofing이 연계되어 있었다. 영국의 경우 중앙정부 부처 등 공공부문 기관들은 재무부(HM Treasury)와 매년 공공서비스 협약(Public Service Agreement)을 맺어 예산을 확보하고 재정 운영 계획(Spending Review)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매년 작성되는 Rural Proofing 모니터링 보고서³가 내각 수상에게 전달되면, 내각은 그것을 바탕으로 각 정부 부처 및 기관의 공공서비스 협약 체결과 재정 운영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 Rural Proofing 결과를 공공서비스 협약에 반영하게 것은 중앙정부 부처 및 기관들이 Rural Proofing을 실시하도록 강제하는 가장 구속력 있는 수단이었다.

셋째, Rural Proofing 제도 도입 초기에 사무를 관장했던 기구의 전문성과 인력 규모가 상당한 수준의 것이었다. 농촌청은 중앙에 본부를 두고 각지에 9개의 지역 사무소를 갖춘 방대한 조직이었다. 지방 조직까지 합치면 600명 이상의 전문가와 실무

³ 이 보고서는 크게 세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당해 1년 동안의 주요 정책개발 분야의 Rural Proofing 실적이다. 둘째는 농촌에 대한 정책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정부 부처 및 기관들이 1년 동안 취했던 조치 내용이다. 셋째는 정책 입안 부서가 Rural Proofing을 숙지하고 필요한 수단을 마련하고 훈련을 받는 등 Rural Proofing 활동 자체를 도입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1년 동안 취했던 조치 내용이다.

진을 고용한 전문가 집단이었다. Rural Proofing 외에도 농촌 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다양한 사업과 연구를 실행하는 조직이었고, 당시 연간 예산 규모가 약 2,000억 원에 달했다.

농촌백서에서 최초로 표현되었던 지대한 관심은 Rural Proofing이라는 과정을 도입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었고 정부 정책이 농촌 주민, 농촌 지역의 사업체, 농촌의 경관 등과 관련된 요구와 환경에 더욱 잘 대응하는 결과를 낳도록 하는 것에까지는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2006년까지는 실제로 Rural Proofing을 적용한 정책의 수가 매년 크게 증가했고, 많은 조정과 대안 마련이 진행되었다. 제도 도입 첫해였던 2002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Rural Proofing 활동 실적은 12개 중앙정부 부처에서 총 102건이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⁴.

- 법률 및 시행령 개정: 4건
- 규제 및 정책 실행 절차 개선: 5건
- 예산 배분 공식 변경: 9건
- 농촌 관련 기금(fund) 창설: 4건
- 서비스 기준 및 정책 대상(target) 설정: 7건
- 농촌 서비스 및 비즈니스 지원 사업의 관련 규칙 변경: 7건
- 낙후 지역 사업에 특정 농촌 지역을 사업 대상지로 추가: 7건
- 시범사업(pilot project) 추진: 19건
- 정보통신기술에 기초한 해결책 마련: 10건
- 정책 설계 과정에서 농촌 환경 및 농촌 지역의 영향에 관한 추가 정보 수집: 9건
- 농촌 지역의 이해 당사자로부터 지속적인 의견 수렴: 4건
- Rural Proofing 담당자 지정 및 농촌청에 자문 요청: 8건
- Rural Proofing 담당자가 농촌청의 가이드라인 접수: 9건

2005년 모니터링 보고서에 수록된 영국 중앙정부 부처의 실적만 해도 12개 부처에서 98개의 법령 또는 정책사업과 관련된 Rural Proofing 활동이 있었다. 2007년

⁴ 부처별 건수를 집계한 현황은 <부록 5>를 참조.

들어서 어떤 이유에선지 Rural Proofing 제도는 영국에서 다소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여기에서는 그 이유에 대한 탐구는 차치하고, 몇 가지 사례를 들어 Rural Proofing의 성과 몇 가지를 단편적으로나마 살펴본다.

사례 1: 문화매체체육부(Department of Culture, Media, Sport)의 주류·오락 허가법(Licensing Act) 개정 관련 Rural Proofing

- 주류·오락 허가법 개정의 목적
 -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에서 적용되는 주류·오락 허가법이 너무 오래된 것이어서 현실에 맞지 않아 개정하고자 했다.
- 법 개정 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던 농촌 지역의 특수한 환경과 요구
 - 주류·오락 허가법 개정 작업이 시작되면서 농촌 지역의 교회, 지역사회회관(community hall), 기타 농촌 지역의 공동시설 등의 운영 주체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허가 내용에 대해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법이 개정되면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 Rural Proofing 활동 내용
 - 2003년 개정 법안이 발효된 이후, 문화매체체육부는 법 시행령을 작성했다.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Rural Proofing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당초와는 다르게 다음과 같은 변경 내용이 시행령 안에 포함되었다.
 - ① 농촌 주민들이 공공적으로 사용하는 건물(public houses)의 개방 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한다.
 - ② 법원이 가지고 있던 허가권을 지방정부에 이양한다.
 - ③ 마을회관(village hall), 교회, 지역사회 건물 등은 계속해서 오락업 허가 면제 대상으로 유지한다.
 - 임시로 주류업 및 오락업을 허용하는 '약식허가제(light touch system)'를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농촌 지역사회의 단체들이 지역 축제(festival)이나 문화 행사를 개최하기가 더 쉬워지고 비용이 덜 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약식허가제의 상세한 내용은 Licensing Communications Strategy 팀이 마련한다.
- 정책 조정 결과와 현 상태
 - 새로운 개정 법의 적용 시점, 즉 언제부터 허가를 새로이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다.

- 새로운 개정 법이 탄탄한 기초 위에서 실행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평가하기에 이른 시점이다.
- 문화매체체육부와 지방정부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

사례 2: 문화매체체육부(Department of Culture, Media, Sport)의 공공도서관 정책 관련 Rural Proofing

- 공공도서관 정책의 목적
 - 공공도서관들을 현대적인 목적에 맞게 재편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할 활동 영역 3가지를 설정했다.
 - 독서 및 정보 학습을 촉진한다.
 - 전자정부 개념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에의 접근성을 강화한다.
 - 공공도서관 이용에 있어 사회적 배제를 완화하고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시민의식을 함양한다.
- 정책 개발 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던 농촌 지역의 특수한 환경과 요구
 - 농촌 주민들이 공공도서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가능한 최대한 많은 농촌 지역의 도서관들을 광대역 인터넷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업체와 연계시켜 함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 Rural Proofing 활동 내용
 - 공공도서관 서비스 기본 계획을 마련하여 공표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세부 행동계획을 마련했다.
 - 로터리 재단이 후원하는 'People's Network 프로그램'이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게 했다. 이때 농촌 지역이라고 해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 People's Network 프로그램이 광대역 인터넷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업체 협회와 함께 협의하며 사업을 수행하도록 유도했다.
- 정책 조정 결과와 현 상태
 -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농촌 지역사회를 포함한 모든 지역의 공공도서관 서비스는 지금보다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

16 국내외 관련 제도와 정책

- People's Network 프로그램은 잉글랜드 지역 도서관의 99% 이상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농촌 지역에 실질적인 편익을 가져왔다. 그런 혜택을 받은 도서관들 중 89%가 초고속망에 접속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사례 3: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의 교육접근성 및 통학비용 지원 정책 관련 Rural Proofing

- 정책 실행 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던 농촌 지역의 특수한 환경과 요구
 - 해당 사업 기금이 농촌 지역에도 잘 전달되어 작동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었다. 농촌 지역은 특히 통학거리가 더 멀고 통학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 Rural Proofing 활동 내용
 - 70개의 Transport Pathfinder Initiative에 여러 농촌 지역이 선정되었다. 이로써 2003년 7월까지 조성하여 2006년까지 집행하기로 한 16~19세 학생 대상 교통 기금 수혜 대상지역이 마감되었다.
 - 교육부는 이 기금이 특히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 교통비용이 특별히 많이 드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활용될 것이라는 점을 시행지침에 명시했다.
- 정책 조정 결과와 현 상태
 - 현 상태에서는 정책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Pathfinder 프로그램이나 여타의 교통정책에 대한 평가는 추후 진행될 것이다.

사실상 여러 정부 부처들이 각기 기능적 영역 속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 가운데에는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매우 많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의 상황이 영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중앙정부 부처들이 ‘농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여’ 정책을 개발하거나 실행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모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영국이 Rural Proofing을 통해 그런 시도를 했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삶의 질 향상 계획’이 그러한 노력의 한 사례이다. 그러나 ‘삶의 질 향상 계획’과 Rural Proofing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첫째, ‘삶의 질 향상 계획’은 여러 부처들이 추진하는 농촌 지역 관련 정책들을 계획 단계에서 조정하고 조율할 수 있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으나, 여러 정부 부처의 정책 입안자들이 실질적으로 ‘농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도록’ 독려하는 ‘활

동(체크리스트, 교육, 컨설팅 등)'이 부재한 상태이다.

둘째, 그러한 활동 부재 상태는 사실 '제도적 장치'의 미흡에 기인한다. '삶의 질 향상 계획'이 총리실 주관으로 되어 있어 형식적으로는 하위의 여러 정부 부처들을 규율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 영국의 Rural Proofing을 주도했던 농촌청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은 영향력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예산 계획 수립 과정에서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셋째, '삶의 질 향상 계획' 시스템이 Rural Proofing과 유사하게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여러 정부 부처들이 '농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도록' 촉진하는 활동에는 매우 전문적인 인력이 다수 필요하다. 정책을 입안하는 여러 정부 부처 관료들을 상대로 수시로 조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욱 깊은 조사연구 작업을 수행할 인력이 있어야 한다.

넷째,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 기준'을 제정하고 도입하려 하는 시점이다. 그러한 기준이 실질적으로 농어촌 정책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려면, Rural Proofing과 같은 강력한 정책 조정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해 본다. 이처럼 상위 수준에서 정책을 조율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근본적으로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론을 어떻게 조성해 나갈 것인가라는 전략적 문제 또한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1. 영국의 Rural Proofing 체크리스트

‘삶의 질 향상 위원회’가 도입하려는 농어촌 영향 평가 제도가 모델로 삼고 있는 영국의 Rural Proofing 체계가 안착되고 그 활동이 확산되기까지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 그 가운데 무시할 수 없이 중요한 요인은 Rural Proofing을 수행할 정책 담당자들에게 실무적 차원에서 도움이 될 체크리스트, 교육·훈련, 컨설팅 등 많은 지원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특히 Rural Proofing 체크리스트는 영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스스로 담당 정책이 농촌 지역에 차별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지 점검하도록 만든 도구이다.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것은 Rural Proofing에 있어 핵심적인 활동이다. 각급 공공기관의 Rural Proofing 활동을 연례적으로 평가하는 농촌 지역사회 위원회의 보고서에서도 체크리스트 활용과 관련된 내용은 주요 평가 항목 여섯 개 가운데 두 개나 포함되어 있다. 연례 평가 보고서에서는 영국의 중앙정부 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이 수행한 Rural Proofing 활동을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Beadle, 2007; Countryside Agency, 2003, 2004).

- 체크리스트를 해당 기관 내 실무자들에게 널리 배포했는가?
- 농촌 지역사회 위원회와의 연락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례적인 모임을 가졌는가?
- 정책 입안 과정에서 Rural Proofing 활동이 병행되게 하는 분위기와 구조를 갖추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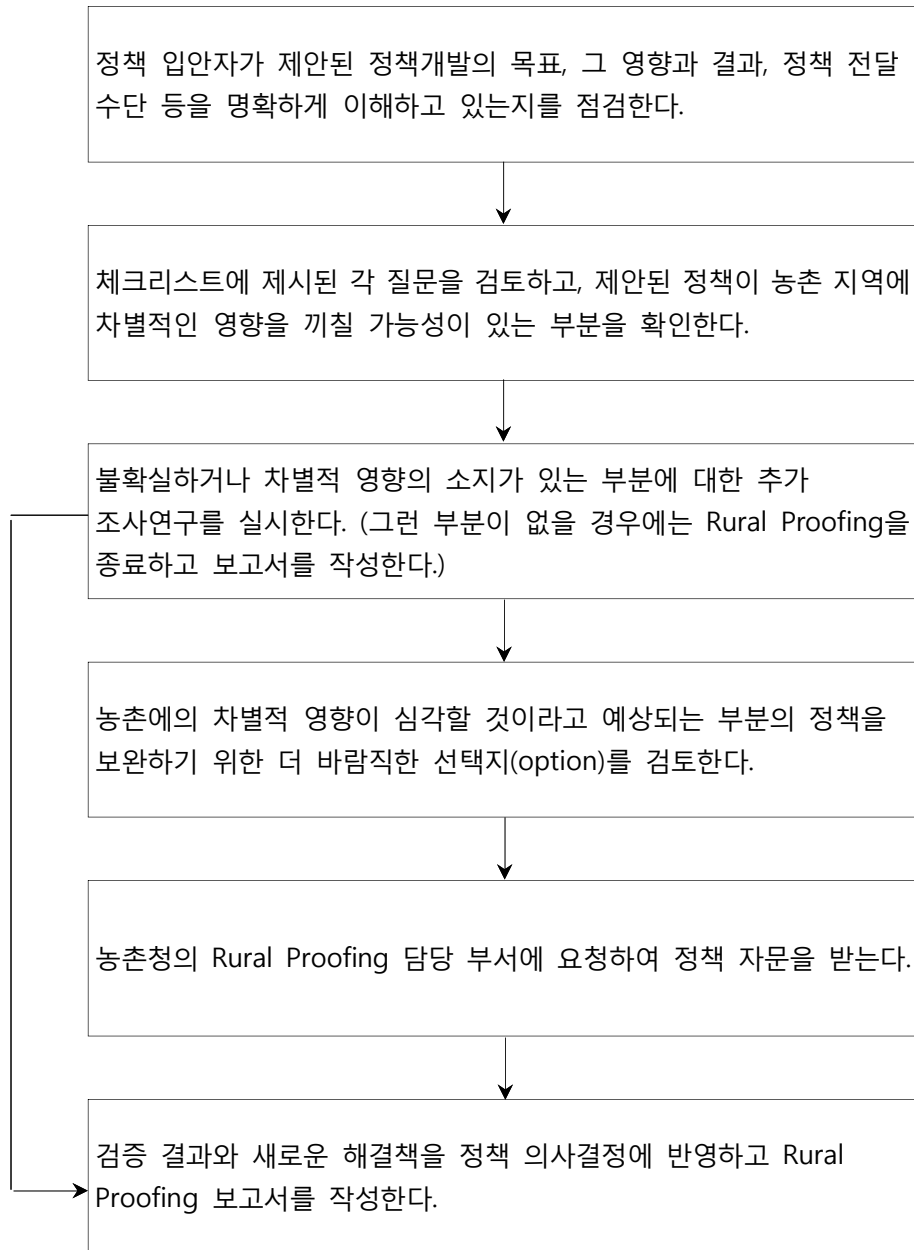
20 실무 지침 및 도구 개발을 위한 관련 사례 분석

- Rural Proofing과 체크리스트를 기관 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행하도록 독려했는가?
- Rural Proofing 대상 정책을 선정하고 그 정책에 대한 Rural Proofing 과정을 점검했는가?
-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여 농촌 문제에 대한 직원들의 의식을 고양했는가?

영국 Rural Proofing의 핵심은 공공기관의 정책 담당자들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농촌 관련 정책을 점검하게 하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체크리스트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Rural Proofing이 기본적으로는 정책 담당자들의 참여와 직접적·자발적 실행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수의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절차를 숙지하고 그대로 실행할 수 있게 준비시키는 노력이 Rural Proofing 제도 도입 초기에 중요한 과제였다. Rural Proofing 제도 도입을 주도했던 영국 농촌청은 <그림 4-1>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절차를 마련했다. 이는 정책 입안자 또는 실행 과정의 담당자가 수행해야 할 체크리스트 활용 절차이다.

정책 담당자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한 결과, 추가적인 조사나 평가가 필요하거나 다른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면 농촌 지역사회 위원회(Commission for Rural Communities)에 문의해야 한다. 물론, 이 체크리스트가 고려해야 할 농촌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전부 반영하지는 못한다. 추상성이 높은 일반적인 문장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촌청(현재, 농촌 지역사회 위원회)의 교육, 자문, 컨설팅 등의 보완적 활동이 중요하다.

그림 3-1. Rural Proofing의 절차



자료: 마상진·박대식(2006)

영국에서 Rural Proofing이 도입된 초기인 2001년에 농촌청이 최초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그 다음 해에 개정되어 총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가 배포되었다(Countryside Agency, 2002). 이후, 체크리스트는 계속 보완되어 지금은 1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Commission for Rural Communities, 2009). 그리고 영국 농촌 지역사회 위원회에서는 정책 담당자가 체크리스트 항목별로 담당 정책을 검토한 결과 추가로 고려할 수 있는 대안적 정책 선택지들을 제시하고 있다<표 3-1>.

표 3-1. Rural Proofing 체크리스트 항목과 대안적 정책 선택지

구분	항목	대안적 정책 선택지
서비스 공급과 활용 가능성	1. 정책이 농촌 주민의 공공·민간 서비스 활용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가? 예를 들어 서비스 전달 창구(service outlet)를 폐쇄하거나 통합할 때 서비스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농촌 지역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가? 특히, 농촌 서비스 기준과 관련하여 영향을 주는가?	1-1. 서비스 통폐합을 보완하는 교통 수단 제공 및 접근가능성 제고 1-2.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방안 강구 1-3. 주요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도록 주민에게 제공하는 '창구'에 대한 추가적 재정 지원
	2. 정책 서비스가 학교, 은행, 병원 등 현존하는 서비스 창구를 통해 제공되는가? 서비스 창구가 부족한 지역에서 농촌 주민들이 해당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보장할 수 있는가?	2-1. 이동 전화 또는 방문 서비스 활용 2-2. 서비스 창구를 주민이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정보통신기술 활용 2-3. 농촌 지역의 서비스 창구 유지 또는 신규 설치를 위해 다른 종류의 서비스 제공자와 시설이나 직원을 공유(합동 서비스)
	3. 정책 서비스가 민간 부문 또는 민간 공공 부문 협력을 통해 제공되는가? 인구가 작고 인구가 분산된 농촌 지역이 민간 부문을 끌어들이기 만큼 충분한 시장을 제공하는가? 도시 지역과 유사한 선택과 경쟁의 기회가 존재하는가? 농촌 지역의 민간 부문은 서비스 전달 능력을 갖고 있는가?	3-1. 보편적 서비스 제공 의무를 포함한 법규 도입 및 활용 3-2. 농촌 서비스 전달 목표 설정 3-3. 수익성 높은 (도시) 시장에서만 서비스를 전달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계약 체결 3-4. 인센티브로 상업적 서비스 제공자를 지원 3-5. 농촌 지역에서의 서비스 비용 할인(예: 요금 할인 등)
커뮤니케이션	4. 정책 개발 또는 실행 과정에서 농촌 주민이 접할 수 있는 정보 창구가 한정되어 있음을 고려했는가? 상담 서비스나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적인 창구가 많지 않은 농촌 지역에서 고객들은 어떻게 접근하는가?	4-1. 기존 네트워크(우체국, 마을회관 등)를 신축적으로 활용 4-2. 여타 정보 제공자들과 연계 4-3. 지역 라디오 및 신문 활용 4-4. 전화 상담자 지정

서비스 전달	<p>5. 고객이 분산되어 있고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어려운 농촌 지역에서 더 많은 서비스 전달 비용이 더 드는가? 고객에게 도달하기까지 이동시간이 길고 거리도 멀다는 점이 농촌 지역에서의 서비스 공급 비용을 증가시키는가? 보다 규모가 작은 서비스 창구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하면 규모의 경제가 사라지는가?</p>	<p>5-1. 자금 지원 규모 산출 공식 또는 비용 효율성을 검토할 때, 농촌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단위 전달 비용을 허용(예: 인구밀도를 고려) 5-2. 비용 절감을 위해 합동 서비스 공급을 장려</p>
비용	<p>6. 서비스 전달에 지역 기관들을 활용하는가? 민간·공공 및 자발적 결사체 부문 조직들이 규모도 작고 파트너십 형성 능력도 부족한 농촌 지역에서도 효과적인가? 자금이나 서비스가 입찰을 통해 분배된다면 소규모 조직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가?</p>	<p>6-1.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6-2. 입찰을 위해 보다 긴 시간 설정 6-3. 입찰 과정 단순화 6-4. 제한된 민간 부문 투입을 보충하기 위해 공공 및 자발적 결사체 부문의 투입 수준을 증대</p>
사회적 약자	<p>7. 정책은 농촌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이웃과 거의 접촉이 없는 취약계층을 어떻게 확인하여 정책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가 농촌 지역에 특징적인 결핍(서비스 접근, 취업 기회, 주택 이용가능성 등)을 잘 측정할 수 있는가?</p>	<p>7-1. 결핍이 존재함을 식별하기 위해 소 지역 통계 활용 7-2. 도시와 농촌의 결핍과 관련된 측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표나 가중치를 조정 7-3. 정책 대상 설정을 위해 보다 넓은 지역을 가정 7-4. 분산되어 있는 취약계층을 정책 대상으로 선정 7-5. 지역보다는 인구 집단을 정책 대상으로 설정</p>
	<p>8. 정책이 농촌 주민의 이동 필요성, 이동 비용, 이동 편이성 등에 영향을 주는가? 인구가 분산되어 있고 원격지에 있으며 차량 의존도가 더 높은 반면 교통수단이 제한되어 있거나 교통 비용이 더 높은 농촌 지역에서 그 영향이 달라지는가(특히, 저소득층)?</p> <p>9. 정책은 관련 인프라(정보통신망, 도로, 시설)에 의존하여 서비스를 전달하는가? (취약한 농촌의 인프라 고려)</p>	<p>8-1. 이동 전화, 지역 배달 서비스, 전화·인터넷을 이용하여 이동 필요성을 감소 8-2. 교통망을 조정하거나 개선(예: 추가 서비스, 수요반응적 운송 시스템) 8-3. 서비스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보조를 통해 교통비 인하</p> <p>9-1. 인프라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나 면허 제도 활용 9-2. 서비스 공급이 보다 원활해지도록 수요를 자극하거나 조정 9-3. 공급 촉진을 위해 공공부문의 수요를 활용 9-4.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대안적 수단을 제공</p>

접근성과 인프라	10. 행정구역 경계로 인해 정책 서비스 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가? 농촌 주민이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필요한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이 더 편리한 경우가 많다. 정책이 행정구역 경계로 인해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게 하려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10-1.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게 지방 정부 상호 간의 호혜적인 공유를 장려
	11. 정책이 새로운 건물이나 특정 개발 지역에 의존하는가? 재개발 단지가 거의 없고 주택 신축이나 다른 개발 행위가 제한된 농촌 지역에서 어떻게 입지를 정할 것인가?	11-1. 농촌 계획 당국과 공동 검토 11-2.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곳에 입지할 수 있도록 개발 행위에 신축성 부여 11-3. 지역의 성격과 특징에 걸맞은 고품질 개발이 되도록 보장
경제	12. 정책이 자영업에 포함한 농촌의 모든 사업체에 영향을 주는가? 소기업이나 농촌 지역에서 더 큰 중요성을 갖는 부문(예: 농업, 건설업)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가(부업 활동을 영위하는 여성을 포함한) 농촌 지역의 자영업 종사자들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12-1. 소기업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다루어지도록 보장 12-2. 기업에 대한 지원, 훈련, 조언 제공 12-3. 소기업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나 여타의 부담은 가급적 회피
경제	13. 정책이 토지 기반 산업에 특별한 영향을 주고 농촌 경제와 환경에도 영향을 주는가? 농촌 지역에서 특히 중요한 농업, 광산채굴업, 수자원 관련 산업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가(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면 관광위락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식량산업 등의 천연자원 기반형 경영체들에 대한 함의는 무엇인가?)	13-1. 경제적·환경적 편익을 전달할 수 있는 상생(Win-Win) 해법 개발(농업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지역 공급망 확대 등) 13-2. 환경친화적 비즈니스에 대한 인센티브 강구 13-3. 다양한 농촌형 비즈니스 허용 및 장려
	14. 정책이 농촌의 저임금, 파트타임, 계절 노동자에게 영향을 주는가? 농촌 지역의 노동자 임금은 평균을 하회하는 경향이 있고 노동 인구 중에는 부업 또는 계절적 임노동에 종사하는 이가 많다. 정책은 임금 수준이나 좋은 일자리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저임금 계절(또는 부업) 고용 관련 사업(농업 관광업 등)에 영향을 미치는가?	14-1. 당해 정책이 임금과 복지편익 간 고용과 실업 간 이행을 보장하는 다른 정책들(특히 복지정책)과 상충되지 않는지 점검 14-2. 직업 선택폭을 높일 수 있는 방안(숙련도 증대, 지역 아동보육 향상, 통근수단 개선) 강구

자료: Commission for Rural Communities(2009).

Rural Proofing 활동을 지원하는 농촌 지역사회 위원회(과거에는 농촌청)가 제시하는 체크리스트는 점검해야 할 항목을 일반적인 수준에서 열거하고 있으며, 영향 평가 절차도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또 제도 도입 당시부터 농촌청이 제시한

체크리스트만을 활용하도록 강제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Rural Proofing 제도가 해를 거듭하여 정착되는 과정에서 여러 공공기관들이 변형된 형태의 Rural Proofing 체크리스트를 다양하게 만들어 활용하였다. 어떤 기관들은 정책 담당자들이 기존의 정책 과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를 개발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광역적 수준에서 정부 사무소 등이 지역발전 전략이나 서비스 공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전략 또는 계획이 농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도록 실무적 도구를 개발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많은 종류의 Rural Proofing 체크리스트가 여러 공공기관으로부터 나왔는데, 그것들을 대략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농촌청이 모델로 제시한 체크리스트를 단순히 조금 보완한 수준의 것이다. 둘째는 해당 공공기관이 체크리스트에 포함된 점검 항목을 여건에 맞추어 변형한 것이다. 셋째는 해당 공공

표 3-2. Rural Proofing 체크리스트의 주요 구성 요소

구분	구성 요소	비고
①	농촌 영향 평가 절차에 대한 개괄적 설명	예: 1단계-정책제안의 명료화 2단계-농촌 특성을 고려한 정책 제안 검증 3단계-검증 결과 예상되는 영향의 중요성 평가
②	농촌 영향 평가 시기에 대한 조인	예: 정책개발 주기의 초기 단계
③	체크리스트 사용자의 이해를 돕는 농촌 지역의 특성 목록	농촌성(rurality), 낮은 인구밀도, 주변성(peripherality) 등의 요인이 정책에 제기하는 도전이 무엇인지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목적
④	정책 입안자의 검토 과정을 유도하는 질문 목록	예: 해당 정책을 실행하려면 농촌 지역에 서비스 공급 장구가 필요합니까?
⑤	정책 대안 추천 목록	예: 통합 서비스 공급 창구, 정보통신 기술 활용
⑥	Rural Proofing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한 설명	예: 정책의 효과성 증진, 사후에 정책을 수정해야 할 리스크 감소, 농촌의 정책 고객으로부터 신뢰 확보
⑦	Rural Proofing 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 지침 및 후속 정책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 제공	Rural Proofing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설명성(accountability) 확보를 목적으로 함

자료: Brian Wilson Associates and Rural Innovation(2008)

기관의 임무와 관련된 특정 분야에 적합하게 크게 변형한 것이다. 다양하게 개발된 체크리스트들이 저마다 특징이 있지만, 그것들을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체로 <표 3-2>에 정리한 것과 같은 요소들 중 몇 가지가 결합된 형태이다(Brian Wilson Associates and Rural Innovation, 2008).

영국의 Rural Proofing은 ‘체크리스트의 도움을 받아 정책 담당자들이 스스로 정책이 농촌에 끼칠 영향을 점검하게’ 하는 것을 핵심적인 수단으로 삼고 있기에, ‘체크리스트 접근방법’이라고까지 이르기도 한다. 이른바 ‘체크리스트 접근방법’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수년 동안 Rural Proofing 제도를 운용하면서 얻은 이점이 있어 그 비판을 상쇄하였다는 평가가 있다(Brian Wilson Associates and Rural Innovation, 2008). 체크리스트를 핵심 수단으로 하는 Rural Proofing 제도 운용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긍정적 평가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농어촌 영향 평가 제도’ 또한 정책 담당자의 자발적이고 사전적인 분석·평가 작업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Rural Proofing의 ‘체크리스트 접근방법’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이다.

Rural Proofing 체크리스트 활용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자문이나 컨설팅 같은 다른 수단이 정책 입안자에게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때에도, 정책 담당자가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아주 단순한 양식에 따른 검토 절차(체크리스트)만을 적용하고 끝낼 가능성이 있다. 둘째, Rural Proofing의 체크리스트는 정책이 농촌 지역사회에 가져올 성과보다는 과정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셋째, 체크리스트는 답을 제공하지 않고 오히려 모호하고 불편한 이슈나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부정적이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비칠 수 있다. 넷째,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서 농촌 지역의 여건과 필요의 다양성을 간과하고 농촌에 대해 지나치게 단순한 관점을 갖게 될 수 있다. 다섯째, 특정한 농촌 지역의 요구를 간과하거나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사이의 상호작용을 놓치게 만들 수 있다. 여섯째, 농촌 정책과 관련된 분야 말고도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활용해야 하는 이미 다른 종류의 많은 체크리스트가 존재한다. Rural Proofing 체크리스트는 정책 입안자에게 관료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상과 같은 비판이 있음에도 Rural Proofing 체크리스트를 도입함으로써 이점을 얻었다고 평가되는데,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크리스트는 농촌의 여건이나 농촌 주민의 필요에 대해 지식을 별로 갖추지 않은 정책 실무자들에

게 유용하다. 둘째, 농촌의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정책 실무자들에게도, 체크리스트는 정책 이슈들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중요한 사항을 간과할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셋째, 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농촌 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체크리스트 사용자가 일반론적인 수준의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구조적인 방식으로 사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넷째, 체크리스트는 정책의 타당성 검토 과정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유용한 방향지시등이 될 수 있다. 다섯째, 문서화된 형태로 정책의 영향을 분석하게 함으로써 정책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설명성(accountability)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섯째, 체크리스트는 적어도 정책 입안자들이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이다.

영국 농촌청이 작성한 Rural Proofing 체크리스트는 기본적으로 추상성 수준이 높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Rural Proofing 제도 도입 초기에 주요 대상자였던 중앙정부 부처나 광역적으로 분포한 정부 사무소 정책 담당자들이 관련된 농촌 지역의 특성을 상당히 포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만들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런데 Rural Proofing이 상당히 확산된 현재 시점에서는 중앙, 지방을 구분할 것 없이 많은 공공기관이 ‘체크리스트 접근방법’을 스스로의 여건에 맞게 변형하였다. 그렇게 다양한 변형태의 체크리스트가 나오게 허용함으로써 혼란을 일으키거나 실무 도구의 질적 수준이 빈곤해질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Rural Proofing 제도 도입 초기에 의도한 방향이기도 하다. Rural Proofing을 수행하는 여러 공공기관들이 저마다 여건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2. 여성가족부의 성별 영향 평가 지침

성별 영향 평가 제도는 특정 대상 인지적 정책 조정 과정으로 우리나라에서 제도화된 최초의 사례이다.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별 영향 평가 제도는 여러 해 동안 많은 실적을 쌓아 최근에는 성인지 예산 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성별 영향 평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정부의 여러 부처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게 개발한 실무적 도구로는 ‘성별 영향 평가 지침’을 들 수 있다.

표 3-3. 여성가족부 성별 영향 평가 지침의 주요 구성 요소

구분	구성 요소	비고
①	성별 영향 평가 제도에 대한 개괄적 소개	성별 영향 평가의 개념, 필요성, 유형, 법적 근거, 추진 체계와 추진 방법
②	성별 영향 평가 대상 과제 선정과 관련된 지침	대상 정책 선정 기준, 평가 수행 기관별 평가 대상 과제 수, 평가 대상 선정 시 적용할 체크리스트
③	성별 영향 평가 지표와 적용 방법	성별 통계의 생산 및 활용, 정책의 성별 관련성 파악, 정책 결정 과정의 양성평등 참여, 성 인지 예산, 정책 수행 방식의 양성 평등성 정책 수혜의 양성평등성, 정책 개선 방안
④	제도 개선 환류 방안	
⑤	행정사항	

자료: 여성가족부(2010)

‘성별 영향 평가 지침’은 여성 발전 기본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게 되어 있는 성별 영향 평가 제도의 개요, 평가 절차 및 지표 등 일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행정 문건이다. 앞 절에서 검토한 영국 농촌 지역사회 위원회의 “Rural Proofing Guidance: Tackling rural disadvantage”와는 달리 행정적 구속력을 갖는 문건이지만, 행정적 절차를 지시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내용의 구성 면에서는 유사한 점이 있다.

<표 3-3>에 정리한 ‘성별 영향 평가 지침’에서 평가를 수행하는 정책 담당자들이 참고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③성별 영향 평가 지표와 적용 방법’이라 할 수 있다. Rural Proofing 체크리스트와 비교하자면, 정책 입안자의 검토 과정을 유도하는 질문 목록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점검 포인트’와 ‘참고자료 및 분석방법’의 두 가지로 제시되어 있다. 점검 포인트는 Rural Proofing 체크리스트의 질문에 해당된다. 단, 차이가 있다면 Rural Proofing 체크리스트에서는 농촌의 제반 특성을 고려하게 유도한 질문 목록에 병렬적으로 정책 대안을 소개하고 있는데, ‘성별 영향 평가 지침’에서는 점검 포인트에서 제시한 내용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그리고 참고가 될 만한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선택 가능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④제도 개선 환류 방안’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

표 3-4. 성별 영향 평가 지침의 평가 지표 및 적용 방법

구분	항목	참고 자료 및 분석 방법
성별 통계의 생산 및 활용	1. 사업계획 및 사업평가보고서, 백서 등 주요 문헌에서 성별 통계가 사용되고 있는가?	1-1. 정책기획서(사업계획서), 사업평가보고서, 지자체 통계연보, 백서의 사업 현황자료에서 성별 통계 사용 여부 검토
	2. 관련 법령 및 사업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적 통계 양식이 성별 통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가?	2-1.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사업지침의 사업신청서, 지원서, 결과보고서 양식 검토
정책의 성별 관련성 파악	3. 정책과 관련한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현실과 요구를 파악하였는가?	3-1. 선행조사 및 관련 보고서 결과, 실태조사, 시민단체 요구에 나타난 성별 요구 확인 3-2. 남녀의 성별 역할, 경제적 위치, 신체 사회문화적 위치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 3-3. 기타 모집단 자체에 성비가 다른지 분석
	4. 파악된 성별 현실과 요구가 기획안에 반영되었는가?	4-1. 정책 계획서 내용 검토
	5. 정책의 목적과 수단이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에 부합하는가?	5-1. 여성정책기본계획,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국정과제 등
정책 결정 과정의 양성평등 참여	6. 정책의 자문·심의·의결 관련 위원회 또는 정책사업 선정·심사 평가에 관여하는 실무위원회가 있는 경우 동 위원회의 역할과 성별 위원 비율은 어떠한가?	6-1. 자문, 심의, 의결 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 참조 6-2. 사업 선정·심사·평가 관련 실무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 참조 6-3. 담당 부서 종사자 직위 성별 비율 점검
	7. 여성 위원 위촉이나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여성 전문가 pool 확보 등)이 있었는가?	7-1. 여성 전문가 pool 확보 방법 점검
성인지 예산	8. 예산 편성 시 남녀 비율과 정책에 성별 요구를 고려하여 책정했는가?	8-1. 해당 사업 계획서 예산 편성안 분석
	9. 수혜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가?	9-1. 해당 사업 계획서 예산 편성안 분석

정책 수행 방식의 양성 평등성	10. 정책 홍보 방식이 남녀 수혜 대상자가 해당 정책에 대해 동등하게 인지하도록 하는 홍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가?	10-1. 해당 사업 홍보 매체, 홍보 관련 지침에서 남녀 접근성이 균등한지 분석
	11. 사업 수행 방식이 남녀가 사업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수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11-1. 해당 사업 신청서 양식, 신청 방식 분석 11-2. 해당 사업 담당 공무원 및 인력, 성인지력 조사(면접) 11-3. 해당 사업 지침 내용 분석 11-4. 신청 자격, 교육장소, 교육시간이 여성(혹은 남성)에 불리한지 분석
정책 수혜의 양성 평등성	12. 정책의 수혜자 성비가 정책 대상 모집단과 비교해 형평한가(인적 형평성)?	12-1. 성별 통계와 정책 집행 결과 보고
	13. 예산 집행액(지원금)의 성별 배분 규모는 모집단과 비교해 형평한가(예산 집행의 형평성)?	13-1. 예산집행 보고 내용 참조
	14. 수혜자의 주관적인 정책 만족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정책 만족도)?	14-1.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 참조
정책 개선	15. 사업 평가 결과, 정책의 성 불평등성 개선을 위한 노력사항, 예산 반영 등 사업 개선 방안 제시	15-1. 각 지표별 성별 영향 평가 결과에 근거한 향후 개선 사항 정리 * 다년도 사업의 경우, 도출된 결과를 후속 사업계획에 반영하였는지 점검(연속사업 환류 점검)
	16. 사업 평가 결과, 예산에 반영한 내용을 상세하게 제시	16-1. 기존 사업에 예산을 추가 편성 16-2. 신규 사업에 예산을 편성 16-3. 동일 예산으로 사업방식 변경
	17. 정책 집행 결과는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가?	17-1. 성별 영향 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 평가

자료: 여성가족부(2010)

성별 영향 평가 지침에서 제시하는 점검 포인트는 7개 분야 총 17개 항목이며, 각 항목에 대해 참고하고 분석해야 할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성별 영향 평가 절차에 대해서 행정지침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평가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결과물들을 제출할 서식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게다가 성별 영향 평가를 수행하는 이가 ‘성별 영향 평가 지침’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분석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풍부한 예시와 보완 설명을 곁들인 ‘성별 영향 평가 매뉴얼’까지 마련하여 보급하고 있다.

3. 시사점

영국의 Rural Proofing 제도와 우리나라의 성별 영향 평가 제도의 공통점 중 하나는 공공기관 실무자가 특정한 대상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면서 정책을 분석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런 분석의 실무 도구로서 Rural Proofing 제도에서는 ‘체크리스트’가, 성별 영향 평가 제도에서는 ‘성별 영향 평가 지침’이 유사한 구조로 제작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비교하면 두 실무 도구 사이에는 차이점이 드러난다. 이로부터 ‘농어촌 영향 관리’ 활동의 실무 도구를 준비하는 데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체크리스트를 비롯한 농어촌 영향 관리 활동을 ‘최대한 단순하게 설계할 것인가’ 아니면 ‘최대한 종합적으로 설계할 것인가’라는 선택 범위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체크리스트 사용자(정책 담당자)에게 간략한 실무적 도구만을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많은 정보와 조언을 제공해야 할 것인지, 그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영국의 Rural Proofing 사례에서 고찰할 수 있었던 많은 체크리스트 또는 가이드 등의 문헌들은 대체로 그 중간 수준의 절충안을 선택하였다. 성별 영향 평가 사례에서는 가능한 상세하고 고정된 실무 절차와 검토 사항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하였다. 정부 부처나 광역 지방자치단체 정책 담당자에게 최대한 자세한 농어촌 영향 평가 ‘체크리스트’와 ‘절차’를 부여한다면 업무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된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한편, 아주 간략한 실무 도구를 제공하는 선에서 그친다면 농어촌 영향 평가 제도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정책 담당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확보하기 용이한 여건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정책이 농어촌에 끼칠 영향을 검토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양적·질적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 그런 자료 없이 수행되는 농어촌 영향 평가는 피상적이고 쓸모없는 절차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풍부한 자료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영국의 Rural Proofing 제도 도입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지적된 내용이었다(Brian Wilson Associates and Rural Innovation, 2008). 여러 해 동안의 성별 영향 평가 시행 경험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도출한 연구에서도 ‘성별 통계가 핵심 요건’임을 밝히고 있다(김양희 등, 2006). ‘삶의 질 향상 위원회’가 광범위한 통계 기반을 확충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체크리스트’ 등 농어촌 영향 평가를 지원하는 실무 도구에서도 근거 자료, 특히 통계 자료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돕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1. 조사 및 분석의 개요

Rural Proofing과 성별 영향 평가 제도에서 활용한 체크리스트(또는 점검 포인트)를 검토한 결과, 정책이 농어촌에 미칠 영향을 검토할 정책 실무자에게 일정한 지침과 검토 항목을 사전에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Rural Proofing의 경우처럼 정책 실무자가 중점적으로 검토할 내용만을 제시하는 체크리스트는 불충분하므로 성별 영향 평가 지침에 제시된 항목을 절충하여 검토해야 할 내용과 검토 방법을 더불어 안내하는 체크리스트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렇게 해서 5개 분야 17개 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 시안을 만들었다.

이 시안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하려 3개의 정책 사례를 선정하여 체크리스트 시안이 안내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책이 농어촌의 특성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검토한 3개 정책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 - 보건복지부
-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 지원 사업 - 여성가족부
- 초·중등학교 교원 수급 정책 - 교육과학기술부, 각 지방교육청

이 사례들을 검토 대상으로 선정한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다. ‘삶의 질 향상 위원

회'에 참여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등 6개 정부 부처의 2010년 업무 계획 등에 명시된 정책 사업들과 언론 등을 통해 정책의 효과가 농어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 제기된 정책 등 41건을 1차 선별하였다⁵. 1차 선별의 원칙은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정책의 효과가 농어촌에서 불리하게 나타날 수 있는 농어촌 지역 특성의 세 측면, 즉 '서비스 인프라에의 접근성', '지역경제 구조', '지역사회 특성' 등으로 미루어볼 때 유의미한 사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그렇게 선별한 41개 사례 후보에서 전문가 토론을 거쳐 8개의 정책 사례를 2차 선별하였다. 이때의 선별 기준은 1차 선별 때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도시와 농어촌 지역을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정책의 내용이 이미 농어촌의 특수한 여건이나 사정을 염두에 두고 기획된 것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추가로 적용하였다⁶. 이후, 연구진이 현실적인 조사 분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앞에 열거한 3개의 정책 사례에 관해 시험적인 차원에서 농어촌 영향 평가 과정을 진행하였다.

2. 사례 분석: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보건복지부)

2.1. 정책의 개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2004년부터 추진한 정책 사업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보건복지부 웹페이지에서 밝히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과 아동복지법 제4조 4항, 제14조 1항, 2항, 3항, 제16조 11항 정도를 이 정책 사업의 근거 법률 조항이라 할 수 있다.

⁵ 첫 번째 선별한 분석 대상 사례 후보 목록은 <부록 1>을 참고.

⁶ 두 번째 선별한 정책 사례의 개요와 선정 근거는 <부록 2>를 참고.

표 4-1.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지원 현황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지원개소	500	800	902	1,800	2,088	2,788	2,946
지원단가 (만 원)	67	200	200	200	220	상반기: 220 하반기: 320	320
예산(억 원)	12	73	98	206	282	457	568

자료: 보건복지부(2010)

이 사업의 시행 규모는 최초로 시행한 2004년 이후 꾸준히 확대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 한 해 동안 500개의 지역아동센터에 월 67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총 12억 원의 사업비를 지출했는데, 2010년에는 2,946개의 지역아동센터에 월 32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총 568억 원의 사업비를 지출했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수혜 집단은 지역의 취약계층 아동이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서는 이 사업의 기본 개념을 다섯 가지로 밝히고 있다. 첫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보육 및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급식을 지원하여 결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둘째, 이 사업은 교육적 기능도 함께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학습 능력을 제고하고 학교 부적응을 해소하고 일상생활을 지도하여 학교생활을 유지하고 적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이다. 셋째, 아동의 심리적·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신체발달을 꾀하는 것도 이 사업이 추구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넷째, 문화적으로 소외된 아동에게 다양한 문화 경험을 제공한다. 다섯째, 지역사회 자원을 확보하고 발굴하고 지원하여 지역사회 내 아동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과 사후 연계 대응 역량을 키우는 것도 사업의 중요한 개념이다.

그러한 취지하에 이 사업이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네 종류의 프로그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보호 프로그램이다. 빈곤·방임 아동 보호, 일상생활 지도, 급식 제공, 위생 지도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둘째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학교생활 준비 지원, 숙제 지도, 기초학습 부진 아동 특별 지도, 예체능 교육, 독서 지도, 방과 후 학습 지도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셋째는 놀이 및 오락 프로그램이다. 문화체험, 견학, 캠프, 공동체 활동, 놀이 활동 지원, 특기적성, 단체 영화 관람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넷째는 보호자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다. 가

정방문, 상담, 정서적 지원, 부모 및 가족 상담, 후원자나 봉사자 등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 연계, 사례 관리 등의 활동이 이 프로그램에 속한다.

2.2.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영향 분석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서 모두 시행되고 있다. 도시와는 달리 농어촌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이 사업의 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사업 지침 등 문헌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도시 및 농촌 지역 간에 사업 시행상의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농어촌 지역의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실무자와 면담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수많은 지역아동센터가 각기 그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것이 불합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일단 인지하고 그것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사업 지침에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 종사자 수, 시설 규모, 프로그램 내용 등에 따른 차등 지원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지역 여건을 고려한 예외 규정도 있다. 농산어촌에 소재하고 인근에 방과 후 돌봄 시설이 없는 지역의 아동센터에 대해서는 공모 시 평가 순위와 관계없이 별도 심사 후 지원할 수 있게 문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그렇게 차등 지원 또는 특별 규정을 지침에 명시했지만, 그것이 도시와 농촌 사이에 형평성 있는 정책 효과가 발휘되기에 충분하라는 물음에 충분한 답이 되기는 어렵다.

농산어촌 소재 지역아동센터를 별도로 심사한 후 지원한 사례가 전체 지원 사례 가운데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전국 농어촌에 소재하는 지역아동센터 가운데 어느 정도가 별도 심사를 받고 지원받았는지 집계된 통계 자료에 연구진 등 외부인이 접근하기는 어렵다. 자료가 잘 집계되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보다도 더 기초적인 조건으로 지역아동센터가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에 어느 정도 분포하고 있는지 잘 정리된 도시-농촌 분리 통계도 발표되어 있지 않다.

현재로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구분된 현황 자료가 있을 뿐이다. <표 4-3>의 현황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도에 소재한 지역아동센터를 모두 농

표 4-2.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및 상근 종사자 수에 따른 지원 기준액

단위: 천 원

이용 아동 수(상근 종사자 수)	기준액
10인 미만(1인)	2,000
10~30인 미만(2인)	3,000
30인 이상(3인 이상)	3,700

자료: 보건복지부(2010)

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 총액 범위 내에서 기준액의 10% 이내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어촌 지역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전국 3,274개 지역아동센터 가운데 도 지역에 소재한 것이 2,076개로 전체의 63.4%를 차지한다. 동부를 도시, 읍·면부를 농어촌으로 규정하는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의 기준을 따른다면 실제 농어촌에 소재하는 지역아동센터 수는 2,076개를 훨씬 밑돌고 있을 것이다.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지역아동센터가 도시와 농촌에 차이 없이 균등하게 분포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농어촌 영향 평가에서 아주 기본적인 일로 간주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도시-농촌 분리 통계’를 작성해야 한다. <표 4-3>에 제시한 자료로 미루어볼 때, 보건복지부의 내부 자료를 다시 정리한다면 도시-농촌 분리 통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정책 수혜 대상자의 분리 통계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이 연구에서 벤치마킹 사례로 거론하고 있는 성별 영향 평가에서도 아주 중요한 점검 포인트로 규정되고 있다. 도시-농촌 분리 통계를 작성했다면, 그 자료에 나타난 분포 경향이 모집단과 비교하여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도시와 농어촌 사이의 형평성을 판단하는 것은 모집단(이 사업의 경우 모집단은 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아동 수 또는 취약계층 아동 수가 된다.)의 분포를 고려할 때 타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검토를 통해 농어촌 영향 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즉 체크리스트나 매뉴얼에 수록해야 할 세 개의 검토 항목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표 4-3. 연도별·지역별 지역아동센터 시설 운영 현황

지역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6월
서울	104	157	210	262	302	334
부산	43	95	110	134	155	167
대구	21	28	35	60	75	94
인천	58	105	117	143	157	167
광주	39	80	92	143	164	182
대전	24	62	83	122	133	139
울산	17	33	41	49	51	55
경기	192	336	402	534	601	636
강원	41	94	102	114	139	153
충북	56	102	118	137	156	171
충남	39	79	87	125	151	166
전북	59	130	147	173	212	228
전남	87	182	216	279	307	336
경북	34	91	108	143	164	182
경남	66	106	128	158	189	204
제주	15	29	33	42	57	60
합계	895	1,709	2,029	2,618	3,013	3,274

자료: 보건복지부(2010)

- 정책 추진 현황을 도시 및 농촌 지역으로 분리하여 비교할 수 있는 통계 자료 (도시-농어촌 분리 통계)가 있는가?
- 도시-농어촌 분리 통계로 파악한 현황을 정책 수혜 대상자 모집단의 분포 경향과 비교할 때 도시 및 농어촌 지역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점이 있는가?
- 도시-농어촌 분리 통계가 없다면, 향후 그런 통계 자료를 확보하려면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

농어촌에 소재한 지역아동센터 2개소의 실무자 면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어촌의 특성으로 인해 이 사업의 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사업에서 그런 차별적 효과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 농어촌 지역의 특성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지역아동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혜자(아동)의 교통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농어촌 지역이 도시 지역에 비해 불리하다. 사례 조사를 수행했던 강원도 홍천군과 경기도 양평군은 각각 1읍 9면과 1읍 11면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이다. 지역아동센터는 홍천군과 양평군 각각 4개소씩 설치되어 있다. 홍천군에는 홍천읍에 2개소 그리고 면 지역에 2개소 있으며, 양평군에는 양평읍에 1개소 그리고 면 지역에 3개소가 있다. 그런데 이 지역들에서 별도의 교통수단 지원 없이 읍·면의 경계를 넘어서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에 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 지역아동센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면 지역이 많고 이 지역의 아동들이 교통 약자여서 사업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둘째, 수혜자(아동)가 넓은 공간에 분산 거주하기 때문에 도시 지역에 비해 농어촌 지역에서 서비스 제공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는 점 또한 이 사업에서 발견된다. 지역아동센터의 차량 운행 비용이 도시에 비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업 지침은 농어촌의 지역아동센터가 지원 예산 지출 항목 가운데 차량 연료비를 융통성 있게 더 많이 책정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지만, 차량 연료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이 아닌 만큼 실효성은 떨어지는 방점이다.

셋째, 농어촌 지역의 사회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도시 지역보다 농어촌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학습을 지도하거나 급식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할 자원봉사자를 구하기가 도시에 비해 농어촌에서 더 어렵다. 더구나 농번기에는 자원봉사자를 얻는 일이 매우 어렵다. 자원봉사자들이 거주지로부터 읍·면 중심지에 소재한 지역아동센터까지 이동하는 데 교통비가 많이 든다는 점 또한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자원봉사자가 부족하다 보니 시설장과 사회복지사 등 상근 종사자가 프로그램 운영보다 급식 업무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아동의 귀가 차량에 동행 탑승하는 시간이 많이 들어 프로그램 운영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넷째, 농어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농어촌 지역에서는 민간 부문에서 물적인 지원을 제공받기가 더욱 어렵다. 부가가치 측면에서 저위에 있는 산업 중심의 농어촌 지역경제 구조는 이 사업에서 중요한 물적 자원을 민간 부문으로부터 동원하기 어렵게 만든다.

다섯째,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도시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보완적인 수단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

는 데 들어가는 물적 자원은 도시와 농어촌을 막론하고 항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농어촌에 비해 도시에서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다른 정책 사업을 이 사업에 연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더 크다. 예를 들어, 아동에 대한 조기 투자를 통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달성하고 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사회통합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시행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2010년 5월 기준으로 전국 94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대체로 도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지역의 이동센터는 이 드림스타트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아동센터 단독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농어촌 지역의 사례는 도시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드물다. 드림스타트 센터가 대부분 도시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농어촌 지역의 취약계층은 도시 지역에 비해 잘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정책의 차별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의 아동을 우선적인 수혜 대상으로 하게 지침에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농어촌 지역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소득 수준이 그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이상과 같은 분석으로부터 농어촌 영향 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농어촌의 특성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농어촌의 도로망, 대중교통, 자동차 보유율 등의 측면에서 주민의 서비스 접근성이 불리하여 정책의 결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가?
- 농어촌의 인구 밀도가 낮아서 정책 서비스 공급 비용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이 농어촌에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가?
- 자원봉사자, 시민단체 등 사회자본과 인적 자원이 부족하여 정책의 결과가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는가?
- 농어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농어촌 지역경제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정책의 결과가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는가?
- 농어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의 자원과 역량이 부족하여 정책의 결과가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는가?
- 거주지가 분산되어 있는 등의 원인 때문에 농어촌에서는 취약계층이 통계나 언론에 잘 노출되지 않는 지역사회의 특성으로 인해 정책의 결과가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는가?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농어촌 서비스 기준에 명시된 사회복지 분야 아동 항목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 항목은 ‘자동차로 20분 내에 초등학교를 위한 아동센터 등 방과 후 돌봄 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기준을 밝히고 있다. 앞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한다면, 이 사업이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부분이 적지 않을 것이다.

2.3. 정책 대안 모색

피상적이거나,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검토한 연구진이 이 사업의 보완 방향을 몇 가지 제안할 수 있다.

첫째는 아동복지법 및 시행령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농어촌 지역의 차등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사업 지침에서 운영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이 도시 지역에서와 비슷한 수준의 정책 효과를 낼도록 해야 한다. 예산 지원 규모를 농어촌에는 다르게 하거나, 이용 아동 수에 따른 차등 지원 규정 등을 농어촌에서는 달리 적용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수혜 대상자 범위 등에 대한 사업 지침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비슷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 아동도 수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농어촌 지역을 고려한 정책 개선의 바탕에는 차등 지원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할 추가적인 예산 확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3. 사례 분석: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 지원 사업(여성가족부)

3.1. 정책의 개요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 지원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2007년부터 추진한 정책 사업이다. 집합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방문 교육 서비스를 실시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 이민자에게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발달 지원 사업 및 이중언어교실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1, 2항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2조가 이 정책 사업의 근거 법률 조항이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사업’,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교실 사업’ 등의 4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사업은 집합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지도사를 파견하여 한국어 교육 또는 아동 양육 관련 서비스(주 2회 5개월, 1회 최소 2시간)를 제공한다. 한국어 교육은 언어 소통이 어려운 입국 초기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아동 양육 지원은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국어 방문 교육 서비스는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한국어교재를 활용하여 수준별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 양육 지원은 좋은 부모의 역할, 임신·출산 및 자녀 양육 전반에 관한 교육과 상담을 지원하는 세부 사업이다.

-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 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 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항: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문화가족 지원법 시행령 제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집합 교육, 방문 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결혼 이민자 등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을 실시하고, 결혼 이민자 등의 취업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을 고려한 직업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은 결혼 이민자를 통·번역 전문 인력으로 채용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 이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족 초등학교 이하 자녀의 언어발달을 위해 다문화 언어지도사를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에 배치하여 언어발달 진단 및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다문화 언어지도사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황을 진단하고, 어휘·구문 발달을 촉진하며 대화·의사소통 및 사회성을 증진하는 내용의 언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언어발달 진단은 2~4회(회당 소요 시간 40분 정도) 실시하는데, 아동의 연령, 발달상태, 주변 상황 등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언어발달 교육은 주 1~2회, 회당 40분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개별 수업과 모둠 수업, 두 종류의 형태로 진행된다.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교실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한국어는 물론 엄마 나라의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에 결혼 이민자의 주요 출신국 별로 이중언어교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다. 주 2~3회당 50분 정도의 수업이 이루어진다.

표 4-4.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실적

구 분	한국어방문교육		아동양육지원	
	지도사	대상가정	지도사	대상가정
2007	288	2,500	230	2,258
2008	1,129	6,265	1,559	11,497
2009	1,264	9,200	1,295	9,400

세부 사업별로 최근 수년 동안의 추진 실적을 살펴본다.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사업은 2007년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여 2009년에는 9,200명으로까지 사업 수혜 대상자가 증가했다. 아동양육 지원 사업은 2007년 2,258명이었던 것이 2009년에는 9,400명으로 증가했다. 결혼 이민자 통·번역 사업은 2010년 10월 현재 전국 129개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에서 210명의 통·번역사가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등 12개국 언어를 지원하고 있다. 통·번역 서비스의 내용은 대체로 일상생활, 교육, 법률, 의료 등에 관한 것들이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언어발달 진단을 받은 아동은 2009년부터 2010년 6월까지 2,904명이었으며, 언어 교육을 받은 아동은 같은 기간 5,471명이었다. 이 사업에 조력하고 있는 다문화언어지도사는 2010년 현재 총 101명이다.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교실 사업은 전국의 52개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다.

3.2.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영향 분석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 지원 사업은 도시와 농어촌 모두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프라는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이다. 2010년 3월 현재 전국 230여 개의 시·군·구 기초 지방자치단체들 가운데 171개 지역이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를 갖추고 있다⁷. 통상 농어촌 지역으로 분류되는 140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02개 지역이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를 두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정책 사업이 모든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에서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곳 가운데 도시와 농어촌 지역이 몇 개소인지

⁷ 지자체별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 설치 현황은 <부록 4>를 참조.

를 구별할 수 있는 통계 자료는 공표되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정책 담당자가 보유하고 있을 사업 추진실적 등의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도시-농어촌 분리 통계를 작성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관련 통계 자료에 관한 문제점이라는 측면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과 유사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사업 관련자(다문화가족 지원 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 구성원)와 관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수행한 결과, 이 정책의 효과가 도시와 농어촌에서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몇 가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 사업의 수혜자인 방문 교육 대상자가 넓은 장소에 분산 거주하고 있어 방문 교육 지도사의 활동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 그동안의 사업 시행 결과를 토대로 2011년부터는 방문 교육 대상자 1인 기준으로 1만 원의 교통비(방문 교육 지도사 1인이 담당하는 교육대상자가 4명이므로 월 4만 원)를 지원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농어촌 현장에서 방문 교육을 실시할 때 실제로 드는 교통비(유류비)는 월 15만~20만 원 정도이다. 2011년부터 지원될 예정인 교통비 수준은 대중교통이 불편하여 대부분의 방문 교육 지도사가 개별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농어촌 여건에서는 아주 비현실적이다. 게다가 방문 교육 지도사의 월 급여가 80만 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런 교통비 지원 수준은 농어촌 지역에서의 방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농어촌 지역의 인구 밀도가 낮다는 점 또한 이 사업의 효과가 농어촌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인적 자원은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에서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언어의 통·번역 인력이다. 그러나 농어촌에서는 그렇게 다양한 언어의 통·번역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횡성군이나 안동시 같은 농어촌 지역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두 가지 언어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만이 가능하다. 횡성군에서는 베트남어와 필리핀어, 안동시에서는 중국어와 베트남어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비해 서울시 동대문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8개 외국어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농어촌의 사회자본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또한 이 사업의 효과가 농어촌에서 차별적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요인이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전문성이 높은 다문화 언어지도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군 지

역 소재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에서는 그런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접한 대도시나 타 시·군에서 인력을 얻는 경우가 많다.

이상과 같은 분석으로부터 농어촌 영향 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농어촌의 특성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농어촌의 인구 밀도가 낮아서 정책 서비스 공급 비용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이 농어촌에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가?
- 자원봉사자, 시민단체 등 사회자본과 인적 자원이 부족하여 정책의 결과가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는가?
- 농어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의 자원과 역량이 부족하여 정책의 결과가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는가?

이 사업은 농어촌 서비스 기준에 명시된 사회복지 분야 다문화가족 항목과도 직접 관련이 있다.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교통 불편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2014년에는 군 지역 전체에 다문화가족 지원 시설을 확대 설치한다는 목표까지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방문 서비스 등의 세부 사업에서 농어촌의 여건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달성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3.3. 정책 대안 모색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 지원 사업이 도시와 농어촌 지역 모두에서 차별적이지 않게 효과를 거두려면 몇 가지 대안적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방문 교육 지도사의 교통비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지원 금액도 현실화해야 한다.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군 지역 소재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가 실력 있는 통·번역 전문 인력 및 다문화 언어지도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특별 수당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둘째,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특정한 상황에 있는 농어촌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 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다문화가족이, 즉 정책 고객이 많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서의 사업 효과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인접한 지역이나 중앙정부 관련 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4. 사례 분석: 초·중등학교 교원 배정 정책(교육과학기술부)

4.1. 정책의 개요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6월에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령(2009년 2월 27일 일부 개정)을 2010년 2월 26일에 다시 개정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감을 선거로 뽑고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교육 자치체의 추진과 관련이 있다.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은 공립 초·중등학교 교원의 총 정원은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관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별로 적정 정원을 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때 ‘일정한 기준’은 대체로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뜻한다⁸. 16개 광역시 및 도를 5개의 지역군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군별 보정지수를 두었다<표 3-9>. 이 보정지수를 국가 수준에서 정한 ‘교사 1인당 학생 수’에 가감한 결과가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이며, 이것을 시·도별 초·중등학교 및 유치원 학생 또는 원아 수로 나누

⁸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아닌 ‘교사 1인당 학교 수’가 기준이다.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의 시·도 교육청 교원의 정원 배정 산정방법 및 기준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부록 7>을 참고.

면 시·도별 교사 정원이 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교사 정원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공식에 따라 산정된다.

- 국가 수준의 ‘교사 1인당 학생 수’ = 공립 초등학교 총 학생 수(전년도 4월 1일 기준) / 공립 초등학교 교사 총 정원⁹
-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 = 국가 수준의 ‘교사 1인당 학생 수’ + 지역군별 보정지수
- 시·도별 교사 정원 = 시·도별 공립 초등학교 학생 수 /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

이러한 방식은 종래에 교육청이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하여 교원 수를 산정하던 방식을 바꾼 것이다. 종래의 방식대로 할 경우 학생 수 감소 대비 학급 수 변동 폭이 불명확하여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점이 이 같은 정책 변화의 명분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런 변경은 결국 농산어촌 지역 교원 수 감소를 촉진하고 이는 다시 소규모 학교의 폐교 확산을 초래하여 농산어촌 지역 주민과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10).

입법 예고 중인 시행규칙 안에서 지역군을 설정하고 보정지수를 부여한 것은 일견 지역(시·도)별로 격차가 있는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학생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몇몇 도 지역의 보정지수는 음(-)의 값을, 높을 것으로 보이는 광역시 지역의 보정지수는 양(+)의 값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정지수를 감안하더라도 ‘학급 수’가 아닌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기준이 되는 배정 방식은 농어촌 지역의 교육 여건에 대한 보완책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이 입법 예고 중인 시행규칙에 대한 비판의 주요 내

⁹ 각급 공립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은 ‘지방행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령(2010년 2월 26일 개정)에 별표로 제시되어 있다. 2010년 기준으로 ‘공립 초등학교 및 그에 준하는 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은 교장 5,743명, 교감 5,964명, 교사 13만 9,499명 등 총 15만 1,206명으로 되어 있다.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는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별도의 정원으로 제시되어 있다. 국가 수준에서 정한 총 정원의 상세한 내용은 <부록 8>을 참고.

표 4-5. 시행규칙 입법 예고 안의 시·도별 교사 정원 배정 보정지수

구분		1지역군	2지역군	3지역군	4지역군	5지역군
초등학교	시·도	경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남, 제주	충북, 충남, 전북	강원, 전남, 경북
	보정지수	+2.7	+0.7	-1.0	-2.0	-3.0
중등학교	시·도	경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남, 제주	충북, 충남, 전북	강원, 전남, 경북
	보정지수	+2.2	+0.7	-0.3	-1.0	-3.5
유치원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충남, 경남, 제주	강원, 전북, 전남 경북
	보정지수	+8.5	+5.0	+3.5	-1.5	-4.5
특수학교	시·도	경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충남, 경남, 제주	충북, 전북	강원, 전남, 경북
	보정지수	+1.5	+0.1	-0.1	-0.2	-0.5
보건교사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보정지수	-0.22	-0.13	-0.01	+0.18	-
영양교사	시·도	경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
	보정지수	+0.5	-0.05	-0.1	-	-
사서교사	시·도	경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남, 제주	충북, 충남, 전북	강원, 전남, 경북
	보정지수	+4,000	+2,000	-2,000	-3,000	-4,000
전문상담교사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경남, 제주	충북, 충남, 전북	강원, 전남, 경북	-
	보정지수	+1,000	+500	-500	-1,000	-

용이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교원을 배정할 경우 주로 농어촌에 많은 소규모 학교의 교원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에 따라 복식수업, 사치 교사, 순회 교사, 기간제 교사 등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4.2.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영향 분석

지역별 교원 배정 기준을 바꾸려는 현재의 정책 변화는 농어촌 지역 학교¹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입법 예고 중인 교원 정원 배정 기준을 적용할 때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에는 어떤 변화가 올 수 있는지 추정해 보려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통계연보와 ‘학교 알리미 서비스(www.schoolinfo.go.kr)’가 제공하는 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살펴본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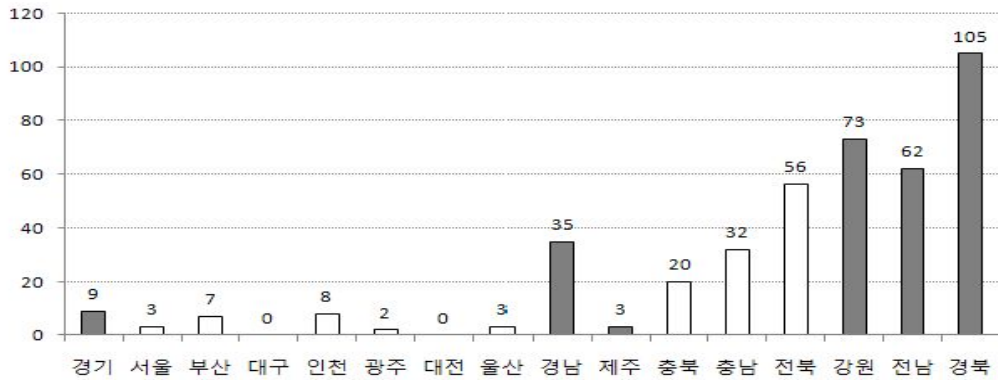
입법 예고 중인 시행규칙의 교원 정원 배정 방식을 적용한 결과 예상할 수 있는 시·도별 교원 수 분포는 <표 4-6>과 같다.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의 보정지수를 적용하면 교사 1인당 학생 수 분포의 시·도별 격차가 완화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농어촌 학교의 현 상황을 면밀히 고려한다면 그러한 정책 방향이 농어촌 학교에는 오히려 상당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적더라도 그것이 충분한 교사 수가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림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비교적 적은 3, 4, 5지역 군에 속하는 도에서 복식학급 학교 수가 현저하게 많다. 이는 분교장은 제외한 수치이다. 농어촌 비중이 높은 도 지역 초등학교의 분교장 수까지 고려하면 복식학급 학교 수 차이는 이보다 훨씬 더 커진다.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적어도, 농어촌에는 소규모 학교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복식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학교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교원을 배정할 경우 소규모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의 질이 현저하게 저하될 우려가 있음을 시사한다.

¹⁰ 이 절에서는 읍·면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농어촌 학교’로, 동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도시 학교’로 정의한다.

¹¹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의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1. 시·도별 복식학급 학교 수



자료: 교육통계연보, 2010.

표 4-6. 공립 초등학교 교사의 시·도별 분포

(단위: 명)

구분	2010년 공립 초등학교 교사 현원	2010년 공립 초등학교 학생 수	2010년 교사 1인당 학생 수	보장지수를 적용한 2011년 교사 1인당 학생 수	교사 수 증감	
1지역군	경기	34,225	846,181	24.7	24.2	799
2지역군	서울	24,253	539,941	22.3	22.2	112
	부산	9,522	194,184	20.4	22.2	-759
	대구	7,430	163,701	22.0	22.2	-43
	인천	8,284	180,849	21.8	22.2	-123
	광주	5,008	113,474	22.7	22.2	113
	대전	4,716	107,582	22.8	22.2	139
	울산	3,736	81,678	21.9	22.2	-50
3지역군	경남	10,975	226,204	20.6	20.5	81
	제주	2,049	43,501	21.2	20.5	77
4지역군	충북	5,052	103,524	20.5	19.5	268
	충남	7,164	137,542	19.2	19.5	-96
	전북	6,771	125,791	18.6	19.5	-307
5지역군	강원	5,429	98,349	18.1	18.5	-101
	전남	5,241	120,805	23.0	18.5	1,303
	경북	8,842	161,540	18.3	18.5	-91
전국	148,697	3,244,936	21.8	21.5	1,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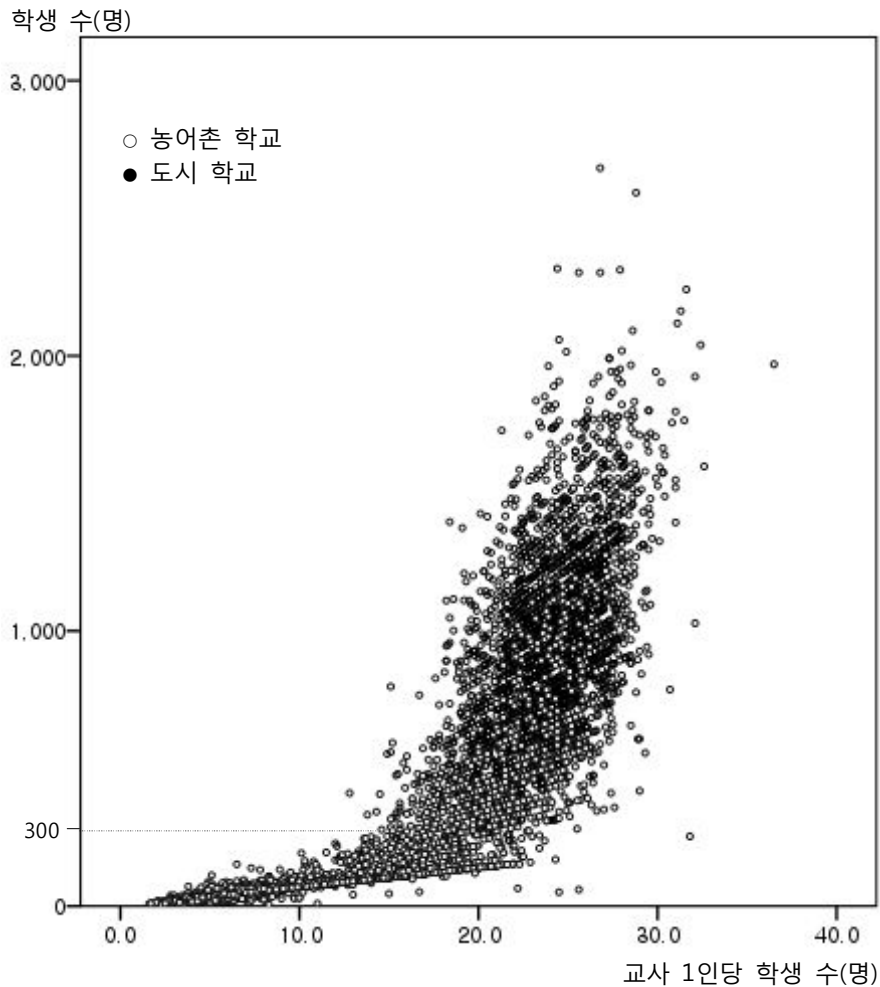
자료: 교육통계연보, 2010.

주 1: 2011년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추정할 때 시 초등학교 학생 수는 올해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으며, 교사 수는 현원이 아닌 시행규칙 입법 예고안의 정원 기준을 적용함.

주 2: 교장과 교감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집계할 때 제외함.

<그림 4-2>를 보면 대략 학생 수 300명 미만인 학교들의 집단과 이상인 학교들의 집단 사이에는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생 수’ 사이의 상관관계수가 크게 다르리라 는 점을 알 수 있다. 어떤 학교이든 학생 수에 정비례하여 교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교사 수를 확보해야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임계치가 있음을 시사한다. 학교의 규모(학생 수)를 무시하고 교사 수를 배정한다면 소규모 학교에서는 상치교사, 기간제교사, 순회교사, 복식수업 등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림 4-2. 농어촌 및 도시 초등학교 학생 수와 교사 1인당 학생 수 분포



자료: 학교 알리미 서비스

표 4-7. 2010년 학생 수 300명 미만인 학교의 지역 유형별 분포

(단위: 개소)

구 분	재학생 수 300명		계
	미만	이상	
도시(동 지역)	402 (13.0%)	2,679 (87.0%)	3,081 (100.0%)
농촌(읍·면 지역)	1,964 (81.3%)	451 (18.7%)	2,415 (100.0%)
계	2,366 (43.0%)	3,130 (57.0%)	5,496 (100.0%)

자료: 학교 알리미 서비스(www.schoolinfo.go.kr)

주: 분교장은 제외한 수치임.

문제는 학생 수와 교사 수의 상관계수가 달라져야 하는 소규모 학교가 대체로 농어촌 지역에 많이 분포한다는 점에 있다. <그림 4-2>와 <표 4-7>에서 보는 것처럼 학생 수 300명 이상인 학교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고루 분포하지만, 300명 미만인 학교는 농어촌에 소재하는 경우가 많다. 농어촌 지역의 공립 초등학교 가운데 81.3%가 학생 수 300명 미만인 학교이다. 도시 지역의 공립 초등학교 가운데 학생 수 300명 미만인 학교의 비율은 13.0%에 불과하다.

입법 예고 중인 시행규칙은 시·도까지 교사 정원 배정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개별 학교 단위에서의 교사 정원 배정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시·도 교육청이 개별 학교의 교사 정원 배정에 관한 규정을 확실하게 마련한 것도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 수 규모에 관계없이 시·도별로 배정된 교사 1인당 학생 수 기준에 따라 학교마다 교사 정원을 배정한다면, 농어촌 지역의 초등학교에서는 교사 수를 크게 줄여야 할 것이다<표 4-8>. 동 지역의 공립 초등학교 가운데 교사 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될 초등학교의 비율은 37.4%, 농어촌에 해당하는 읍 지역과 면 지역에서 교사 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될 초등학교의 비율은 각각 51.6%와 99.1%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농어촌에 특히 소규모 학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교사 정원을 배정할 경우, 농어촌 지역의 학교에는 매우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54 농어촌 영향 평가 지침 마련을 위한 정책 사례 분석

표 4-8. '교사 1인당 학생 수' 기준 적용 시 교사 수를 줄여야 하는 초등학교 분포
(단위: 개소 %)

구분			학교 수 (A)	교사 정원을 줄여야 하는 학교 수 (B)	비율 (B/A)×100
1지역군	경기	동	696	189	27.2%
		읍	124	60	48.4%
		면	225	206	91.6%
2지역군	서울	동	520	283	54.4%
		부산	284	200	70.4%
	대구	동	198	91	46.0%
		인천	176	74	42.0%
	광주	동	3	1	33.3%
		읍	25	25	100.0%
	대전	동	129	49	38.0%
		면	124	41	33.1%
울산	동	77	25	32.5%	
	읍	14	4	28.6%	
	면	16	15	93.8%	
3지역군	경남	동	184	34	18.5%
		읍	50	24	48.0%
		면	234	208	88.9%
	제주	동	42	14	33.3%
읍		46	38	82.6%	
면	14	13	92.9%		
4지역군	충북	동	79	12	15.2%
		읍	38	18	47.4%
		면	127	118	92.9%
	충남	동	73	11	15.1%
		읍	76	38	50.0%
		면	260	230	88.5%
전북	동	150	45	30.0%	
	읍	31	16	51.6%	
면	226	224	99.1%		
5지역군	강원	동	103	26	25.2%
		읍	70	49	70.0%
		면	173	167	96.5%
	전남	동	99	21	21.2%
		읍	78	40	51.3%
면	252	243	96.4%		

	경북	동	147	37	25.2%
		읍	96	54	56.3%
		면	237	218	92.0%
전국	동	3,081	1,152	37.4%	
		626	342	54.6%	
		1,789	1,667	93.2%	

자료: 학교 알리미 서비스

주: 분교장은 제외함.

표 4-9.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채용 학교 현황(초·중·고교 전체)

학교 규모	지역	N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있음	비율	있음	비율	있음	비율
300명 이하	동	632	49	7.8%	302	47.8%	192	30.4%
	읍	557	24	4.3%	144	25.9%	148	26.6%
	면	2,630	97	3.7%	747	28.4%	566	21.5%
	소계	3,819	170	4.5%	1,193	31.2%	906	23.7%
301~ 600명	동	923	112	12.1%	643	69.7%	311	33.7%
	읍	350	55	15.7%	206	58.9%	129	36.9%
	면	198	21	10.6%	106	53.5%	76	38.4%
	소계	1,471	188	12.8%	955	64.9%	516	35.1%
601~ 900명	동	1,560	270	17.4%	1,306	83.7%	583	37.4%
	읍	176	41	23.3%	150	85.2%	85	48.3%
	면	59	8	13.6%	47	79.7%	20	33.9%
	소계	1,795	319	17.8%	1,503	83.7%	688	38.3%
901~ 1,200명	동	1,584	286	18.1%	1,343	84.8%	625	39.5%
	읍	105	23	21.9%	91	86.7%	53	50.5%
	면	29	15	51.7%	17	58.6%	11	37.9%
	소계	1,718	324	18.9%	1,451	84.5%	689	40.1%
1,200명 초과	동	1,270	291	22.9%	1,119	88.1%	493	38.8%
	읍	37	9	24.3%	35	94.6%	25	67.6%
	면	11	4	36.4%	4	36.4%	3	27.3%
	소계	1,318	304	23.1%	1,158	87.9%	521	39.5%
전체	동	5,969	1,008	16.9%	4,713	79.0%	2,204	36.9%
	읍	1,225	152	12.4%	626	51.1%	440	35.9%
	면	2,927	145	5.0%	921	31.5%	676	23.1%
	합계	10,121	1,305	12.9%	6,260	61.9%	3,320	32.8%

자료: 학교 알리미 서비스

주: 분교장은 제외함.

교과 과목 교사 외에도 교육복지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등의 정원 배정 규칙도 앞에서 살펴본 공립 초등학교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어촌 지역 학교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2010년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틀어 동 지역에 소재한 학교 가운데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를 확보하고 있는 학교의 비율은 각각 16.9%, 79.0%, 36.9%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형적인 농어촌인 면 지역의 학교에서 그 비율은 각각 5.0%, 31.5%, 23.1%에 불과하다. 도시와 농어촌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한다면 현재의 격차를 더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지금도 도시에 비해 농어촌 학교에는 이들 교육복지 분야 전문 교사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표4-9>¹².

지금까지 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입법 예고 중인 교원 정원 배정 관련 시행규칙을 보완하지 않고 개별 학교 단위에까지 그대로 적용하면 농어촌 지역의 학교에는 필요한 교사 확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차별적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 차별적 효과 발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 밀도가 낮다는 점이다. 이로부터 농어촌 영향 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농어촌의 특성 하나를 확인할 수 있다.

- 농어촌의 인구 밀도가 낮아서 정책 서비스 공급 비용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이 농어촌에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가?

농어촌 학교의 교원 정원 배정과 관련하여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교사 1인당 학생 수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학교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반론이 가능하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꾸준히 추진한 것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 방향이기도 하다. 그런데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면 읍·면의 경계를 벗어난 먼 거리를 이동하여 등하교해야 하는 학생이 늘어난다¹³. 따라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라는 대

¹² 특히, 보건교사 정원 배정 공식의 경우 농어촌 학교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4지역군(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 오히려 더 불리한 보정지수를 설정하고 있다.

¹³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그 자체로 매우 많은 쟁점을 안고 있다.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가 처

안으로 교사 확보 문제에 대응하려는 정책 방향을 정하려 한다면, 그것에 대한 농어촌 영향 평가를 할 때 다시 고려해야 할 농어촌의 특성이 또 하나 있다.

- 농어촌의 도로망, 대중교통, 자동차 보유율 등의 측면에서 주민의 서비스 접근성이 불리하여 정책의 결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가?

학교 교사 정원 배정과 관련된 정책은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교육 분야 항목 ‘지역 여건에 맞는 적정 규모 학교를 육성하고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는 내용과 관련이 있다. ‘삶의 질 향상 계획’에서는 이것과 관련하여 3개의 실천 과제를 천명하고 있다. 첫째, 지역의 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유·초·중·고등학교를 통합·재배치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전반적 교육 여건을 개선한다. 둘째, 유·초·중등학교에 대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정책을 실시하여 돌아오는 농산어촌 학교를 육성한다. 셋째, 노후차량 교체,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수당 현실화 등 원거리 통학이 용이하도록 무료 통학버스 지원을 확대한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상당부분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전제로 하는 대안이다. 예컨대, ‘적정 규모 학교’라는 표현은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모호한 표현이다. 앞의 분석에서 살펴본 것처럼 학교 교사 정원 배정과 관련된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는가에 따라 ‘적정 규모 학교’가 정의될 가능성이 크다. 그것에 따라서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달성 목표도 재정의해야 할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4.3. 정책 대안 모색

학교 교사 정원 배정 문제와 관련하여 입법 예고 중인 시행규칙과 관련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소 거칠지만 대안적 방향을 몇 가지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교육과학기술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규칙은 교사의 시·도별 배분까지만 명확

한 현실에 관한 솔한 문제에 관한 논의는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생략한다. 2010년 6월 국회에서 있었던 토론회에서는 농산어촌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쟁점들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그 상세한 내용은 당시 토론회 자료집 “고사 직전 농산어촌 교육,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를 참고.

하게 언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는 내용이다. 개별 학교에의 교사 정원 배정에 관해서는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보완적인 규정을 교육과학기술부가 시행규칙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학급 수 등을 고려한 별도의 교원 배정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또는 시·도라는 광역적인 범위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보정지수를 더욱 세분화하고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유지해야 할 교사 정원을 충분하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보정지수를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교육과학기술부가 개별 학교에의 교사 정원 배정에 대해서는 직접 개입하지 않고 시·도 교육감의 재량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시·도 교육청들이 농어촌 학교를 고려한 교원 정원 배정 기준을 별도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셋째, 농산어촌 학교의 교원을 실제로 확보하기 위한 상위의 법률(예: 농산어촌 학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농어촌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교원 정원 배정 기준을 마련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교사를 충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지금도 교육과학기술부는 농어촌 학교의 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우수 교원을 유인하려 ‘교대 추천 입학 및 의무복무제도’, ‘도서벽지 근무 예정자에 대한 채용시험 가산점 부여’, ‘도서벽지나 농산어촌 근무 교사에 대한 승진 가산점 부여’, ‘농산어촌 지역 교사 수당 제도’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전우홍, 2010). 한편, 그런 유인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그동안의 농어촌 교원 정책이 질적 차원에서 농산어촌 학교에 적합한 우수 교원 확충보다는 양적 차원에서 농산어촌 학교 유지를 위한 교원 충원에 급급했다는 주장이다(임연기, 2010). 예를 들어, 농산어촌 학교 근무 경력 승진 가산점이 농산어촌 학교 기피 현상을 완화하는 데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는 가운데 도시 대규모 학교가 승진에 유리한 승진 제도가 도입되어 교사들의 농어촌 학교 기피 현상이 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결국 농어촌 학교는 순환근무제에 의해 ‘지나가는’ 학교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 한지 교장, 교감제 도입’, ‘농어촌 교사 특별 양성 및 채용 제도’, ‘가칭 교육복지사제 도입’ 등 여러 새로운 제도 도입을 포함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¹⁴.

¹⁴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상세한 논의는 2010년 6월 국회 토론회 자료집 “교사 직전 농산어촌 교육,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를 참고.

5. 시사점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서 도입하기로 천명한 농어촌 영향 평가 제도를 준비하면서 벤치마킹한 영국의 Rural Proofing과 우리나라의 성별 영향 평가 제도에 대한 검토 결과, 그리고 3개의 정책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로부터 농어촌 영향 평가의 실무 도구 제작과 관련된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Rural Proofing의 체크리스트나 성별 영향 평가의 점검 포인트(또는 평가 지표)와 비교할 때 농어촌 영향 평가에서 활용할 체크리스트가 내용적으로 아주 상세할 필요는 없다. 사례로 분석한 정책(사업)이 세 개에 불과했다는 한계가 있으나, 사례 분석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정책이 농어촌 지역에 차별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의 원인은 대체로 몇 가지 공통적인 농어촌 지역의 특성으로 수렴한다. 접근성, 비용, 농어촌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농어촌 지역의 경제활동 구조, 농어촌 지역 공공기관의 자원과 역량 등의 요인들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특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농어촌 영향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농어촌 지역의 특성’ 항목 수는 상세하게 분류할 필요가 없으나, 일정한 행정 지침에 따라 평가 작업을 수행해야 할 정책 실무 담당자에게는 그러한 절차를 안내할 정형화되고 상세한 실무 도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각급 공공기관의 정책 담당자가 ‘농어촌 인 지적 관점’을 숙지하게 하며, 근거를 가지고 농어촌 영향 평가 실무를 진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따라서 농어촌 영향 평가의 실무 작업을 안내할 ‘농어촌 영향 평가 매뉴얼’을 ‘농어촌 영향 평가 지침’보다 상세한 수준에서 제공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¹⁵.

셋째, 농어촌 영향 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농어촌 지역의 특성 항목은 그 수가 많지 않겠지만, 농어촌 영향 평가 과정 전체를 진행하는 절차상 검토해야 할 항목들은 상당히 많을 수 있다. 평가 대상 정책의 개요, 평가 과정에서 실시해야 할 분석 방법, 평가 결과 도출해야 할 정책 대안 등 많은 항목들이 있다. 앞서의 사례 분석 결과와 벤치마킹한 유사 제도의 체크리스트 및 매뉴얼 등을 참조하여 선정한 농어촌 영향 평가 시 검토 항목을 4개 분야 23개 항목으로 정리하였다<표 4-10>.

¹⁵ ‘농어촌 영향 평가 매뉴얼(안)’을 <부록 3>에 제시하였다.

표 4-10. 농어촌 영향 평가에서 정책 담당자가 검토해야 할 주요 항목

구분	항목	비고
정책의 개요	1-1. 정책(또는 정책사업)의 시행 기관	* 중앙정부 부처, 각급 지자체, 지방행정기관 등의 역할 분담이 있는 경우 상세히 서술
	1-2. 정책(또는 정책사업)의 목적	* 관계 법규, 사업시행 지침 등에 명시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인용
	1-3. 정책(또는 정책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1-4. 정책(또는 정책사업)의 주요 내용	* 수혜 대상,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주요 활동 내용
	1-5. 사업 추진 현황	* 실적이나 성과에 관한 정량적 자료 * 특히, 도시-농촌을 구분한 통계 자료가 있다면 반드시 제시
농어촌 영향 분석 결과	2-1. 정책(또는 사업)이 도시 지역에 비해서 농어촌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가?	* '예', '아니오'로 답변
	2-2.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그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요약 서술
농어촌 영향 분석 방법과 고려한 농어촌 특성	3-1. 농어촌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수행했는가?	* '통계 자료 수집·분석', '전문가 자문', '관련자 면접 조사', '농어촌 주민, 단체 등과의 토론 또는 자문회의' 등의 예시 제공
	3-2. 농어촌의 도로망, 대중교통, 자동차 보유율 등 측면에서 주민의 서비스 접근성이 불리하여 정책의 결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가?	* 고려한 항목의 검토 여부와 더불어, 검토 결과에 대한 부연 설명 요구
	3-3. 농어촌의 인구밀도가 낮아서 정책 서비스 공급의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가?	* 고려한 항목의 검토 여부와 더불어, 검토 결과에 대한 부연 설명 요구
	3-4. 농어촌에 존재하는 사업체 규모가 영세한 탓에 정책의 결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가?	* 고려한 항목의 검토 여부와 더불어, 검토 결과에 대한 부연 설명 요구
	3-5. 여성 비율, 시간제 및 계절제 근무 등 농어촌 경제활동 인력의 특성으로 인해 정책의 결과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가?	* 고려한 항목의 검토 여부와 더불어, 검토 결과에 대한 부연 설명 요구
	3-6. 농어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농어촌 지역경제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정책의 결과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가?	* 고려한 항목의 검토 여부와 더불어, 검토 결과에 대한 부연 설명 요구

	3-7. 농어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의 자원과 역량이 부족하여 정책의 결과가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는가?	* 고려한 항목의 검토 여부와 더불어, 검토 결과에 대한 부연 설명 요구
	3-8. 자원봉사자, 시민단체 등 사회자본 (social capital)과 인적자원이 부족하여 정책의 결과가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는가?	* 고려한 항목의 검토 여부와 더불어, 검토 결과에 대한 부연 설명 요구
농어촌 영향 분석 방법과 고려한 농어촌 특성	3-9. 농어업 활동이 갖는 다원적 기능, 농어촌의 전통 문화, 경관 등 자원의 특성에 의해 정책의 결과가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는가?	* 고려한 항목의 검토 여부와 더불어, 검토 결과에 대한 부연 설명 요구
	3-10. 분석 과정에서 활용한 통계 자료 소개	* 통계 자료의 명칭, 생산 방식, 생산 주체, 발간 주기 등에 대한 개괄적 소개
	3-11. 분석과정에서 통계 자료가 없거나 미흡했다면, 향후 어떻게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통계의 내용, 생산 주체, 주기, 방법 그리고 도시-농촌 분리 통계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
	3-12. 전문가 또는 관계자들과 진행한 면담 및 토론 내용	* 주요 내용을 요약 서술
	3-13. 정책(또는 사업)이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여러 항목 일부분과 관련이 있는가?	* 관련이 있는 서비스 기준 항목 기술
	3-14. 정책(또는 사업)이 현행 또는 현재 계획한 대로 시행한다면 농어촌 서비스 기준 달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그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농어촌 서비스 기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대안 모색	4-1. 예상되는 '농어촌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최소화하려면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	* '법률 및 시행령 제 개정', 사업시행 절차 개선', '수혜 대상 범위 및 예산 배분 등에 관한 사업 지침 개정', '특정 농어촌 지역을 사업 대상지로 추가 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 '관련된 특별회계나 기금 등 높은 수준에서의 예산 확보',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초한 해결책 마련', '농어촌 주민이나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강화' 등을 선택지(option)로 제시
	4-2. 정책 대안 구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	

1. 제도 운영 체계

농어촌 영향 평가 제도 운영 체계의 기본 구조는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제시된 내용에서는 이 제도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문 연구기관 등의 역할 분담이 상세하게 구상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제도 도입 초기부터 농어촌 영향 관리 활동을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의무로 부여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기에는 정치적·사회적 여건이 미성숙했다는 판단이 작용하여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구조로 설계된 것이었다.

그러나 농어촌 영향 평가를 수행할 것인지 여부를 전적으로 공공기관의 자율에 맡기는 것은 실질적인 제도 운영 성과를 낳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삶의 질 향상 위원회’가 어느 정도 리더십을 갖고 이 제도를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하다.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강제할 수는 없어도 농어촌 영향 관리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촉구할 수 있는 실무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영국에서는 Rural Proofing 제도 도입 초기부터 수상의 강력한 의지로 공공기관의 예산 분배 과정에 Rural Proofing 시행 여부를 반영하게 함으로써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후 Rural Proofing이 확산되면서 2007년에는 영국의 공공기관들이 중요한 정책의사결정을 할 때 수행해야 할 법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의 내용 중에 Rural Proofing을 실시하도록 행정 규칙에 반영하였다¹⁶.

여성가족부의 성별 영향 평가 제도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정부가 성별 영향 평가

를 수행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고, 여성가족부 주도 하에 지속적인 확산 전략을 펼쳐 그 기반을 마련하였다¹⁷. 최근에는 그런 성과에 기초하여 더욱 구속력 있는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 절차라 할 수 있는 ‘성인지 예산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사례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가급적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방식으로 농어촌 영향 평가 제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책 담당자들의 자발성에 기초하되 최소한의 농어촌 영향 평가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 시점에서는 삶의 질 향상 위원회가 농어촌 영향 평가를 여타의 공공기관들에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각 기관들이 농어촌 영향 평가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게끔 유인할 수 있는 수단을 가급적 많이 확보하고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수단들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필수적으로 농어촌 영향 평가를 수행해야 할 대상 정책 사업을 선정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에 제시하고 그 수행 실적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 따라서 농어촌 영향 관리 과제를 ‘심층 과제’와 ‘자체 과제’로 구분하여 심층 과제의 경우 삶의 질 향상 위원회가 직접 주관하고, 자체 과제는 각급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이원적 운영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어촌 영향 평가 시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의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구도 속에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중앙행정

¹⁶ 영국의 정부 부처(department)와 행정 기관(agency)은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에서 법규나 정책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할 때에는 서면 형식에 기초하여 공식적인 자문(consultation)이나 협의를 수행하게 되어 있다. ‘자문에 관한 정부 규범(Code of Practice on Consultation)’이 그 절차, 범위,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Rural Proofing은 그 3조 3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3조 3항의 내용을 일부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영향 평가는 대부분의 정책 의사결정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영향 평가 및 형평성 평가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은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 부처들이 더욱 확고한 근거를 가지고 정책 의사결정을 하도록 이끄는 것이어야 한다. 법규에 의해 요구되는 인종 간 형평성 평가를 포함하여, (Rural Proofing을 포함한) 특정 영향 평가에 대한 지침을 참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¹⁷ 여성발전 기본법 제10조 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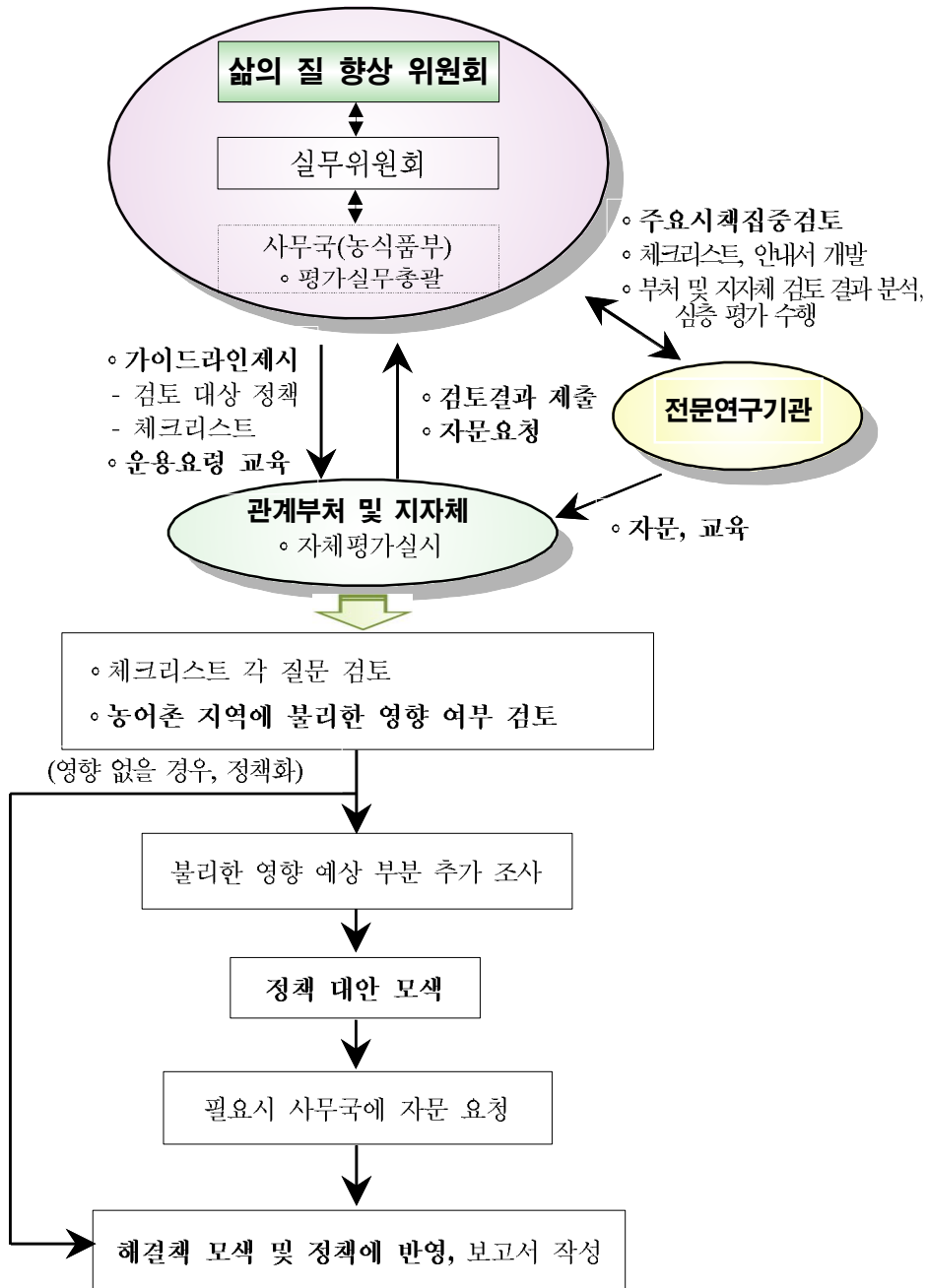
기관이나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그 수단을 만들기가 어렵다. 행정적·재정적으로 삶의 질 향상 위원회가 직접 인센티브(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이 어렵다면, 각 공공기관의 농어촌 영향 평가실적을 취합하여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중에게 공표하는 등 우회적인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셋째, 공공기관의 정책 담당자가 농어촌 영향 평가를 자율적으로 수행하기를 꺼려하는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어렵고 부담이 된다는 점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농어촌 영향 평가 과정에 조력할 전문적인 지원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공식적인 지침 외에도 매뉴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농어촌 영향 평가를 직접 수행할 각 기관의 정책 담당자 입장에서 볼 때 이 제도는 생소한 정책 절차일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농어촌 영향 평가 지침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정책 담당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교육, 컨설팅, 분석 등의 기능을 충분히 갖춘 지원 기관이 필요하다.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별도의 지원 기관을 설치(또는 지정)하는 방안, 용역(또는 보조금 사업) 형식으로 전문가를 확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한 전문적인 지원은 중장기적으로는 상설적인 형태의 기구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형태로 지원 조직을 설치하고 운영할 것인지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들을 종합하여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 제시한 농어촌 영향 평가 제도 운영 체계를 보완하여 도식한 것이 다음 <그림 5-1>이다.

그림 5-1. 농어촌 영향 평가 제도 운영 체계



2. 제도 도입 및 확장 전략

Rural Proofing이나 성별 영향 평가 제도의 사례로 비추어 볼 때, 농어촌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하면 이후 잘 정착되기까지 상당히 많은 기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단계적인 제도 도입 및 확장 전략을 구상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어촌 영향 평가 제도의 착근 과정을 도입, 확장, 질적 변화의 3단계로 나누어, 삶의 질 향상 위원회가 향후 추구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 본다.

도입 단계의 전략은 2011년 한 해 동안 실천해야 한다. 이 시기는 농어촌 영향 평가 제도 도입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우선 농어촌 영향 평가 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을 개정하여 세 가지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

첫째,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제시된 ‘농어촌 영향 관리 가이드라인’이라는 제도의 명칭을 수정해야 한다. 단지 행정적 지침을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고 마는 듯한 인상을 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제도의 명칭을 ‘농어촌 영향 평가’로 확정지을 필요가 있다. 둘째, 법규 개정을 통해 ‘삶의 질 향상 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이 농어촌 영향 평가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유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성별 영향 평가 제도에서는 2010년 현재 중앙행정기관과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 요구 시 사업 설명 자료를 작성하는 세부 사업 단위의 정책 사업을 최소 3개 이상 선정하되 총 5개 이상의 정책 사업에 대해 영향 평가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3개 이상, 시·도 교육청은 1개 이상을 수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을 참조하여 농어촌 영향 평가의 대상 정책 수를 ‘삶의 질 향상 특별법’ 또는 그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앞서서도 강조한 농어촌 영향 평가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조직(또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처럼 법규 개정을 꾀하는 동시에 농어촌 영향 평가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도 제도 도입 초기에 중요한 과제이다.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 참여하는 정부 부처와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기획하고 있거나 시행 초기에 있는 정책 사업을 자체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각 기관들이 그 정책에 대해 평가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무 담당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그것과는 별개로 심층 평가 대상 정책을 선정하여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주관 하에 연구용역(또는 보조금 사업) 형식으로 시범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별도의 인력으로 시범사업 진행 상황과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향후 제도 안착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해야 한다. 농어촌 영향 평가 지침이나 매뉴얼을 보완하는 일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시범사업 추진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및 공무원들이 농어촌 영향 평가의 관점과 절차를 공유하도록 촉진하는 공무원 포럼 및 전문가 포럼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확장 단계의 전략은 2012년~2013년에 추진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된다. 상설적인 형태의 농어촌 영향 평가 지원 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함으로써 실무적인 지원 여건을 탄탄하게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농어촌 영향 평가의 실적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대상 정책 수, 참여 공공기관 수의 확대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야 한다. 대상 정책 수가 증가함에 따라 농어촌 영향 평가 작업에 대한 지원 소요도 증가할 것이다. 전문 지원 기관에의 자원 투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질적 변화 단계는 2014년부터로 설정한다. 농어촌 영향 평가 제도는 구상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농어촌 인지적 관점의 정책 조정 절차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농어촌 영향 평가 제도가 어느 정도 착근되면, 그것에서 더 나아가 더욱 강력한 형태의 정책 조정 제도인 ‘농어촌 인지 예산 제도’ 도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 인지 예산 제도는 적절하게 추진할 수만 있다면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실질적 성과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마침 2014년 말은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 계획’이 발표될 시점이다. 2014년 한 해 동안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농어촌 인지 예산 제도 도입 방안도 함께 구상하여 기본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1. 요약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농어촌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확인하고 그것들을 충족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농어촌 영향 평가 제도 도입 이후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 수단을 개발하는 것과 제도 도입 및 운영과 관련된 기초적인 구상을 제안하는 것이 연구 목표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농어촌 영향 평가 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영국의 Rural Proofing 제도와 우리나라 여성가족부의 성별 영향 평가 제도의 도입과 이후 확산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두 제도 모두 강력한 운영체계를 점진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기에 여러 해에 걸쳐 많은 성과를 축적할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한 ‘강력한 운영체계’의 특징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법률적 근거와 영향 평가 수행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과 장치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공공기관들이 영향 평가를 수행하도록 독려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Rural Proofing은 제도 도입 초기에는 성문법 체계에서 법률적 근거를 갖춘 것은 아니었으나, 제도 도입의 배경이 되었던 1990년대 영국 농촌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영국 정부의 공약이 표현된 ‘농촌백서’가 발표되고 그 안에 Rural Proofing 제도의 윤곽이 제시됨으로써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2001년 제도 운영 첫 해부터 공공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유력한 행정적 수단인 예산 심의 과정에서부터 Rural Proofing 활동을 공공기관들이 수행한 실적을 반영함으로써 추진력을 얻을 수 있었다. 이후 Rural Proofing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실적이 축적된 시기인 2007

년에는 영국의 정부 부처들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법규영향평가의 진행 절차 가운데 Rural Proofing을 반드시 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성별 영향 평가 제도의 경우, Rural Proofing과는 다르게 처음부터 의무적 수행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여성발전 기본법에 확보하여 출발하였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의 영향 평가 실적이 정부업무평가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둘째는 영향 평가 수행의 실무 과정을 지원할 조력 기구를 확보했다는 점이다. Rural Proofing은 제도 도입 초기에는 방대한 농어촌 분야 전문 인력을 갖춘 농촌청이 실무 과정을 지원하였다. 성별 영향 평가의 경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실무 과정을 지원할 별도의 전담 기구인 성별 영향 평가센터를 설치하였다. 이 같은 전문적 지원 기구를 확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농어촌 영향 평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중요한 관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제3장에서는 농어촌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하면 실제 수행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정책 실무 담당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하였다. Rural Proofing에서 중요한 실무 도구였던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고 성별 영향 평가 제도에서 중요하게 활용되는 평가 지침도 분석하여, 양자를 비교하였다. Rural Proofing 체크리스트는 평가 절차를 안내하는 측면에서는 그리 상세하지 않았지만, 영향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상세하고 친절하게 제시하고 평가 결과 개선해야 할 정책 대안을 다양하게 추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그리고 각급 공공기관이 제시된 체크리스트를 스스로의 여건에 맞추어 자유롭고 융통성 있게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었다. 성별 영향 평가 지침은 그에 비하면 상당히 견고한 성격을 띠고 있다. 행정적 지침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별 영향 평가 지표의 점검 포인트들을 제시하면서 정책 실무자가 검토해야 할 자료나 검토 방법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책 실무자가 직접 성별 영향 평가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하는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었다.

그 같은 두 사례의 비교 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어촌 영향 평가에 활용할 실무 도구 개발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 첫째는 두 사례의 장점을 모두 취합하는 것이다. 고려해야 할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몇 가지 제시하는 것과 농어촌 영향 평가 절차에 따라 검토해야 할 자료와 검토 방법을 친절하게 안내하는 것이다. 아울러 성별 영향 평가 제도의 전례를 따라, 보다 상세한 매뉴얼을 별도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런 관점에서 개발한 ‘농어촌 영향 평가 지침’과 ‘농어촌 영향 평가 매뉴얼’을 각각 보고서의 <부록 3>과 <부록 4>에 수록하였다.

제4장에서는 농어촌 영향 평가 지침과 매뉴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사례 분석을 병행하였다. 최초의 안이 얼마나 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 지원 사업, 시·도 교육청의 공립학교 교원 배정 정책 등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농어촌 영향 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7개 항목으로 정리하여 지침과 매뉴얼에 반영하였다. 그것을 포함하여 농어촌 영향 평가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2개 분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제5장에서는 농어촌 영향 평가 제도에 관한 기초적인 구상을 제안하였다. 운영 체계와 관련하여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서 천명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관련 주체들 간의 역할 분담 구조와 ‘삶의 질 향상 위원회’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기능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농어촌 영향 평가 제도 도입 및 확장 전략을 3단계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도입 단계에서는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과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확장 단계에서는 농어촌 영향 평가를 지원할 전문 지원 기관을 확보할 것과 농어촌 영향 평가 실적 확대를 위한 목표를 설정할 것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끝으로 질적 변화 단계에서는 농어촌 영향 평가 제도보다 진일보하고 효력이 더 큰 농어촌 인지적 관점의 정책 조정 제도인 ‘농어촌 인지 예산 제도’의 도입을 준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2. 결론 및 제언

농어촌 영향 평가 제도는 ‘삶의 질 향상 계획’에 따른 여러 정부 부처의 정책을 조율하는 여러 절차 가운데 하나로 새로운 실험이라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국내외 여러 제도를 고찰하여 얻은 시사점, 여러 전문가들과의 논의 등으로부터 앞으로 이 제도의 안착에 필요한 조건들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여러 공공기관의 정책 담당자들이 자율적으로 농어촌 영향 평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제도를 도입하려 하지만, ‘삶의 질 향상 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농어촌 영향 평가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운영 체계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가급적 법규에 근거한 공식적 정책 과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련된 조직들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농어촌 영향 평가를 수행하는 정책 담당자들을 실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단, 지원 인력 및 조직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평가 지침이나 매뉴얼은 간결하게 만들 수 있으나 실제로 농어촌 영향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는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정책이 농어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는 작업이 탄탄한 경험적 근거에 바탕을 두려면 관련된 통계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 다양한 분야의 계량화된 통계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농어촌 영향 평가 제도의 운영 성과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다.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어떤 분야 어떤 항목의 통계 기반을 어떤 방법으로 마련할 것인가에 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농어촌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운용하는 과정이 순탄할 것인지를 예상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실무적 도구, 제도 운영 체계, 제도 발전 전략 등의 내용은 농어촌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진행 경과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시행착오의 경험이야말로 탄탄한 제도 안착의 필수 과정이기 때문이다.

부 록 1

농어촌 영향 평가 체크리스트 작성을 위한
검토 대상 정책 사례 1차 선별 후 목록

부처	대상 정책, 제도, 규정, 계획 등	농어촌 지역 특성과의 관련성			비고
		접근성	지역 경제	지역 사회	
보건 복지부	공공보건의료계획	○	○	○	
	노인복지 민간단체 보조사업 지원 사업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		○	
	의료서비스 이용 및 공급 관련 의료권 설정	○	○		농어촌 특정적
	지역보건의료계획	○	○	○	농어촌 특정적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	○		○	
	노인 영양 지원 사업	○		○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	○	○	○	
	보건소 공중보건의 확충		○	○	농어촌 특정적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	○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		
	지역자활센터 운영		○	○	
국토 해양부	국가지원 지방도로 등 신규도로 개설		○		농어촌 특정적
	주택종합계획 중 주택수요 판단 문제		○		
	저소득 서민 주거환경 개선			○	
고용노동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	○	○	
	사회적기업 육성		○	○	

교육 과학 기술부 및 지방 교육청	시·군·구 평생학습관 운영 지원 사업	○		○	
	학교도서관 지원		○		
	영양교사 및 보건교사 수급			○	
	농어촌 우수고교 육성사업			○	농어촌 특정적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	○	○	○	
	방과 후 학교 운영		○	○	
	교원 정원 배정 계획			○	
	폐교 활용 계획		○	○	농어촌 특정적
	적정규모 학교 육성 선도군(郡) 지원 사업	○	○	○	농어촌 특정적
문화 체육 관광부	문화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		○	
	문화체육 바우처 지원	○	○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역배분 확대		○		
	지역수요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 개발	○		○	농어촌 특정적
	농산어촌까지 디지털도서관 온라인서비스	○		○	농어촌 특정적
	찾아가는 박물관, 영화관, 도서관 확대	○		○	
	주민이 참여하는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	○	
	공공도서관 확충	○	○		
	문해교육 및 다문화가정 한국어 교육	○		○	
독서교육 등 시민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		
지식 경제부	중소기업 자금 지원	○	○		
	소상공인 자금 지원	○	○		
	자영업 컨설팅, 교육, 상권정보 시스템 지원	○	○		

주1: '농어촌 특정적'이라는 표현은 해당 정책이 이미 농어촌의 여건과 특성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고 있음을 뜻함.

주2: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의 정책은 각기 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되어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음.

부록 2

농어촌 영향 평가 체크리스트 작성을 위한 검토 대상 정책 사례 2차 선별 결과와 근거

(1)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 - 여성가족부

□ 정책의 주요 내용

- 초등학생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 언어 진단을 통해 언어발달 교육이 필요한 경우, 그것을 돕는 정책 사업이다.
-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대상 아동 및 보호자(부모, 보육시설장) 대상 초기 면담
 - 아동의 언어발달 정도 진단
 - 언어발달 진단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주 1~2회, 회당 40분 수업을 원칙으로 교육 실시
 - 다문화 언어지도사 1인당 상시 10개 반 이상 운영이 원칙
 - 언어지도사 파견 상황에 따라 가급적 8개 반 이상 운영을 권장
 - 언어지도사의 업무량, 지역 여건 등으로 보육시설 파견이 곤란한 경우, 신청자에게 타 관계 기관을 연계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2010년 다문화 언어지도사 총 101명 운용(계획)
 - 다문화 언어지도사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내방자 및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서비스 내용을 충분히 홍보하여 서비스를 신청하게 하고, 선정요건 충족 시 대상자 선발

□ 농어촌 영향 검토 대상 사례로 선정한 이유

- 농어촌 시·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대부분 시·군청 소재지에 1개소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1명 정도의 언어지도사가 읍·면에 산재한 다문화 가정에까지 사업을 충분히 홍보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 언어발달 교육 과정의 운영 효율 상 가급적 8개 반 이상을 편성하여 운영하게 하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의 다문화가족 아동 인구 실태를 충분히 검토한다면 보다 유연한 모둠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언어발달 교육에 참여하는 다문화가족 아동이 주 1~2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나 보육시설을 방문하게 하고 있으나, 접근성이 현저히 불리한 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한 추가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 - 보건복지부

□ 정책의 주요 내용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및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종합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004년에 전국 500개소를 지원했고, 2010년에는 2,946개소를 지원
 - 지원 단가는 2010년 현재 센터 1개소당 월 320만 원
 - 농어촌 읍·면에 소재하고 인근에 방과 후 돌봄시설(방과 후 학교, 타 센터 등)이 없는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 지원 심사 순위와 관계없이 별도 심사 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어, 농어촌의 특성을 일부 고려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 이용 아동 수 및 상근 종사자 수에 따라 월 200만~37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종사자 배치 기준
 - 아동 30인 이상: 시설장 1인, 영양사 1인(아동 50인 이상인 경우), 생활복지사 2인(아동 50인 초과 시 1인 추가)
 - 아동 10인 이상 30인 미만: 시설장 1인, 생활복지사 1인
 - 아동 10인 미만: 시설장 1인
 -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아동센터가 도서, 벽지, 농어촌 지역 등에 위치하여 시설장 수급의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간의 근무 가능 정도를 고려하여 시설장의 겸직을 허용할 수 있다(원

칙적으로 시설장 겸직 금지).

□ 농어촌 영향 검토 대상 사례로 선정한 이유

- 농어촌 지역의 인적 자원 부족 문제를 고려한 몇 가지 예외 방침을 두고 있는데, 그러한 배려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 지원 자금 중 농어촌의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운영관리비 항목 안에 ‘차량정비유지비’를 둘 수 있게 하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 아동의 접근성 문제를 고려할 때 유류비를 추가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3) 읍·면 중심지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 인근 지역 도로 개설 -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 농어촌 영향 검토 대상 사례로 선정한 이유

-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등 여러 수준의 도로가 건설되면서 국민의 교통 편의성은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으나, 특정 도로가 농어촌 지역 경제의 핵심인 읍·면 중심지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개설될 경우 해당 지역의 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일부 여론이 있다.
- 농어촌 중심지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도로를 개설할 경우, 중심지의 상업적 경제 활동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 도로 설계에 반영하거나 대안을 마련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지를 검토할 수 있다.

(4) 초·중등학교의 보건교사 수급 정책 -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청

□ 정책의 주요 내용

-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초등학교에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등을 둘 수 있게 하되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는 보건교사 1인을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학교보건법 시행령에서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에서 보건교사 1명 배치가 의무화되는 기준은 18학급 이상인 경우이다.

□ 농어촌 영향 검토 대상 사례로 선정한 이유

- 현재 농어촌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도시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009년 기준 서울(96.0%), 부산(93.9%), 충북(55.9%), 전북(56.0%)
 - 농어촌 지역에는 법 규정(18학급 이상)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보건교사를 배정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신종 플루 등 최근 빈발하는 급성 전염병 등의 사례를 고려할 때 보건교사 배치가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농어촌 지역의 학교에서 학생들의 보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할 가능성이 크다.
- 학급 수 또는 학생 밀도라는 기준에 따라 보건교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것 외에 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한 대안을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방과 후 학교 운영 정책 -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청

□ 정책의 주요 내용

- 정규수업 외의 다양한 학교 교육활동을 2006년부터 ‘방과 후 학교’라는 명칭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 2010년 6월 기준, 전국 초등학교의 54.0%가 방과 후 학교를 운영
 - 방과 후 학교 운영의 목적
 - 학교를 통한 다양한 학습 및 보육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 완화
 - 계층 간,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여 실질적인 교육복지 구현
 - 방과 후 학교를 구심점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 실현
 - 방과 후 학교 운영의 주요 내용
 - 교육감이 시·도별 운영계획을 수립하면, 학교장은 시·도 계획이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과 후 학교를 자율 운영
 - 교육감 및 학교장이 방과 후 학교의 자율 운영에 대해 책임
 - 수요자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 정규 수업 외의 시간에 정규 교육과정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운영
 - 방과 후 학교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운영하며, 모든 회계는 ‘공립 초·중

등학교 회계 규칙'을 준수

- 농어촌 영향 검토 대상 사례로 선정한 이유
 - 방과 후 학교 운영 여부를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율에 따라 결정하게 한 것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나, 재정적·인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어촌 학교에서는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수요가 있어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 방과 후 학교는 정규 수업 시간 외에 운영하는 것이지만, 전국적으로 절반 이상의 초등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지역 간 교육 격차를 부추기는 또 다른 사례가 될 수 있다.
 -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의 방과 후 학교 운영 실태를 비교할 수 있는 통계 자료를 검토해야 하며,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원인에 의해 농어촌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발생할 경우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6) 초·중등학교 교원 배정 정책 -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청

- 정책의 주요 내용
 - '2010년 교원 정원 배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사를 배치하던 것을,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사를 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관심을 끈 바 있다.
 - 현재 면 단위 이하의 농어촌 학교들은 주로 6학급 이하, 또는 3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이다. 전공교사 부족, 상치교사 및 순회교사 증가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 2009년 기준으로, 경상북도에서는 3학급 학교가 전체 중학교 293개교 중 129개교(44.0%), 고등학교 193개교 중 17개교(9.9%)에 달한다.
 - 2008년 전국 중등학교 상치교사는 일반 교과 1,197명, 예체능 과목 282명, 외국어 과목 115명 등 약 1,600명에 달했다. 주로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등 도서벽지가 많은 농어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 농어촌 영향 검토 대상 사례로 선정한 이유

- ‘교원 정원 배정안’이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한 계획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 학교의 경우, 학급 수에 비해 학생 수가 적어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는 교원 정원 배정안은 농어촌 학교 교원 수 감소와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7) 도서관 발전 종합 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 정책의 주요 내용

-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 정책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10년 한 해 동안 공공도서관 84개관, 작은 도서관 103개관을 조성하는 등 도서관 확충 사업을 통해 2013년에는 인구 5만 명당 1개관 수준으로 도서관을 확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 장서 확충, 도서관 운영 인력 확보, 학교 도서관의 기본 역량 개선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 농어촌 영향 검토 대상 사례로 선정한 이유

- 인구 밀도를 기준으로 한 도서관 확충 계획이 결과적으로 농어촌 지역을 도서관 확충 대상의 우선순위에서 하위에 머물게 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특히,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할 때 도서관 정책이 농어촌에서 의도하지 않은 차별적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도서관에 대한 주민의 교통 접근성이 현저하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농어촌 지역에서의 도서관 정책에서 특별히 고려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8)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 -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 정책의 주요 내용

- 중소기업청 등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융자, 신용보증, 컨설

팅 등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융자 지원: 자영업자 특례보증제도,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제도
- 컨설팅 및 정보화 지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 육성 사업
- 창업 지원: 창업 컨설팅 지원 사업, 중소기업 재창업 자금 지원
-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융자, 소상공인 e-러닝 교육, 소상공인 경영개선 교육

□ 농어촌 영향 검토 대상 사례로 선정한 이유

-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에는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거나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부록 3

농어촌 영향 평가 지침(안)

1. 농어촌 영향 평가 제도의 도입 배경과 필요성

- 인구 분산·원거리 거주, 접근성 불리 등 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할 때, 농어촌에 불리한 차별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및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종합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2010년 현재 전국의 2,946개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를 지원
- 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어촌에 소재하고 인근에 방과 후 돌봄 시설이 없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지원 대상 선정에 위한 별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함
- 그러나 이 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농어촌 지역에서는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불리한 영향이 발생하고 있음
 - 1)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침에 운영관리비와 프로그램비의 비중이 도시, 농촌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음
 - 농어촌의 아동들은 도시 아동과 달리 영화 등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대도시까지 이동해야 하고 가정에 목욕시설이 부족하여 단체 목욕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
 - 2) 도시와는 달리 지역아동센터에서 학습을 지도하거나 급식을 도와줄 자원봉사자가 농어촌에는 부족하고, 특히 농번기에는 자원봉사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런 문제를 보완할 조치가 필요
 - 3) 농어촌에서는 아동들을 이동시킬 차량 운행 범위가 넓어 유류비가 도시에 비해 더 많이 소요되며,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면 지역 거주 아동들은 아예 수혜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정책 사업 사각지대가 존재
 - 4) 농어촌 지역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아닌 일반 농가 아동도 사실상 사업의 수혜를 받아야 할 여건에 처한 경우가 많으므로, 농어촌에서는 수혜 대상 아동 선정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등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정책 구상 단계에서의 협의·조정 시스템은 미흡
- 농어촌이 도시보다 불리하지 않은 정책 서비스를 받도록 정책 입안 단계부터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
 - * 영국·뉴질랜드(Rural Proofing), 캐나다(Rural Lens) 등 선진국에서도 같은 취지의 제도 운용 중

2. 운용 방향

- 정부 정책 개발 시 농어촌의 특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도록 유도하고, 정책의 성공 가능성 및 품질 향상을 지원
 - 정책 수립의 걸림돌 또는 규제가 아닌 정책 수립 지원 역할
 - 정책 입안 시 고려해야 할 농어촌의 특수성을 체크리스트로 제시
- 농어촌 영향 평가 유형
 - 자체 평가: 각 기관의 공무원이 직접 소관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농어촌 영향 평가를 추진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
 - 심층 평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핵심 정책이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정책을 삶의 질 향상 위원회가 선정하고, 그것을 전문가가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연구 용역 형태로 추진
- 삶의 질 향상 위원회가 매년 농어촌 영향 평가 활동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개선·보완한 정책 및 제도의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서로 발간하여, 국민에게 지역에 관계없이 공정한 정책 시행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을 홍보

- 정책 대안 모색을 위한 지원 체계 확충
 - 농어촌 관련 자료 제공 및 자문 활동을 수행할 전문 연구기관 지정 및 전문가 풀(pool) 형성
 -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정책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농어촌 영향 평가 포럼 운영
 - 객관적 근거 자료에 기초한 정책 과정이 되도록 도시-농촌 비교 통계 기반 확충

3. 영향 평가 시 고려해야 할 농어촌의 특성과 여건

- 인프라
 - 건강·교육·복지·문화여가 등의 서비스 접근성 불리 및 높은 서비스 공급 비용
 - 도시에 비해 도로망, 대중교통 등이 불리하고 자동차 보유율이 낮음
 -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 거동 불편 노인 또는 장애인 등의 서비스 창구 접근성 불리
 - 농어촌은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 거주하는 특성이 있어 일정 지역에 밀집하여 거주하는 도시에 비해 더 많은 서비스 공급 비용 소요
 - 상대적으로 많은 이동 소요 시간 및 비용
 - 도시에 비해 이동거리가 길어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차량 유지비가 도시에 비해 많이 소요
 -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을 경우, 대중교통 등이 부족함에 따라 다양한 기회에 접근하기 어려움
- 지역경제
 - 시장 규모가 작고, 고객들이 먼 거리에서 분산 거주
 - 직원 10명 미만의 소규모 업체가 다수 분포
 - 종사자의 상당수가 시간제·계절제 근무를 하며, 여성 비율이 높음
 - 농어촌 경제에서 농어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

- 농어업 생산의 부가가치는 적지만, 농어촌 경관 형성 및 생물학적 다양성 유지에 크게 기여

지역사회

- 농어촌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미흡할 가능성
 - 농어촌 가구는 넓은 면적에 분산 거주하고 있어, 각종 조사나 통계 자료 분석에서 사회적 약자 문제가 드러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도시에 비해 농어촌 지역의 공공기관은 지원 수, 예산 규모 등 자원과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
- 농어촌에는 자원봉사자, 시민단체 등 민간 부문의 인적자원과 사회적 자본이 부족하여 정책 시행 과정에서 협력할 파트너를 찾기가 어려움

4. 농어촌 영향 평가 체크리스트

- 도로망, 대중교통, 자동차 보유율 등 접근성 측면에서 농어촌 주민이 불리한 여건에 있다는 점이 정책 시행 결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가?
- 농어촌의 인구 밀도가 낮기 때문에 도시에 비해 정책 서비스 공급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가?
- 농어촌에 소재한 사업체의 규모가 도시에 비해 대체로 영세하다는 점이 정책 시행 결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가?
- 농어촌의 경제활동 종사자 가운데에는 여성이 많고 시간제 또는 계절제 노동자들이 많다는 특성이 정책 시행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가?
- 농어업이 농어촌 지역경제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 정책 시행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가?

- 인적자원, 예산 등의 측면에서 농어촌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정책 시행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가?
- 농어촌에는 자원봉사자, 시민단체 등 민간 부문의 사회적 자본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정책 시행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가?

5. 농어촌 영향 평가 추진 체계 및 방법

가. 적용 대상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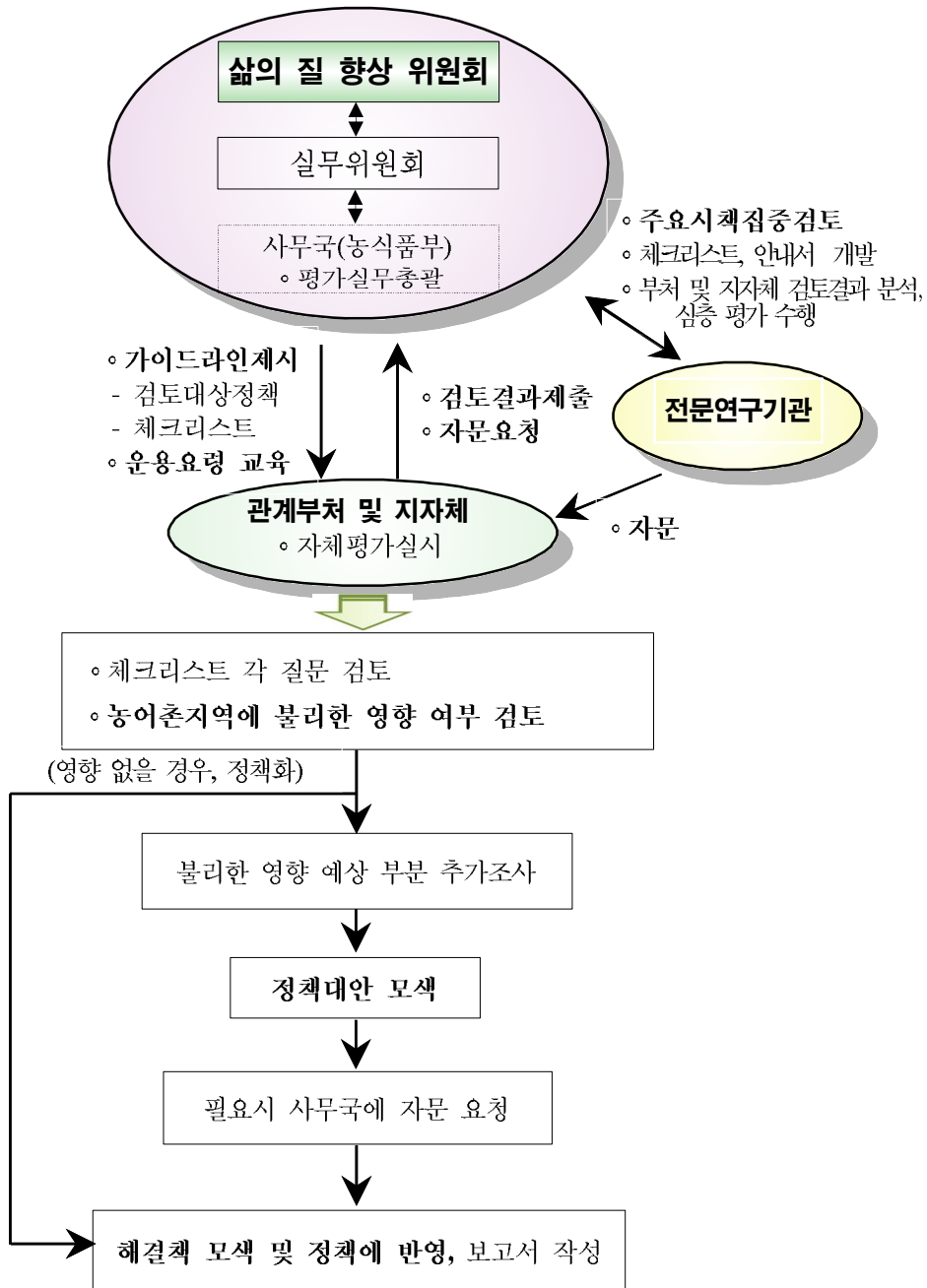
- 대상 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나. 추진 체계 개요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제도 운영
 - 평가 지원: 평가 지침 개발 및 배포
 - 제도 및 정책 개선: 평가 결과를 반영한 개선 방안 실천 여부 점검 및 정책 권고
 - 평가 종합: 기관별 농어촌 영향 평가 추진 실적 공표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사무국(농림수산식품부)
 - 평가 지원: 농어촌 영향 평가 안내서 개발·보급, 교육 및 컨설팅 제공, 관련 연구(심층 평가 등) 추진
 - 평가 종합: 농어촌 영향 평가 실적 수집·분석 및 위원회 보고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평가 수행
 - 농어촌 영향 평가 총괄 부서 및 담당자 지정·운영

- 연도별 평가 추진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서 작성
 - 계획한 정책을 대상으로 자체 평가 수행
 - 평가 결과를 반영한 정책 개선안 마련
 - 자체 농어촌 영향 평가 교육 실시
- 평가 지원 전문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등
- 농어촌 영향 평가 안내서 개발 지원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의 농어촌 영향 평가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 컨설팅·자문·교육
 - 심층 평가 설계 및 수행
 - 농어촌 영향 평가 제도의 개선 및 발전에 필요한 연구

<농어촌 영향 평가 업무 흐름도>



다. 추진 방법

1) 자체 평가 진행 절차

□ 평가 대상 정책 선정

- 각 기관의 농어촌 영향 평가 총괄 부서는 해당 기관의 각 부서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 대상 후보 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사무국에 제출
 - 기관 내·외부 전문가, 고객 등의 의견 수렴 병행
-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평가 대상 후보 정책 과제 목록을 취합한 후, 농어촌 영향 평가 대상 정책 선정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 대상 정책을 확정하고 해당 기관에 통보
- 농어촌 영향 평가 대상 정책 선정 소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

□ 평가 계획 수립 및 제출

- 평가 대상 정책 소관 부서에서 농어촌 영향 평가 계획 수립
- 각 기관의 평가 총괄 부서가 평가 계획을 종합하여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 제출

□ 평가 수행

- 선정된 정책의 소관 부서 담당자가 농어촌 영향 평가 지침 및 안내서를 참조하여 수행한 후, 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 평가 지원 전문 연구기관에 자문, 컨설팅 요청

□ 농어촌 영향 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각 기관의 평가 총괄 부서는 소관 부서로부터 대상 정책별 평가 수행 및 결과 보고서를 취합하여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사무국에 제출
 - 결과 보고서에는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 및 보완에 관한 제언을 포함

2) 심층 평가 진행 절차

□ 평가 대상 정책 선정

-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평가 대상 선정 소위원회가 각 기관으로부터 받은 평가 대상 후보 정책 과제 목록에서 선정
 - 해당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의 의견 수렴
- 평가 대상 선정 소위원회에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 대상 정책 선정

□ 평가 계획 수립 및 수행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평가 지원 전문 연구기관에 심층 평가를 의뢰
- 전문 연구기관은 삶의 질 향상 위원회와 협의하여 평가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수행

□ 농어촌 영향 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전문 연구기관은 평가 결과 보고서를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사무국에 제출
 -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 제안을 보고서에 포함

3) 농어촌 영향 평가 대상 정책 선정 기준

□ 도시와 농촌 모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정책 가운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것에서 선정

- 관련 통계상 정책 수혜도의 도시-농촌 간 격차가 있는 정책 또는 향후 격차 발생 우려가 있는 정책
- 수혜 대상 범위가 넓고, 파급 효과가 큰 중요 정책
 - 정부의 주요 업무보고에 반영된 정책 과제
 -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 계획에 포함된 정책 과제
 - 농어촌 서비스 기준 등 농어촌 주민 삶의 질 관련 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복지, 고용, 교육 부문 정책
- 대체 과제: 파급 효과가 큰 법령 및 제도 개선 추진을 농어촌 영향 평가의 대체 과제로 인정
- 대상 정책 선정 시 유의사항
 - 농어촌(읍·면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나 이미 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있거나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제외(예: 농어업인 전문병원 설립)
 - 형식적이고 중복적인 평가 대상 정책 수의 단순 확대는 지양
- 4) 기관별 농어촌 영향 평가 과제 수
 -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관별 2개 이상
 - 예산 요구 시 사업 설명 자료를 작성하는 세부 사업 단위의 사업을 최소 1개 이상 포함
 - 도농 복합시인 기초 지방자치단체: 1개 이상
 - 시·도 교육청: 1개 이상

<부표> 농어촌 영향 평가에서 검토해야 할 주요 내용

구분	항목	검토자료 및 방법, 결과 서술 방식	향후 정책 보완 시 고려할 만한 대안 선택지
정책의 개요	1-1. 정책(또는 정책사업)의 시행 기관	* 중앙정부 부처, 각급 지자체, 지방 행정기관 등의 역할 분담이 있는 경우 상세히 서술	
	1-2. 정책(또는 정책사업)의 목적	* 관계 법규, 사업시행 지침 등에 명시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인용	
	1-3. 정책(또는 정책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1-4. 정책(또는 정책사업)의 주요 내용	* 수혜 대상,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주요 활동 내용	
	1-5. 사업 추진 현황	* 실적이나 성과에 관한 정량적 자료 * 특히, 도시-농촌을 구분한 통계 자료가 있다면 반드시 제시	
고려해야 할 농어촌 특성 (체크리스트)	2-1. 농어촌에서는 주민의 서비스 접근성이 불리하고 서비스 이용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 전화 또는 방문 서비스 활용 * 서비스 창구를 주민이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정보통신 기술 활용 * 교통망 개선(예: 추가 서비스, 수요반응적 교통체계)
	2-2. 농어촌의 인구밀도가 낮고 정책 수혜 대상자 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자료 수집·분석', '전문가 자문', '관련자 면접 조사', '농어촌 주민, 단체 등과의 토론 또는 자문회의' 등의 검토 방법 중에서 실시한 방법을 선택 * 고려한 항목의 검토 여부와 더불어, 검토 결과에 대한 부연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지역의 서비스 창구 유지 또는 신규 설치를 위해 다른 종류의 서비스 제공자와 시설이나 직원을 공유(합동서비스) * 서비스 통폐합을 보완하는 교통수단 제공 및 접근 가능성 제고 * 주요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도록 추가적 재정 지원 * 자금 지원 규모 산출 공식 또는 비용효율성을 검토할 때,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단위 전달 비용을 허용(예: 인구밀도를 고려) * 농어촌 지역에서의 서비스 비용 할인

구분	항목	자료 및 방법, 결과 서술 방식	향후 정책 보완 시 고려할 만한 대안 선택지
고려해야 할 농어촌 특성 (체크리스트)	2-3. 농어촌에 존재하는 사업체 규모가 영세하고 분산되어 있는 특성을 고려하였는가?	* '통계 자료 수집 분석', 전문가 자문', '관련자 면접 조사', '농어촌 주민, 단체 등과의 토론회 또는 자문회의' 등의 검토 방법 중에서 실시한 방법을 선택 * 고려한 항목의 검토 여부와 더불어, 검토 결과에 대한 부연 설명	* 소기업, 소상공인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다루어지도록 보장 * 컨설팅, 교육훈련, 상담 제공 *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불균형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 개선
	2-4. 농어촌에서는 경제활동 인력 가운데 여성 비율이 높고 시간제 및 계절제 노동자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였는가?		* 직업 선택 폭을 높일 수 있는 방안(숙련도 증대, 지역 아동 보육 향상, 통근수단 개선) 강구
	2-5.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적자원이 부족하다는 점 등 지역 역량을 고려하였는가?		*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을 고려한 차등 지원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2-6. 농어촌에서는 자원봉사자, 시민단체 등이 부족하여 협력 파트너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였는가?		* 농어촌 지역의 자발적 결사체의 역량 강화 * 제한된 민간 부문의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공공 부문의 직접 투입 수준 증대 * 인접한 타 지역과의 협력 장려
농어촌 영향 분석 결과	3-1. 정책(또는 사업)이 도시 지역에 비해서 농어촌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가?	* '예', '아니오'로 답변	
	3-2.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그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요약 서술	
기타 검토 사항	4-1. 분석 과정에서 활용한 통계 자료 소개	* 통계 자료의 명칭, 생산 방식, 생산 주체, 발간 주기 등에 대한 개괄적 소개	
	4-2. 분석과정에서 통계 자료가 없거나 미흡했다면, 향후 어떻게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통계의 내용, 생산 주체, 주기, 방법 그리고 도시농촌 분리 통계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	
	4-3. 전문가 또는 관계자들과 진행한 면담 및 토론회 내용	* 주요 내용을 요약 서술	
	4-4. 정책(또는 사업)이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여러 항목 일부분과 관련이 있는가?	* 관련이 있는 서비스 기준 항목 기술	

구분	항목	자료 및 방법, 결과 서술 방식	향후 정책 보완 시 고려할 만한 대안 선택지
	4-5. 정책(또는 사업)이 현행 또는 현재 계획한 대로 시행한다면 농어촌 서비스 기준 달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그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농어촌 서비스 기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대안 모색	5-1. 예상되는 '농어촌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최소화하려면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	* '법률 및 시행령 제 개정', '사업 시행 절차 개선', '수혜 대상 범위 및 예산 배분 등에 관한 사업 지침 개정', '특정 농어촌 지역을 사업 대상지로 추가 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 '관련된 특별회계나 기금 등 높은 수준에서의 예산 확보',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초한 해결책 마련', '농어촌 주민이나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강화' 등을 선택지(option)로 제시	
	5-2. 정책 대안 구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		

부록 4

농어촌 영향 평가 매뉴얼(안)

1. 농어촌 영향 평가에 대한 소개

가. 농어촌 영향 평가의 개념

농어촌 영향 평가란 정책을 분석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책의 기획 단계부터 시작하여 집행 단계에서 특정 내용, 프로그램, 법령 등이 도시와 농촌 지역에 미칠 수 있는 차별적 영향을 파악하여 사전에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지역 모두에서 주민 삶의 질이 균형 있게 향상되도록 기여하는 동시에 정책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수단입니다.

※ 농어촌 영향 평가란? 정책을 입안하거나 집행할 때 도시와는 다른 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이 도시와 농촌에 고르게 혜택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

- 도시-농촌이 따로 구분된 통계 등 객관적 자료와 정책 고객의 요구를 바탕으로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
- 정책의 시행이 도시에 비교하여 농촌에 어떠한 차별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 파악
- 궁극적으로는 도시와 농촌에 형평성 있는 효과를 갖는 정책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도구

나. 농어촌 영향 평가와 농어촌 인지적 정책

※ 농어촌 영향 평가와 농어촌 인지적(認知的) 정책

- 농어촌 인지적 정책은 정책 과정에서 농어촌과 도시의 특성, 차이, 주민 요구 및 관점 등을 고르게 반영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지역 차별을 초래하는 일이 없게 하며 궁극적으로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정책
- 정책을 만들 때 사회경제적 계층별, 성별 요소를 고려하듯이 농어촌 인지적 정책은 정책 수혜 대상자의 거주 지역을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사용
- 농어촌 영향 평가는 이러한 농어촌 인지적 정책 수립·시행의 주요한 도구로서 2009년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서 도입하기로 천명한 제도

다. 농어촌 영향 평가의 필요성

- 국민을 위한 정책이 특정 지역을 차별할 의도를 갖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분산되어 원거리에 거주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 및 민간 서비스에 접근하기 불편하고 인구 규모가 작고 고령화되어 있는 등 농어촌의 여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전체 국토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균등한 혜택을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 지역 불평등과 무관해 보이는 정책과 사업이라 하더라도 농어촌의 특성과 농어촌 주민의 요구를 잘 반영하지 않으면 지역적으로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정책의 효과성과 만족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및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종합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전국의 2,946개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였다.

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어촌에 소재하고 인근에 방과 후 돌봄 시설이 없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별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농어촌 지역에서는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불리한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첫째,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침에 운영관리비와 프로그램비의 비중이 도시, 농촌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남아 있다. 농어촌의 아동들은 도시 아동과 달리 영화 등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대도시까지 이동해야 하고 가정에 목욕시설이 부족하여 단체 목욕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도시와는 달리 지역아동센터에서 학습을 지도하거나 급식을 도와줄 자원봉사자가 농어촌에는 부족하고, 특히 농번기에는 자원봉사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런 문제를 보완할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농어촌에서는 아동들을 이동시킬 차량 운행 범위가 넓어 유류비가 도시에 비해 더 많이 소요되며,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면 지역 거주 아동들은 아예 수혜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정책 사업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넷째, 농어촌 지역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아닌 일반 농가 아동도 사실상 사업의 수혜를 받아야 할 여건에 처한 경우가 많으므로, 농어촌에서는 수혜 대상 아동 선정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라. 농어촌 영향 평가의 유형

- 자체 평가: 각 기관의 공무원이 직접 소관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농어촌 영향 평가를 수행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 심층 평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핵심 정책이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정책을 ‘삶의 질 향상 위원회’가 선정하고, 그것을 전문가가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연구 용역 형태로 추진합니다.

마. 농어촌 영향 평가의 기대 효과

- 농어촌 영향 평가를 통하여 정책과 사업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돌아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도시 주민과 농어촌 주민 모두에게 득이 되며 도농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데 기여합니다.
- 농어촌 영향 평가는 정책과 사업의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 하므로 정책과정 민주화에 기여합니다.
- 농어촌 영향 평가는 정책과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새로운 정책 영역을 개발함으로써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을 구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바. 농어촌 영향 평가 추진 단계

추진 과정	주요 내용	제출 마감
농어촌 영향 평가 대상 정책 선정	* 도시와 농촌에 공히 투입되는 모든 정책이나 사업이 대상임 * 기관 내외 전문가, 고객의 의견을 수렴 * 각 기관의 농어촌 영향 평가 총괄 부서 또는 지정된 담당자가 해당 기관의 각 부서로부터 평가 대상 후보 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그 목록을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 제출	○월 ○일
농어촌 영향 평가 계획 수립·제출	* ‘삶의 질 향상 위원회’가 선정한 평가 대상 정책의 소관 부서에서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 평가 계획서에는 사업의 개요를 비롯하여 농어촌 영향 평가 실시 필요성, 평가 방법, 사업 소관 부서 및 연락처 등의 내용을 포함	○월 ○일
농어촌 영향 평가 수행	* 선정된 정책의 소관 부서 담당자가 농어촌 영향 평가 지침 및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수행한 후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 평가 지원 전문연구기관에 자문, 컨설팅 요청	○월 ○일 ~ ○월 ○일
농어촌 영향 평가 결과 보고서	* 각 기관의 평가 총괄 부서는 소관 부서로부터 평가 결과 보고서를 취합하여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 제출 * 결과 보고서에는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 및 보완에 관한 제언을 포함	○월 ○일

2. 농어촌 영향 평가의 실무

가. 농어촌 영향 평가 대상 후보 정책 목록 작성

- 도시와 농촌 지역 모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정책 및 사업 가운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것들로 목록을 만듭니다.
 - 관련 통계상 정책 수혜도의 도시-농촌 간 격차가 있는 정책 또는 향후 격차 발생 우려가 있는 정책
 - 수혜 대상 범위가 넓고, 파급 효과가 큰 중요 정책
 - 정부의 주요 업무보고에 포함된 정책
 -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 계획’에 포함된 정책
 - 농어촌 서비스 기준 등 농어촌 주민 삶의 질 관련 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복지, 고용, 교육 등의 부문 정책

- 농어촌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또는 이미 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있거나 집행하고 있는 정책은 목록에서 제외합니다.
 - 예) 농어업인 전문병원 설립 사업

- 형식적이고 중복적인 방식으로 평가 대상 정책 수를 단순히 확대하는 방식은 지양합니다.

※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란?

○

□ 기관별 평가 대상 정책 수

-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관별 **개 이상
 - 예산 요구 시 사업 설명 자료를 작성하는 세부 사업 단위의 사업을 최소 **개 이상 포함
- 도농 복합시인 기초 지방자치단체: **개 이상
- 시·도 교육청: **개 이상

<농어촌 영향 평가 대상 후보 정책 목록 작성을 위한 점검표>

구분	검토 내용	응답	
		예	아니오
지역 간 차이	1) 정책(사업)의 대상 지역을 도시, 농촌으로 구별할 수 있는가?		
	2) 정책(사업) 수혜 정도에서 도시-농촌 간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파급 효과	3) 기관의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된 정책(사업)인가?		
	4) 기관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된 정책(사업)인가?		
	5) 국정과제에 포함된 정책(사업)인가?		
	6) 농어촌 서비스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사업)인가?		
예산 규모	7) 예산 규모가 큰 정책(사업)인가?		
평가 결과 환류	8) 정책(사업) 개선의 여지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사업)인가?		
	9) 도시-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해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정책(사업)인가?		
합계			

※ 이 점검표를 활용하여 농어촌 영향 평가 대상 후보 정책을 선정할 때 ‘예’로 체크된 항목이 많은 정책(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

※ 대상 정책의 선정은 농어촌 영향 평가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주므로, 이 점검표를 사용하면서 전문 연구기관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

나. 평가 계획서 작성 방법

농어촌 영향 평가 계획서: 총괄 담당자 작성

1) 개요

- ☞ 농어촌 영향 평가 계획서의 '개요'는 총괄 부서에서 작성하는 부분으로 농어촌 영향 평가 관련 교육 실시 계획 또는 홍보 계획 등 농어촌 영향 평가를 자체적으로 추진하려 하는 계획을 비롯하여 매년 평가 대상 정책 후보 현황 등을 명시합니다.

□ 개요

- ☞ 당해 연도 농어촌 영향 평가 추진체계, 교육 및 홍보 계획 등을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 추진체계

총괄 부서	○○○국 ○○○과
예산	()백만 원
평가대상 정책 선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토의 ▫ 외부 전문가 자문 ▫ 관련 단체 의견 수렴 ▫ 기타

○ 농어촌 영향 평가 교육, 홍보 계획

- ☞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농어촌 영향 평가 관련 교육이나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참가할 계획 등을 서술합니다. 당해 연도에 추진할 농어촌 영향 평가에 관한 홍보 계획을 서술합니다.

- ☞ 누가 어떤 교육에 언제 참여할 것인지 등 가급적 명확하게 서술합니다.

평가 대상 정책 현황

☞ 총괄 부서가 개별 정책의 추진 계획서를 취합한 이후 농어촌 영향 평가 대상 정책 현황을 요약하여 정리합니다.

No	정책(사업)명	예산사업 여부	평가 필요성	정책 선정 방법	비고
1	※평가대상 정책명 기재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내부토의 ▫외부 전문가 자문 ▫관련 단체 의견 수렴 ▫기타	※단년도/다년도 사업 여부 표시 ※심층과제 표시
•					

대상 정책별 계획: 정책 담당자 작성

2) ○○○사업 농어촌 영향 평가 계획

☞ 농어촌 영향 평가 계획서의 대상 정책별 계획은 대상 정책 담당자가 업무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여 기관 내 총괄 부서에 제출합니다.

정책 개요

○ 정책 목적

☞ 사업계획서나 업무계획 등에 기입된 대상 정책의 목적을 기재합니다. 농어촌 영향 평가 대상 정책의 고유 목적을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으로 농어촌 영향 평가를 하는 목적을 기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 정책 내용

☞ 정책의 추진 근거가 되는 법, 규정, 지침 등을 기입하고, 사업의 수혜 대상, 사업 분야 등을 명시합니다.
☞ 세부 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서술합니다.

구분	분류 항목		
관련 법령 및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있음(법령 및 지침:) ▫ 없음 		
사업 대상	※ 사업의 수혜 대상을 서술		
사업 분야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질서 및 안전 ▫ 수송 및 교통 ▫ 농림해양수산 ▫ 문화체육관광 ▫ 보건 ▫ 사회복지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중소기업 ▫ 교육 ▫ 일반공공행정 ▫ 지역개발 ▫ 통신 ▫ 환경보호 </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질서 및 안전 ▫ 수송 및 교통 ▫ 농림해양수산 ▫ 문화체육관광 ▫ 보건 ▫ 사회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중소기업 ▫ 교육 ▫ 일반공공행정 ▫ 지역개발 ▫ 통신 ▫ 환경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질서 및 안전 ▫ 수송 및 교통 ▫ 농림해양수산 ▫ 문화체육관광 ▫ 보건 ▫ 사회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중소기업 ▫ 교육 ▫ 일반공공행정 ▫ 지역개발 ▫ 통신 ▫ 환경보호 		
세부 사업 내용			

○ 예산

- ☞ 예산 구성비와 단위 세부 사업별 금액을 기재합니다.
- ☞ 당해 연도 사업 추진 실적을 집행한 예산 총액과 세부 사업 건수로 기록합니다.

세부 사업명	예산 구성	추진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비 원(%) ▫지방비 원(%) ▫기타 원(%) 	

□ 농어촌 영향 평가의 필요성

- ☞ 농어촌 영향 평가 대상 정책으로 선정한 이유를 기재합니다.
- ☞ 농어촌 영향 평가 없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대상 정책 사업을 시행한다면 농어촌과 도시 간에 어떤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서술합니다.

□ 평가 방법

- ☞ 대상 정책의 농어촌 영향 평가를 자체평가로 할 것인지 심층평가로 할 것인지를

구분하고,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을 상세히 서술합니다.

평가 결과 활용 계획

☞ 대상 정책의 농어촌 영향 평가 결과를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정책 소관 부서 및 연락처

구분	분류 항목
기관명	
소재지	
소관부서	
담당자	성 명:() / 직급:() 전화번호:() 이 메 일:()

☞ 농어촌 영향 평가 대상 정책 담당자의 소속 부서, 연락처 등을 기재합니다.

나. 농어촌 영향 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방법

☞ 농어촌 영향 평가 결과 보고서는 1) 농어촌 영향 평가 총괄 부서가 작성하는 개요와 2) 농어촌 영향 평가 정책 담당자 각자가 자신의 업무를 대상으로 평가 결과를 작성하는 보고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요: 총괄 부서 작성

☞ 해당 기관에서 정책에 대해 실시한 농어촌 영향 평가 활동의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 농어촌 영향 평가 추진 현황

연번	정책(사업)명	추진 실적	비고
	※ 평가대상 정책(사업)명 기재	※ 평가 진행 사항을 간략히 기재	

- ☞ 추진 실적에는 농어촌 영향 평가 진행 사항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회의 개최 현황,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 문헌 및 자료 분석 등)

정책(사업)별 결과 보고서: 평가 수행 부서 작성, 평가 총괄 부서 취합

1. ○○○(평가 대상 정책명) 농어촌 영향 평가 결과 보고서

□ 과제 개요

- ☞ 농어촌 영향 평가 대상 과제의 개요에는 정책(사업) 목적, 내용, 예산 등의 내용을 서술합니다.

○ 사업 목적

- ☞ 사업계획서나 업무계획 등에 기입된 대상 사업의 목적을 기재합니다.

○ 정책 내용

- ☞ 정책의 추진 근거가 되는 법, 규정, 지침 등을 기입하고, 사업의 수혜 대상, 사업 분야 등을 명시합니다.
- ☞ 세부 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서술합니다.

구분	분류 항목
관련 법령 및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있음(법령 및 지침:) ▫ 없음
사업 대상	※ 사업의 수혜 대상을 서술
사업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50%;">▫ 공공질서 및 안전 <li style="width: 50%;">▫ 산업·중소기업 <li style="width: 50%;">▫ 수송 및 교통 <li style="width: 50%;">▫ 교육 <li style="width: 50%;">▫ 농림해양수산 <li style="width: 50%;">▫ 일반공공행정 <li style="width: 50%;">▫ 문화체육관광 <li style="width: 50%;">▫ 지역개발 <li style="width: 50%;">▫ 보건 <li style="width: 50%;">▫ 통신 <li style="width: 50%;">▫ 사회복지 <li style="width: 50%;">▫ 환경보호
세부 사업 내용	

○ 예산

- ☞ 예산 구성비와 단위 세부 사업별 금액을 기재합니다.
- ☞ 당해 연도 사업 추진 실적을 집행한 예산 총액과 세부 사업 건수로 기록합니다.

세부 사업명	예산 구성	추진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비 원(%) ▫지방비 원(%) ▫기타 원(%) 	

□ 정책 영향 평가

- ☞ 정책 영향 평가에서는 대상 정책 시행 시 농어촌에 불리한 차별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농어촌 지역의 특성에 관한 8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단합니다.

○ 지표 1: 서비스 접근성

- ☞ 농어촌의 도로망, 대중교통, 자동차 보유율 등 측면에서 주민의 서비스 접근성이 불리하여 정책의 결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합니다.

구분	항목
사업체 규모 때문에 정책의 효과가 더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도시 ▫농어촌 ▫해당사항 없음
평가방법	▫통계 자료 분석 ▫내부토의 ▫외부 전문가 자문 ▫관련 단체 의견 수렴 ▫기타()
주요내용	※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에 대상 정책의 효과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 이유를 상세히 서술

○ 지표 4: 농어촌 경제활동 인력의 특성

☞ 여성 비율, 시간제 및 계절제 근무 등 농어촌 경제활동 인력의 특성으로 인해 정책의 결과가 영향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합니다.

구분	항목
경제활동 인력의 특성 때문에 정책의 효과가 더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도시 ▫농어촌 ▫해당사항 없음
평가방법	▫통계 자료 분석 ▫내부토의 ▫외부 전문가 자문 ▫관련 단체 의견 수렴 ▫기타()
주요내용	※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에 대상 정책의 효과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 이유를 상세히 서술

○ 지표 5: 농어촌 지역경제의 구조적 특성

☞ 농어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농어촌 지역경제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정책의 결과가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합니다.

구분	항목
지역경제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정책의 효과가 더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도시 ▫농어촌 ▫해당사항 없음
평가방법	▫통계 자료 분석 ▫내부토의 ▫외부 전문가 자문 ▫관련 단체 의견 수렴 ▫기타()
주요내용	※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에 대상 정책의 효과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 이유를 상세히 서술

○ 지표 6: 공공기관의 자원과 역량

- ☞ 농어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의 자원과 역량이 부족하여 정책의 결과가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합니다.

구분	항목
공공기관의 자원과 역량 부족 때문에 정책의 효과가 더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도시 ▫농어촌 ▫해당사항 없음
평가방법	▫통계 자료 분석 ▫내부토의 ▫외부 전문가 자문 ▫관련 단체 의견 수렴 ▫기타()
주요내용	※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에 대상 정책의 효과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 이유를 상세히 서술

○ 지표 7: 사회자본(Social capital)과 인적자원

- ☞ 자원봉사자, 시민단체 등 사회자본과 인적자원이 부족하여 정책의 결과가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합니다.

정책 대안	세부 개선 방안	예상 효과
법률 및 시행령 제·개정	※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상세히 서술	※ 정책 개선 시 예상되는 효과를 서술
사업 시행 절차 개선		
수혜 대상 범위 및 예산 배분 등에 관한 사업 지침 개정		
특정 농어촌 지역을 사업 대상지로 추가 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		
관련된 특별회계나 기금 등 높은 수준에서의 예산 확보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초한 해결책 마련		
농어촌 주민이나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강화		
기타		

부록 5

지방자치단체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현황

시도 (센터수)	센터명	주 소
서울 (20)	종로구	종로구 창신2동 596-2 동부여성문화센터 3층
	용산구	용산구 한남2동 728-2 용산여성문화회관 1층
	광진구	광진구 광장동 472-1 광장종합사회복지관내 3층
	동대문구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대 생활과학대학 223호
	중랑구	중랑구 면목8동 51-2 건물 2층
	성북구	성북구 보문동 5가 14 노동사목회관 5층
	강북구	강북구 번2동 318 강북웰빙스포츠센터 3층
	노원구	노원구 공릉동 659-19 4층
	은평구	은평구 신사동 26-45 건물 3층
	서대문구	서대문구 연희동 79-31 예림빌딩 4층
	마포구	마포구 합정동 388-19
	강서구	강서구 화곡동 1159-4 우장산주민센터 3
	구로구	구로구 구로3동 777-22 舊 구로3동사무소
	금천구	금천구 시흥본동 841 시흥본동자치센터
	영등포구	영등포구 신길1동 동사무소 4층
	동작구	동작구 사당2동 1136-1번지 3층
	관악구	관악구 봉천4동 1571-1 관악구청 내
	송파구	송파구 마천동 127-1
	강동구	강동구 천호2동 358 천호2동주민센터 5층
	강남구	강남구 개포동 14-2
부산 (7)	부산진구	부산진구 전포동 653-14 2층
	남구	남구 수영로 530 여성회관
	북구	북구 효열로 218 부산여성가족개발원 3층
	해운대구	해운대구 좌동 1458-2

시도 (센터수)	센터명	주 소
	사하구	사하구 신평동 545-2 1층
	사상구	사상구 보수로 795번지 여성문화회관
	기장군	기장군 기장읍 기장중앙로 208 기장종합사회복지관
대구 (6)	동구	동구 동호동 358 대구카톨릭대학교 부설유치원 4층 402호
	서구	서구 원대동 3가 1115-5
	남구	남구 대명2동 19-1 2층
	수성구	수성구 중동 266-5
	달서구	달서구 신당동 1000 계명대 제2백은관 207-1호
	달성군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553-41 3층
	인천 (7)	중구
남구		남구 주안5동 22-59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남동구		남동구 만수5동 894-21 2층
부평구		부평구 갈산동 375-1
계양구		계양구 계산동 906-1 3층
서구		서구 공촌동 32-4
강화군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213-2(구보건소 3층)
광주 (3)	서구	서구 양3동 385-20
	북구	북구 신안동 237-5 용봉회관 2층
	광산구	광산구 월곡동 696-10
대전 (2)	유성구	유성구 관평동 767번지
	대덕구	대덕구 오정동 74-4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관 3층
울산 (3)	남구	남구 옥동 336-2 가족문화센터 A동 3층
	동구	동구 서부동 582-5번지 미포복지회관 5층
	울주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376-3
경기 (24)	수원시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102-1 수원대리구청 1층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2661번지 신구대학 평생교육원 302호
	고양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7번지 로데오탑 202호
	부천시	부천시 원미구 상동 394-2 복사골문화센터 509호

시도 (센터수)	센터명	주소
	안양시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11번지 동안문화관 3층
	안산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0-2 하늘법조빌딩 3층
	용인시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86 처인구청 3층
	의정부시	의정부시 의정부2동 564번지 경민빌딩 1층
	남양주시	남양주시 지금동 159-7 남양주시청 제2청사
	평택시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59-7
	광명시	광명시 한솔길 22
	시흥시	시흥시 정왕동 1800-8
	군포시	군포시 청백리길 22번지
	화성시	화성시 병점동 734번지 4층
	파주시	파주시 금촌동 782-49 (신흥대학 파주교육원)
	이천시	이천시 중리동 187번지 종합복지타운
	김포시	김포시 사우동 262 여성회관 1층
	광주시	광주시 송정동 115-4
	안성시	안성시 봉남동 349-2 안성종합사회복지관
	양주시	양주시 남방동 2-22
	오산시	오산시 원동 374-5
	여주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현대A상가 3층
	동두천시	동두천시 지행동 722-1
	가평군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강원 (12)	춘천시	춘천시 죽림동 189 브라운가 6동 6303호
	원주시	원주시 명륜2동 705 명륜종합사회복지관
	강릉시	강릉시 교1동 1785
	동해시	동해시 천곡동 808-1 동해시청 제1별관 1층
	속초시	속초시 영랑동 234-2
	홍천군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51-20
	횡성군	횡성군 횡성읍 이수로 46

시도 (센터수)	센터명	주소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896
	평창군	평창군 평창읍 하리 113-1번지 평창군문화복지센터 2층
	철원군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710-4
	양구군	양구군 양구읍 상리 239-7 양구행복나눔센터
	인제군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43-1 내설악아파트 상가 1층
충북 (10)	청주시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2가 97 정우빌딩 3층
	충주시	충주시 연수동 1454-1
	제천시	제천시 교동 90-14
	청원군	청원군 가덕면 인차리 393-3
	보은군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43-65 3층
	옥천군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39 다목적회관2층
	영동군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388-1
	진천군	진천군 진천읍 벽암리 570-1 생거진천종합복지관
	괴산군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675-2 여성회관 1층
	증평군	증평군 증평읍 장동리 785 구보건소 별관
충남 (15)	천안시	천안시 서북구 성정2동 1519 백석대학빌딩 11층
	공주시	공주시 중동 321 3층
	아산시	아산시 온천동 1626 시청 별관
	금산군	금산군 금산읍 상리 24-2
	서산시	서산시 동문동 207-11번지 5층
	부여군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692-1 여성문화회관 2층
	서천군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183-35 3층
	청양군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209-3
	홍성군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701 홍성사회복지관내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673번지 3층
	보령시	보령시 명천동 413
	논산시	논산시 취암동 1048-7
	연기군	조치원읍 교리 9-1

시도 (센터수)	센터명	주소
전북 (14)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712-13
	당진군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263-1번지 상가2층
	전주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34-9번지 예스더빌딩 3층
	군산시	군산시 신영동 6-30
	익산시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4층
	정읍시	정읍시 연지동 252-54 여성문화회관
	남원시	남원시 동충동 446-3
	김제시	김제시 검산동 1031번지 지평선어울림센터 3층
	완주군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우석대학교 종합관 3층 5310호
	장수군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449-4 민들레교실
	임실군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371-13
	순창군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638-6
	고창군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209 3층
	진안군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285-5
무주군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628	
부안군	전북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643-65 노인여성회관	
전남 (16)	여수시	여수시 미평동 591-9 여성문화회관
	순천시	순천시 저진길 9
	나주시	나주시 이창동 162-6 우리빌딩 4층
	광양시	광양시 증동 1318-2 광양시의회청사 4층
	담양군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 116-1
	곡성군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713-2 곡성군청 주민생활복지과
	고흥군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832
	화순군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243 부영 3차상가 304호
	장흥군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61 장흥종합사회복지관 4층
해남군	해남군 해남읍 해리 160-1 번지	

시도 (센터수)	센터명	주 소
	영암군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2178-2 한마음회관 2층
	무안군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885-1
	함평군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154-1
	영광군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829-4 2층
	장성군	장성군 장성읍 기산리 388 문화센터내 노인복지회관 1층
	목포시	목포시 산정동 1044-726번지
경북 (16)	포항시	포항시 북구 우현동 우현구획 정리지구 4B 1L 여성문화회관
	경주시	경주시 사정동 101-7
	김천시	김천시 대광동 1000-11 종합사회복지관 2층
	안동시	안동시 옥동 974 안동종합사회복지관
	구미시	구미시 형곡동 314-3번지
	영주시	영주시 가흥1동 1385 영주가흥종합사회복지관내
	영천시	영천시 문외동 38-6 대원빌딩 4층 내 우측사무실
	상주시	상주시 무양동 1-161 상주교회 4층
	문경시	문경시 호계면 별암리 산6번지 문경대학 내
	경산시	경산시 서상동 143-8 여성회관
	의성군	의성군 의성읍 호죽리 502 의성성당내
	성주군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161-1 성주군문화예술회관내
	예천군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64-12 2층
	봉화군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285 결혼이주여성 전용쉼터내
	울진군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363-3 울진종합복지회관
	청송군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77
경남 (14)	창원시	창원시 용호동 5-3
	마산시	마산시 중앙동 3가 4-190 마산YWCA회관
	진주시	진주시 신안동 419-4
	사천시	사천시 동금동 405-6
	김해시	김해시 부원동 623-2 구 보건소 2층
	밀양시	밀양시 가곡동 455 가곡종합사회복지관

시도 (센터수)	센터명	주 소
	거제시	거제시 아주동 290 근로자복지회관 2층
	양산시	양산시 중부동 656-15
	함안군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121-1 함안군새마을지회
	고성군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230-2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차산리 760
	함양군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967-4
	거창군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683번지
	합천군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337
제주 (2)	제주시	제주시 노형동 727 은혜빌딩 6층
	서귀포시	(미정)

부록 6

2002년 영국의 Rural Proofing 실적 요약

정책 조정 유형	Defra	ODPM	DfES	HMT	DfT	DH	DfI	HO	LCD	DWP	DCMS	NRU	합계
법률 및 시행령 개정	3	1	-	-	-	-	-	-	-	-	-	-	4
규제 및 정책 수행 절차 변화	-	-	1	2	2	-	-	-	-	-	-	-	5
예산 배분 공식 변경	-	2	5	1	-	1	-	-	-	-	-	-	9
농촌 관련 기금 창설	1	-	-	-	-	-	2	1	-	-	-	-	4
서비스 기준 및 정책 대상 설정	1	2	2	1	-	-	-	-	1	-	-	-	7
농촌 서비스 및 비즈니스 지원 또는 유지를 위한 규칙 조정	4	1	-	-	-	-	1	-	-	1	-	-	7
소외된 농촌 지역 대상 사업에 특정 농촌 지역을 추가 포함	-	-	3	-	-	-	-	-	-	-	4	-	7
시범(pilot) 사업 추진	1	3	7	-	1	-	2	2	-	1	2	-	19
정보통신기술에 바탕을 둔 해결책 제시	-	-	1	-	-	1	1	1	2	3	1	-	10
농촌에의 영향 및 농촌 환경에 관한 추가 정보 수집	4	-	-	-	1	-	1	2	-	-	-	1	9
농촌 지역의 이해 당사자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1	-	-	-	2	-	-	-	-	-	1	-	4
Rural Proofing 담당자 지정 요구 및 자문 제공	-	2	2	-	1	-	-	-	1	1	1	-	8
Rural Proofing 담당자에게 가이드라인 제공	-	3	-	-	2	3	-	1	-	-	-	-	9
합계	15	14	21	4	9	5	7	7	4	6	9	1	102

주 1: 상단의 약칭은 Rural Proofing 을 수행한 영국의 중앙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을 뜻함. 각 칸의 숫자는 Rural Proofing 실적으로 보고된 건수를 뜻함.

주 2: 영국 정부부처 명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DCMS(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DfES(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Defra(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H(Department of Health), HO(Home Office), LCD(Lord Chancellor's Department), DfI(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fT(Department of Transport), HMT(Her Majesty's Treasury), DWP(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ODPM(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NRU(Neighbourhood Renewal Unit)

부록 7

초·중등학교 교사 정원 배정 산정 방법 및 기준

(지방행정교육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입법 예고안 내용 요약)

1. 공립의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

가. 교장·교감의 정원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정하되, 신설 학교의 경우 해당 시·도교육청의 교사 정원을 활용하여 증원 배정하고 학교 통·폐합의 경우 감원 배정

나. 초등교사 정원은 국가수준의 ‘교사 1인당 학생 수’에 보정지수를 합산한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에 의해 배정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음

- 1) 국가수준의 ‘교사 1인당 학생 수’ = 공립 초등 총 학생 수(전년도 4월 1일 기준)/공립 초등학교 교사 총 정원
- 2)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 = 국가수준의 ‘교사 1인당 학생 수’ + 지역군별 보정지수
- 3) 시·도별 교사정원 = 시·도별 공립 초등 학생 수/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4) 시·도의 지역군 구분 및 지역군별 보정지수

구분	1지역군	2지역군	3지역군	4지역군	5지역군
시·도	경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남, 제주	충북, 충남, 전북	강원, 전남, 경북
보정지수	+2.7	+0.7	-1.0	-2.0	-3.0

다. 시·도의 전년도 교사 정원이 나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원보다 적을 경우 증원하며 많을 경우 감원하되, 감원 규모가 전년도 퇴직자보다 많을 경우에는 퇴직자 수만큼 감원

라. 나호 및 다호와 같은 기준과 산정방법에 의해 배정한 후 총 정원이 남을 경우 추가로 시·도에 배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음

- 1) 시·도별 교사 신규 채용 규모가 전년도 교사 정원의 1%보다 적을 경우, 전년도 시·도별 교사 정원의 1% 범위 내에서 추가 배정
- 2) 1)호의 추가 배정 후에도 잔여 정원이 있을 경우 아래 기준에 의거 추가 배정

$$- \text{시·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times (\text{잔여 정원} / \sum \text{시·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 \text{정원효율화} = \text{전년도 통·폐합 학교 소속 초등학교사 수} + \text{전년도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 시 특채한 초등학교사 인원}$$

마. 나호 및 다호와 같은 기준과 산정방법에 의해 배정한 후 총 정원이 부족할 경우, 증원되는 시·도의 전년도 초등학교사 비율에 따라 증원 규모를 조정

2. 공립의 중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

가. 교장·교감의 정원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정하되, 신설 학교의 경우 해당 시·도교육청의 교사 정원을 활용하여 증원 배정하고 학교 통·폐합의 경우 감원 배정

나. 중등학교사 정원은 국가수준의 ‘교사 1인당 학생 수’에 보정지수를 합산한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에 의해 배정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음

- 1) 국가수준의 ‘교사 1인당 학생 수’ = 공립 중등 총 학생 수(전년도 4월 1일 기준)/공립 중등학교 교사 총 정원
- 2)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 = 국가수준의 ‘교사 1인당 학생 수’ + 지역군별 보정지수
- 3) 시·도별 교사 정원 = 시·도별 공립 중등 학생 수/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4) 시·도의 지역군 구분 및 지역군별 보정지수

구 분	1지역군	2지역군	3지역군	4지역군	5지역군
시·도	경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남, 제주	충북, 충남, 전북	강원, 전남, 경북
보정지수	+2.2	+0.7	-0.3	-1.0	-3.5

다. 시·도의 전년도 교사 정원이 나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원보다 적을 경우 증원하며 많을 경우 감원하되, 감원 규모가 전년도 퇴직자보다 많을 경우에는 퇴직자 수만큼 감원

라. 나호 및 다호와 같은 기준과 산정방법에 의해 배정한 후 총 정원이 남을 경우 추가로 시·도에 배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음

- 1) 시·도별 교사 신규 채용 규모가 전년도 교사 정원의 1% 보다 적을 경우, 전년도 시·도별 교사 정원의 1% 범위 내에서 추가 배정
- 2) 1)호의 추가 배정 후에도 잔여 정원이 있을 경우 아래 기준에 의거 추가 배정

$$- \text{시·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times (\text{잔여 정원} / \sum \text{시·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 정원효율화 = 전년도 통·폐합 학교 소속 중등교사 수 + 전년도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 시 특채한 중등교사 인원

마. 나호 및 다호와 같은 기준과 산정방법에 의해 배정한 후 총 정원이 부족할 경우, 증원되는 시·도의 전년도 중등교사 비율에 따라 증원 규모를 조정

3. 공립의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

가. 유치원 원장 및 원감의 정원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정하되, 신설 유치원의 경우 해당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교사정원을 활용하여 증원 배정하고 유치원 통·폐합의 경우 감원 배정

나. 유치원 교사 정원은 국가수준의 ‘교사 1인당 원아 수’에 보정지수를 합산한 지역군별 ‘교사 1인당 원아 수’에 의해 배정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음

- 1) 국가수준의 ‘교사 1인당 원아 수’ = 공립 총 원아 수(전년도 4월 1일 기준) / 공립 유치원 교사 총 정원
- 2) 지역군별 ‘교사 1인당 원아 수’ = 국가수준의 ‘교사 1인당 원아 수’ + 지역군별 보정지수
- 3) 시·도별 교사 정원 = 시·도별 공립 유치원 원아 수/지역군별 ‘교사 1인당 원아 수’(※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4) 시·도의 지역군 구분 및 지역군별 보정지수

구 분	1지역군	2지역군	3지역군	4지역군	5지역군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충남, 경남, 제주	강원, 전북, 전남, 경북
보정지수	+8.5	+5.0	+3.5	-1.5	-4.5

다. 시·도의 전년도 교사 정원이 나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원보다 적을 경우 증원하며 많을 경우 감원하되, 증감 규모는 증감해야 할 정원의 10%만 증감하며 감원 규모가 전년도 퇴직자보다 많을 경우에는 퇴직자 수만큼 감원(※ 소수 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라. 나호 및 다호와 같은 기준과 산정방법에 의해 배정한 후 총 정원이 남을 경우 추가로 시·도에 배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음

$$- \text{시·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times (\text{잔여 정원} / \sum \text{시·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 \text{정원효율화} = \text{전년도 통·폐합 유치원 소속 유아교사수} + \text{전년도 사립유치원을 공립유치원으로 전환 시 특채한 유아교사 인원}$$

마. 나호 및 다호와 같은 기준과 산정방법에 의해 배정한 후 총 정원이 부족할 경우, 증원되는 시·도의 전년도 유아교사 비율에 따라 증원 규모를 조정

4. 특수교육 교원

가. 특수학교 교장 및 교감의 정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정하되, 신설 학교의 경우 해당 시·도교육청의 특수교사 정원을 활용하여 증원 배정하고 학교 통·폐합의 경우 감원 배정

나. 특수교사 정원은 국가수준의 ‘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학생 수’에 보정지수를 합산한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학생 수’에 의해 배정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음

- 1) 국가수준의 ‘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학생 수’ = 공립 총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전년도 4. 1.자)/공립 총 특수교사 정원
- 2)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학생 수’ = 국가수준의 ‘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학생 수’ + 지역군별 보정지수
- 3) 시·도별 특수교사 정원 = 시·도별 총 특수교육대상학생 수/지역군별 ‘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학생 수’(※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4) 시·도의 지역군 구분 및 지역군별 보정지수

구분	1지역군	2지역군	3지역군	4지역군	5지역군
시·도	경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충남, 경남, 제주	충북, 전북	강원, 전남, 경북
보정지수	+1.5	+0.1	-0.1	-0.2	-0.5

다. 시·도의 전년도 교사 정원이 나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원보다 적을 경우 증원하며 많을 경우 감원하되, 증감 규모는 증감해야 할 정원의 10%만 증감하며 감원 규모가 전년도 퇴직자보다 많을 경우에는 퇴직자 수만큼 감원(※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라. 나호 및 다호와 같은 기준과 산정방법에 의해 배정한 후 총 정원이 남을 경우 추가로 시·도에 배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시·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 (잔여 정원/Σ시·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 정원효율화 = 전년도 통·폐합 학교 소속 특수교사 수 + 전년도 사립학교

를 공립학교로 전환 시 특채한 특수교사 인원

마. 나호 및 다호와 같은 기준과 산정방법에 의해 배정한 후 총 정원이 부족할 경우, 증원되는 시·도의 전년도 특수교사 비율에 따라 증원 규모를 조정

5.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가. 보건교사

1) 보건교사 정원은 국가수준의 ‘보건교사 1인당 학교 수’에 보정지수를 합산한

지역군별 ‘보건교사 1인당 학교 수’에 의해 배정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음

가) 국가수준의 ‘보건교사 1인당 학교 수’ = 총 공립 학교 수(전년도 4. 1.자)/보건교사 총 정원

나) 지역군별 ‘보건교사 1인당 학교 수’ = 국가수준의 ‘보건교사 1인당 학교 수’ + 지역군별 보정지수

다) 시·도별 보건교사 정원 = 시·도별 총 공립 학교 수/지역군별 ‘보건교사 1인당 학교 수’(※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라) 시·도의 지역군 구분 및 지역군별 보정지수

구 분	1지역군	2지역군	3지역군	4지역군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보정지수	-0.22	-0.13	-0.01	+0.18

2) 시·도의 전년도 보건교사 정원이 나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원보다 적을 경우 증원하며 많을 경우 감원하되, 증감 규모는 증감해야 할 정원의 10%만 증감하며 감원 규모가 전년도 퇴직자보다 많을 경우에는 퇴직자 수만큼 감원(※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3) 1)호 및 2)호와 같은 기준과 산정방법에 의해 배정한 후 총 정원이 남을 경우 추가로 시·도에 배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시·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 (잔여 정원/Σ시·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 * 정원효율화 = 전년도 통·폐합 학교 소속 보건교사 수 + 전년도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 시 특채한 보건교사 인원

4) 1)호 및 2)호와 같은 기준과 산정방법에 의해 배정한 후 총 정원이 부족할 경우, 증원되는 시·도의 전년도 보건교사 비율에 따라 증원 규모를 조정

나. 영양교사

- 1) 영양교사 정원은 국가수준의 ‘영양교사 1인당 학교 수’에 보정지수를 합산한 지역군별 ‘영양교사 1인당 학교 수’에 의해 배정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음
 - 가) 국가수준의 ‘영양교사 1인당 학교 수’ = 총 급식시설을 갖춘 공립학교 수(6학년 이하 학교는 1/2로 계산, 전년도 4월 1일 기준)/영양교사 총 정원
 - 나) 지역군별 ‘영양교사 1인당 학교 수’ = 국가수준의 ‘영양교사 1인당 학교 수’ + 지역군별 보정지수
 - 다) 시·도별 영양교사 정원 = 시·도별 총 급식시설을 갖춘 공립 학교 수(6학년 이하 학교는 1/2)/지역군별 ‘영양교사 1인당 학교 수’
 - (※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라) 시·도의 지역군 구분 및 지역군별 보정지수

구분	1지역군	2지역군	3지역군
시·도	경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보정지수	+0.5	-0.05	-0.1

2) 시·도의 전년도 교사 정원이 나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원보다 적을 경우 증원하며 많을 경우 감원하되, 증감 규모는 증감해야 할 정원의 10%만 증감하며 감원 규모가 전년도 퇴직자보다 많을 경우에는 퇴직자 수만큼 감원(※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3) 1)호 및 2)호와 같은 기준과 산정방법에 의해 배정한 후 총 정원이 남을 경우 추가로 시·도에 배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시·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 (잔여 정원/∑시·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 * 정원효율화 = 전년도 통·폐합 학교 소속 영양교사 수 + 전년도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 시 특채한 영양교사 인원
- 4) 1)호 및 2)호와 같은 기준과 산정방법에 의해 배정한 후 총 정원이 부족할 경우, 증원되는 시·도의 전년도 영양교사 비율에 따라 증원 규모를 조정

다. 사서교사

- 1) 사서교사 정원은 국가수준의 ‘사서교사 1인당 학생 수’에 보정지수를 합산한 지역군별 ‘사서교사 1인당 학생 수’에 의해 배정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음
- 가) 국가수준의 ‘사서교사 1인당 학생 수’ = 공립 총 학생 수(전년도 4월 1일 기준)/공립 사서교사 총 정원
 - 나) 지역군별 ‘사서교사 1인당 학생 수’ = 국가수준의 ‘사서교사 1인당 학생 수’ + 지역군별 보정지수
 - 다) 시·도별 사서교사 정원 = 시·도별 공립 학생 수/지역군별 ‘사서교사 1인당 학생 수’(※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라) 시·도의 지역군 구분 및 지역군별 보정지수

구 분	1지역군	2지역군	3지역군	4지역군	5지역군
시·도	경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남, 제주	충북, 충남, 전북	강원, 전남, 경북
보정지수	+4,000	+2,000	-2,000	-3,000	-4,000

- 2) 시·도의 전년도 사서교사 정원이 나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원보다 적을 경우 증원하며 많을 경우 감원하되, 증감 규모는 증감해야 할 정원의 10%만 증감하며 감원 규모가 전년도 퇴직자보다 많을 경우에는 퇴직자 수만큼 감원 (※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3) 1)호 및 2)호와 같은 기준과 산정방법에 의해 배정한 후 총 정원이 남을 경우 추가로 시·도에 배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시·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 (잔여 정원/Σ시·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 정원효율화 = 전년도 통·폐합 학교 소속 사서교사 수 + 전년도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 시 특채한 사서교사 인원
- 4) 1)호 및 2)호와 같은 기준과 산정방법에 의해 배정한 후 총 정원이 부족할 경우, 증원되는 시·도의 전년도 사서교사 비율에 따라 증원 규모를 조정

라. 전문상담교사

- 1) 전문상담교사 정원은 국가수준의 ‘전문상담교사 1인당 학생 수’에 보정지수를 합산한 지역군별 ‘전문상담교사 1인당 학생 수’에 의해 배정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음
- 가) 국가수준의 ‘전문상담교사 1인당 학생 수’ = 공립 총 학생 수(전년도 4월 1일 기준)/공립 전문상담교사 총 정원
- 나) 지역군별 ‘전문상담교사 1인당 학생 수’ = 국가수준의 ‘전문상담교사 1인당 학생 수’ + 지역군별 보정지수
- 다) 시·도별 교사정원 = 시·도별 공립 학생 수/지역군별 ‘전문상담교사 1인당 학생 수’(※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라) 시·도의 지역군 구분 및 지역군별 보정지수

구분	1지역군	2지역군	3지역군	4지역군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경남, 제주	충북, 충남, 전북	강원, 전남, 경북
보정지수	+1,000	+500	-500	-1,000

- 2) 시·도의 전년도 전문상담교사 정원이 나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원보다 적을 경우 증원하며 많을 경우 감원하되, 증감 규모는 증감해야 할 정원의 10%만 증감하며 감원 규모가 전년도 퇴직자보다 많을 경우에는 퇴직자 수만큼

감원(※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3) 1)호 및 2)호와 같은 기준과 산정방법에 의해 배정한 후 총 정원이 남을 경우 추가로 시·도에 배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시·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 (잔여 정원/∑시·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 * 정원효율화 = 전년도 통·폐합 학교 소속 전문상담 교사 수 + 전년도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 시 특채한 전문상담교사 인원
- 4) 1)호 및 2)호와 같은 기준과 산정방법에 의해 배정한 후 총 정원이 부족할 경우, 증원되는 시·도의 전년도 전문상담교사 비율에 따라 증원 규모를 조정

부록 8

공립의 각급 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표

‘지방행정교육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령(2010년 2월 26일 개정안)’의 공립의 각급 학교 국가 공무원 정원표

구분		정원(명)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원장	136
	원감	371
	교사	7,600
	소계	8,107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장	5,743
	교감	5,964
	교사	139,499
	소계	151,206
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장	3,576
	교감	3,500
	교사	135,509
	소계	142,585
특수학교	교장	55
	교감	61
	교사	8,761
	소계	8,877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보건교사	6,584
	영양교사	4,412
	사서교사	489
	전문상담교사	403
	소계	11,888
총계		322,663

참고 문헌

- 기획재정부 등 11개 정부 부처, 2009.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 계획」
- 김양희, 김경희, 류연규, 윤용중. 2006.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주요 사업의 결과 분석 및 개선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 김원정. 2006. “2005년 중앙부처 성별영향평가사업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방안.” 2005년 성별영향평가 사업 평가 및 정부 정책의 성 인지적 생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자료집.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원단.
- 마상진·박대식. 2006. 「도·농 균형사회 실현을 위한 선진 각국의 정책기법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 최경환, 박주영. 2009. 「삶의 질 향상 기본·실행 계획 추진 평가 및 제2차 기본 계획 수립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보건복지부. 2010.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침」.
- 여성가족부. 2006. 「양성평등 정책 확산을 위한 성별영향평가 안내서」.
- 여성가족부. 2010a. 「2009년도 여성 정책 연차 보고서」.
- 여성가족부. 2010b.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2010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 윤영진, 이재인, 이재원, 김은정. 2008. 「성인지 예산제도의 추진체계와 실행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임연기. 2010. “한국 농산어촌 교육 육성 방향과 과제”. 「고사 직전 농산어촌 교육,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연속 토론회 자료집.
- 전우홍. 2010. “농산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 및 향후 추진 방향.” 「고사 직전 농산어촌 교육,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연속 토론회 자료집.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10. 교과부의 ‘각급 학교 공무원 정원규정 시행규칙안’ 입법 예고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보도자료.
- Beadle, S. 2007. *Evidence of the Government's Rural Proofing of Policies in 2006-7*. Commission for Rural Communities.
- Brian Wilson Associates and Rural Innovation. 2008. *Rural Proofing Literature Review*. Commission for Rural Communities.
- Commission for Rural Communities. 2009. *Rural proofing guidance: Tackling rural*

disadvantage.

Countryside Agency. 2002. *Rural Proofing: policy maker's checklist.*

_____. 2003. *Rural Proofing in 2002/2003: A report to Government by the
Countryside Agency.*

_____. 2004. *Rural Proofing in 2003/2004: A report to Government by the
Countryside Agency.*

농어촌 영향 관리 가이드라인 제도 도입 방안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0. 12.

발 행 2010. 12.

발행인 오세익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9-1

전화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쇄처 크리커뮤니케이션

전화 02-2273-1775 cree1775@hanmail.net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